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1
April 2015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1
April 2015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발전을 위한 격려사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흐름을 탈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구조 개혁과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우리기업들의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2004년 한-칠레 FTA 이래 2015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 49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전체 교역량의 41%를 FTA 국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중 FTA 가서명('15.2.25.) 및 한-베트남 FTA 가서명('15.3.28.)이 완료되었고, TPP, RCEP 등 Mega-FTA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어 이제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우리 기업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FTA 교역량 추이 및 수출입활용률, 주요 산업 및 협정별 FTA 교역 현황 등에 관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업들이 꼭 필요한 자료만을 엄선하여 「FTA 무역리포트」를 발간해 왔습니다.

올해로 발간 3년을 맞는 「FTA 무역리포트」를 통하여 FTA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관세청장 김낙회

Contents

FTA FOCUS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 ····· 06
이돈현 | 관세청 차장

FTA 최근 동향

FTA 최근 동향 ····· 12
- 관세청 주요 이슈
- 우리나라 FTA 동향
- 해외 FTA 동향

FTA ANALYSIS

한-중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 25
진병진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 한-중 FTA의 체결과정과 의의
- 한-중 FTA의 주요 특징
- 한-중 FTA 활용방안

산업별 FTA 이행 동향
2014년 MTI 1단위 기준 주요 특혜 수출입 품목을 중심으로 ····· 43
송경은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 전체 FTA 특혜 교역동향
- FTA 특혜 교역동향
- 산업별 FTA 특혜 수출 동향
- 산업별 FTA 특혜 수입 동향

FTA EXPERT

① 전문가 기고
중국의 시각에서 본 한-중 FTA와 우리기업 관련 시사점 ····· 105
윤인채 |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관세협력관

② 전문가 기고
한-중 FTA와 주요산업별 대응방안 ····· 113
오대원 |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과 교수

③ 전문가 기고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전략 ····· 121
정환우 | KOTRA 중국조사담당관

FTA Trade Report

FTA와 품목분류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Ⅱ) ····· 129
오수교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위원

FTA 활용 성공사례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 142
-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 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
-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시험안내 ····· 160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원산지관리사 취업 및 업무 도움 사례 ····· 163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BOM 기능 추가로 중소기업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지원이 손쉬워졌다 ····· 167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FTA 100% 활용하기

중국의 통관환경 동향, 통관 유의 사항은? ····· 173
손혜정 | 복단대 석사
- 중국의 통관 환경
- 중국의 통관 절차 및 서류
- 통관 애로사항 및 기업 입장의 대응방안

지도로 보는 2014 특혜 수출입실적(1월~12월) ····· 183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

이돈현 관세청 차장

최근 한-중 FTA 가서명('15.2.25.) 및 한-베트남 FTA 가서명('15.3.28.)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1개 협정, 49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여 FTA 교역비중이 41%에 달함으로써 FTA가 명실공히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역비중이 21.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미국, EU 등 다른 어떠한 FTA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TPP, RCEP 등 Mega-FTA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마다 신규 시장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급,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1] 조기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유일한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FTA 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증명절차가 복잡하여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 대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81%에 달하지만, 수출 중소기업은 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對中 수출기업의 77%인 25,000개 기업이 FTA 활용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FTA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한-중 FTA 대비 영세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세관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01 FTA 기업지원 전담기관 설치

관세청은 지난 1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부산에 기업지원 전담 조직인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관세행정이 단속 중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동 센터에서는 기업상담 전문관(AM)이 FTA 컨설팅, 교육·고용지원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뿐만 아니라 AEO, 해외통관애로 등 수출입 통관 관련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대책」[2]을 발표하고,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 대응 등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일선세관의 FTA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 컨설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부터는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와 협업으로 공익관세사[3]를 YES FTA 차이나센터에 본격 배치하였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익관세사는 기업상담전문관과 팀을 이루어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차량 내에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교육·홍보 공간을 구비한 동 이동센터는 현장중심의 FTA 관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치·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동 이동센터를 통해 FTA 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농수축산물 수출기업 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FTA 준비부터 활용·검증 대응·통관애로해소까지 종합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업체, 예비수출기업, 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FTA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2) Double-100일 특별지원 : (1단계)가 서명직후 100일, (2단계) 발효전 100일
3) 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

02 기업별 맞춤형 YES FTA 컨설팅 사업

관세청은 3월부터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관리 하에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FTA 전문컨설턴트(관세사)가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011년 최초 컨설팅을 개시한 이래 총 2,287개[4] 업체를 지원하였다. 그간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전년도에는 574개 참여기업 중 570개 업체(99%)가 컨설팅 이후 즉시 FTA를 활용하고, 그 중 180개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는 등 컨설팅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지난해 컨설팅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아직까지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수출기업 및 영세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하여 對中 수출기업도 상시 발굴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사후검증대응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컨설팅 유형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FTA-PASS 구축·운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등
B형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기록보관 및 검증대응 절차 등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 품목분류,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신청 등

4) ('11년) 734개 → ('12년) 477개 → ('13년) 502개 → ('14년) 574개

03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

FTA를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FTA를 활용하는 주체인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활용 데이터와 품목분류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세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YES FTA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업실무자·특성화고생·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FTA·원산지 전문 자격제도인 원산지관리사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2,170명의 FTA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특성화고 교원을 대상으로 FTA·원산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에 FTA 정규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전문대생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형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지자체·민간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FTA 전문교육 이수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작년에 299명을 취업시키는 등 지방의 FTA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사 등 FTA 전문인력과 중소업체 간에 구인·구직 정보교환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온라인 고용매칭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나아가 FTA·원산지 관리업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5]에 편입시켜, FTA 전문인력양성이 NCS 기반 하에서 '교육→자격증 취득→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 활용영역 : (기업) 경력개발경로,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교육) 훈련과정, 기준, 모듈교재 개발, (자격증) 종목설계, 출제기준 등

04 중소기업 100대 수출 물품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보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을 선정하고, 이들 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6]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그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곤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PASS를 무료로 개발·보급한 바 있고, 현재 약 11,850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100대 물품의 원산지재료를 표준화해 FTA-PASS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개선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한-중 FTA 발효까지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거래처, 품목분류(HS) 코드, 물품내역 및 자재명세서 등 기초자료를 먼저 입력해야 하나, 이 시스템에서는 최종상품만 선택하면 물품내역, 품목분류 코드 및 자재명세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FTA-PASS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를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05 농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 증명 간소화

관세청은 3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FTA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7]',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8]'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생산농가 등 181,674개의 우리농가가 직접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우리농산물의 FTA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어민이 농축수산물의 FTA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6)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라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7대산업 100대 품목

7) 농산물의 생산~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 기록·관리 여부 심사통과 등록증

8) 농산물의 생산·수확·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등의 농업환경과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하는 업체에게 주는 인증서

06 FTA 활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관세율, 품목분류, 원산지규정 등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CEO의 관심도 제고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관세청은 FTA 종합정보 사이트인 YES FTA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한-중 FTA에 대비하여 對中 관세특화 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나 Info」를 개설하였다. 여기에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 기본정보와 중국 산업별·지역별 수출활용 상세정보, 한-중 비즈니스모델 제공 및 「한-중 FTA 100문 100답」 사례집을 제공한다. 또한,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공익관세사가 직접 상담하는 온라인 창구도 있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25 관세청 콜센터 내에 한-중 FTA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對中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중 FTA 이해증진 및 활용의지 고취를 위한 홍보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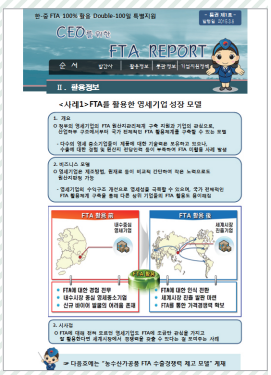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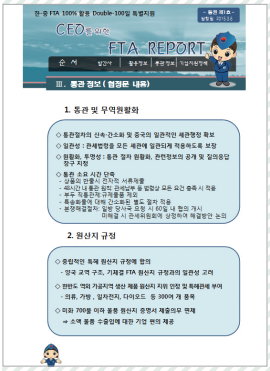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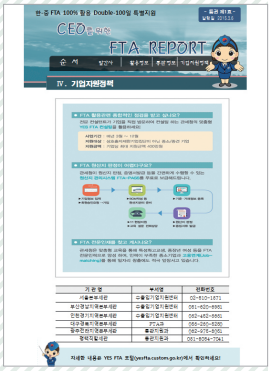

나아가, 전체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발효 중인 11개 협정 전체에 대해 상대국의 FTA 특혜세율을 명시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FTA 활용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및 기업지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생존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정보·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품목분류, 사후검증 대비 등 실무단계에서의 FTA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주요 이슈*

2015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2015.04.02

지난 4월 2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관세관 등 각 지역 통관전문가를 초청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주요 수출시장의 통관환경 변화와 현지 수출입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수출기업·물류업체 등 약 4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우리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수출기업 대응방안'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대책'이 소개되었다.

또한, '중국의 통관제도 대개혁 전망' 및 '인도네시아 보세구역의 이해' 등 우리 관세관 주재국의 통관환경 변화와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연번	설명회 주제	발표자	
1	한-중 FTA 발효대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제영광	관세청
2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대책	서재용	관세청
3	FTA관련 직접운송원칙(홍콩 경유시)	이민근	홍콩 관세관
4	인니 보세구역 제도	임현철	인니 관세관
5	일본 출장전보고 제도	이근후	일본 관세관
6	러시아 통관제도 유의사항	알렉세이 끄라줴프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
7	브라질 통관제도 유의사항	루시아노 실바	브라질 통관 전문가
8	베트남 AEO 제도	손영환	베트남 관세관
9	중국해관 통관 제도 대개혁 전망	윤인채	북경 관세관

* 자료 : 관세청 FTA 포탈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2015.04.01

최근 한–인도 및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가 타결되어 향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관세청은 FTA 활용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수적인 수출활용률 산출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발급방식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수출신고서를 개정하였다.

또한 상대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인 현지 보세공장으로 반입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FTA 활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요사항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로 변경하였으며, 이 항목을 선택조건(C)에서 필수조건(M)으로 변경하여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B' 항목을 추가하여 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인한 불필요 여부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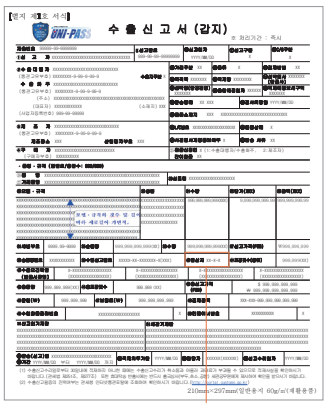

작성요령 개정 전	작성요령 개정 후	개정 내용
•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 표시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FTA 발효국 중 자율발급 국가(칠레, EFTA, EU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표시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B : 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불필요 ※ 수출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	1. 자율발급 → 발급 2. B 추가
C : 선택 기재항목	M : 필수 기재항목	C → M (필수기재)
작성 예 : CN–A–Y	작성 예 : CN–A–Y–Y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추가 표시

자료 : 수출신고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작성 지침 안내

국민과 함께하는 수출입물품 품목분류(HS) 교육 실시

2015.03.07

중앙관세분석소는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분석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무역관련 전문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수출입업체 관계자, 세관직원 등 품목분류 업무에 관심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이하 HS) 교육과정 'HS 베스트 클래스'를 운영하였다.

품목분류의 기본 이론 및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육수진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WCO HS 인증 교관), 곽재석 관세행정관, 신을기 관세행정관이 강의를 맡아 진행하였다.

한 대학생 참석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일체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번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석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상목 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유능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등 분석소 정부 3.0 대표과제인 산(産)·관(官)·학(學) 간 교류·협력을 통한 동반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 강화

2015.03.23

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FTA전략적 활용 촉진을 위해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제공해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다.

수출신고필증에 상대국 FTA 특혜세율 안내

2015.03.23

관세청은 기존에 한-미, 한-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왔었던 서비스를 전 협정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현재 발효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특혜대상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한다.

• 예시

>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 기술위원회 의장 2년 연속 배출

2015.03.30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행정관이 2년 연속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다. HS 검토소위원회는 HS 위원회 산하기구로 HS 품목분류표 및 해설서를 현 무역환경에 맞도록 개정 및 발전시키는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이다.

이는 김성채 의장이 2014년 처음으로 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어 1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이끈 점과 그간 HS 위원회에서 컴퓨터, 영상겸용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등 신상품 품목분류 논의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의장직 선임으로 국제기구에서 IT제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에 대해 유리한 품목분류 환경을 조성하여 국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HS 품목분류표 개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한국이 세계 품목분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2 우리나라 FTA 동향*

산림청 한–중 FTA 대비 '임업통상팀' 신설
2015.01.06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한–중 FTA 등 대외통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임산물 수축강화를 위해 임업통상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임업통상팀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보험료와 해외식품인증비를 신규로 지원해 경영안전성을 높여 수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통상팀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수출 보험료 및 해외식품 인증비 지원, 경영안전성 강화대책 수립 등을 맡게 된다.

EU, 미국, 호주, 중국 등 시장에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불법벌채 목재 유통금지 제도에 대비할 예정이다.

자료 : 산림청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2015.01.29

기획재정부는 중국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지난 1월 29일 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한반도와 아시아, 유럽을 철도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가간 상이한 통화 정책, 석유 등 원자재가격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한–중 FTA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한–중 FTA 가서명, 올 상반기 중 정식서명 추진
2015.02.25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25일 양국간 FTA의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상 내용에 대해 최종 확인 후 가서명했다. 협상 내용은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정식서명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 된다.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뉴스

한-중 FTA는 협정에 따라 일정한 과도기를 거친 후 양국 상품 세금종목의 90%와 무역액의 85%에 대해 자유화를 실현하게 되고, 양허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 이후, FTA 절차상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담고 있는 양허표를 공개하지 못해 한-중 FTA로 인한 실익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서명을 계기로 모든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FTA로 인한 실체적인 이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업종별 영향은 가전(한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중국 현지 판매 증가), 섬유(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한국산 저가 제품 피해) 등이다.

■ 한-중 FTA,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업 종	내 용
가 전	• 한국산 프리미엄 제품 중국 현지 판매 증가 기대 • 일부 소형가전업체, 중국산 가전에 따른 피해 우려
섬 유	• 값 싼 중국산 섬유제품에 한국산의 저가 제품 피해 불가피
유 화	• 에틸렌 등 범용 제품만 관세 철폐로 효과 미미 • PX, PTA 등 주력 수출품의 양허 제외
엔터테인먼트	•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으로 한류 수출 활성화 기대
자동차	• 양허 제외, 중국산 수입차에 따른 피해를 막음 • 자동차 부품 민감품목으로 포함되어 현재 관세인하 효과는 없음
철 강	• 일부 제품 관세 철폐, 대다수는 무관세라 관세인하 효과 미미 •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 피해 우려
통 신	• 중국 FTA 사상 최초 독립챕터 협정 체결(중국 진출 발판 마련됨) • 양국 투자 개방 합의 없어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어려움
항공·해운	• 양국 간 승객 왕래 및 수송 물동량 증가 기대
화장품	• 중국 수출 화장품 관세 최대 10% 철폐로 가격경쟁력 강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정식서명 실시

2015.02.27

한국과 터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이 정식 서명됐다. 한–터키 FTA는 지난 2013년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이 먼저 발효됐으며 지난해 7월 서비스·투자 협정이 추가로 타결됐다. 이어 지난해 9월 가서명 이후 이날 정식 서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기본·상품협정에 국한됐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한 단계 격상됐다. 터키가 FTA에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터키에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다른 나라에 앞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10년간 국내총생산(GDP) 0.01%, 소비자 후생 수준 6,000만달러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통상정책 중심은 한–중 FTA 통상산업포럼 개최

2015.03.18

산업부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올해 정부 통상정책의 중점은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 보호와 우리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FTA 우선 추진이다.

통상산업포럼에서 산업부는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기업의 공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FTA 우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 TPP* 참여문제는 예비양자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중점 추진 중인 비관세장벽 대응정책을 설명하고 일부 개선 사례도 소개하며 업계와 적극 협업을 당부했다. TPP의 산업별 영향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청년층 뉴질랜드 진출 확대

2015.03.23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3월 23일 작년 11월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국이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했다.

뉴질랜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2억 6천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주로 승용차와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앞서 한국과 뉴질랜드는 2009년 6월 협상 개시 후 7차례 공식·비공식 협상을 가졌지만 민감품목 양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2014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 연내 발효 목표

2015.0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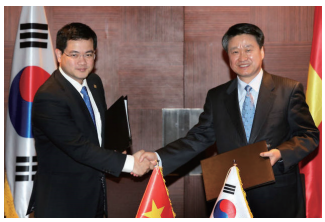

작년 말 협상을 타결지은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절차를 매듭짓고 조속한 국회 비준을 받기로 해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부품과 섬유 등의 시장이 열려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한–베트남FTA에서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한–아세안FTA에 이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다. 베트남은 발효 후 3년 내에 섬유, 5년 내에 변압기와 전동기 등의 관세를 없앤다. 의약품과 철도차량부품은 7년, 자동차부품과 승용차·화장품·전기밥솥·에어컨은 10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3년 내에 건전지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5년 내에 선박용 부품과 냉동 고구마·냉동 가오리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추진
2015.04.01

정부는 지난 4월 1일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FTA 추진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미는 SIECA(중미경제통합기구)에 소속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의미한다. 이들 6개국은 경제적 공동체인 SIECA(중미경제통합기구)를 결성하는 등 경제적 통합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추진 필요성과 추진 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FTA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03 해외 FTA 동향

중국 자유무역체제 새로운 도약
2015.02.12

중국은 최근 2년간 빠르게 자유무역협력 관계를 맺고있다. 특히 한국과의 FTA, 중국–홍콩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은 중국을 더욱 빠르게 발전시킬 것이다.

한–중 FTA 연구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한–중 FTA에 대하여 다년간의 산·관·학 연구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2014년 11월 실질적 협상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제조 분야에서부터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민감도 높은 산업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를 철폐한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지역협력,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각종 정책, 환경 등 풀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북아지역통합을 달성하려는 중국은 금번 한-중 FTA 협상이 향후 한·중·일 FTA 추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 네트워크 형성, 아시아태평양의 지주역할을 이뤄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협상으로 여기고 있다.

자료 : http://www.js.xinhuanet.com

RCEP 7차 협상 종료, '무역자율화' 등 의견 차로 타결 난항

2015.02.13

아시아 주요 국가가 가입한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교섭을 위한 제7차 회의가 지난 2월 13일,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종료됐다.

그러나 양허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자유화율' 목표 등 협상의 전제가 되는 큰 틀에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으며, RCEP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이토 나오키 심의관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하고 있는 16개 국의 상황이 각기 달라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6월에는 교토(京都)에서 교섭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한-중 FTA 이후 향후 20년내 품목수 91%, 수입액 85% 관세 철폐 예상

2015.02.26

보도에 따르면, 2월 25일 협상을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가서명이 완료됐다. 이번 가서명한 FTA 협정문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 내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 한국은 품목 수의 92%, 수입액의 91%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세탁기,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의료기기 가전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전동기, 변압기 등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골프채 등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자료 : http://news.163.com(중국 무역신문)

EU-일본 FTA 협상 급물살
2015.03.02

유럽연합(EU)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EU와 일본은 지난 2월 27일 제9차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관세, TBT, 공공조달, 서비스 무역, 투자 규범, SPS, 규범 협력 및 투명성 등 협정에 포함될 대부분의 분야를 다루었다.

EU는 농산물 등 식품 시장 개방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대(對) 일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품 규제 완화를 통해 유럽산 육류 및 유제품 수출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EU와 일본은 2013년 3월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브뤼셀과 도쿄를 오가며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전 세계 교역의 40%에 달하는 EU와 일본 양측의 FTA가 성사되면 상호 교역 증대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U는 일본과 FTA 체결로 EU 국내총생산(GDP)이 0.6~0.8% 증가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33%, 일본의 EU 수출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이투데이

뉴질랜드, 중국과 FTA 확대 논의
2015.03.05

팀 그로서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지난 3월 양국간 FTA 효력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그로서는 이번 방문이 중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에서 잠재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다루는 첫 예비 논의라고 말하였다.

중국과 뉴질랜드의 세관당국은 최근 FTA하에 양국 간 무역 원활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협의하였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양국 간 FTA 타결 이후로 두 배의 수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

뉴질랜드의 2014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금액은 20%에 가까우며, 중국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멕시코, 파나마와의 FTA 비준 논의 중
2015.03.05

멕시코–파나마 FTA 비준에 참여하는 멕시코 상원의원들은 파나마와의 FTA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멕시코–파나마 FTA는 2014년 4월 3일에 공식서명 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파나마로의 수출이 최근 10년간 세 배로 늘었다.

멕시코의 상원의원은 FTA가 멕시코의 對파나마 수출품목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파나마는 서비스 중심 경제이고 멕시코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멕시코–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정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중국 위해시 "한국상품 집산지로 부상"
2015.03.25

한–중 FTA의 성공적인 체결로 한국 상품의 對중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위해시가 가장 큰 특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위해시에는 이미 한국기업이 1,500개 이상 진출해 있고 교통, 인프라 등이 잘 구축되어 있다. 위해시는 한–중 FTA중 중국의 최초 협력도시로서 90%이상의 한국 상품의 무관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 상품의 중국진출 교두보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위해시는 올해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교역센터'를 곧 오픈할 예정이다.

'한–중 교역센터'는 위해시 정부와 중국 조선족기업의 합작회사로 위해시 경제개발구 내에 총 면적 1만 3,800제곱미터이다. 동 센터에서는 해관, 공상, 세무, 공안 등 정부기관이 상주하여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물류 통관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 외 회계, 변호사, 통역, 직원채용, 출입국 수송 등 서비스도 일괄 제공할 것이다.

한–중 교역센터는 동시에 중국 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입주기업에 한 해 3년 동안 무상 임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시장 분석, 영업기획, 제품홍보기획 등 전문가를 통한 기업 맞춤형 B2B, B2C 마케팅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다.

이 밖에도 365일 무료 보세창고 운영, 24시간 내 당일 통관 시스템을 가동하고 결제조회 서비스 등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위해시는 한국 → 위해 → 중국본토로 통하는 물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 http://hljxinwen.dbw.cn

중국, 호주와 연내 FTA 체결 추진

2015.03.3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피터 코스그로브 호주 총독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이 연내 FTA 서명과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FTA 체결이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면서 상호호혜의 기초위에 중국 서부대개발과 호주 북부대개발 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자원 개발, 농축산업, 인프라건설, 생태환경보호 등 영역에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양국 총리 간 정기 회동과 정부부문, 입법기구, 정당교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자료 : 연합뉴스

파나마,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2015.04.02

파나마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제1차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올해 3월 제2차 협상을 추진하였다.
파나마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발달된 기술력을 파나마의 농업분야 등에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파나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파나마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 제품의 파나마 및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위생검역규정, 무역보호, 서비스, 투자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한-중 FTA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진병진 부연구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23년,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이후 2년 6개월(2012년 5월~2014년 11월)만인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협정을 타결하였고, 그 후속절차로 지난 2월 25일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 절차가 완료되었다.
-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발효시킨 역대 FTA중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약 14억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며,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이고 역사적·지리적 근접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한-중 FTA를 활용하여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FTA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01 한-중 FTA의 체결과정과 의의

한-중 FTA 체결과정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수교한 이래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특히, 경제교류 분야에 있어 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 확대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결과 중국은 2003년 이래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고 2007년 이후부터는 최대 수입시장으로서의 지위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14년 11월 10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3년, 한-중 FTA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역사적인 한-중 FTA협상이 타결되었고 금년 2월 25일에는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표 Ⅰ-1
한-중 FTA 추진 경과

일 시	내 용	장 소
2004. 09.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6. 11. 17.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10. 09. 28.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북경
2012. 02. 24.	한-중 FTA 공청회	
2012. 03. 01. ~ 0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서울
2012. 05. 02.	한-중 FTA협상 개시 선언	북경
2012. 05. 14.	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	북경
2014. 11. 10.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	북경
2015. 02. 25.	한-중 FTA 가서명	

한-중 FTA의 의의

한-중 FTA 가서명 직후 중국내 주요 언론은 "한-중 FTA로 인해 2014년 이후 중국 주식시장에 변동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해운항만·섬유·농산품 부문의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하면서,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해운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FTA발효 이후 한-중

양국 간의 무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제물류항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하였다.[1)]

또 다른 매체는 한-중 FTA협정에 대한 가서명 소식을 전하면서 "한-중 FTA로 양국이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질 좋은 한국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2)]고 논평하는 등 한-중 FTA에 대해 중국내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중 FTA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의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긍정적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3)]

첫째,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네트워크가 완성되어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금번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중국·EU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FTA체결국 시장규모가 73.45%에 달하게 됨으로써 세계 5위에서 세계 3위로 도약하게 되었고 한-중 FTA가 발효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중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62.94%로 제고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본 등 주요 경쟁상대에 비해 FTA특혜관세라는 무기가 생김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게 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로 제시될 수 있다.

중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시장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제1의 수입대상국이다.

---

1) 중국자본증권망(中國資本證券網), 2월 26일자 보도(http://www.fj.xinhuanet.com/finance/2015-02/26/c_1114439028.htm)

2) Chinadaily, 2월 26일자 보도(http://www.chinadaily.com.cn/hqcj/xfly/2015-02-26/content_13281499.html)

3)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2015년 2월)"를 참고하여 작성

따라서 한–중 FTA가 발효되어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가 시작되게 되면 기존의 부품·소재 이외에도 한국산에 대한 신뢰와 한류(韓流) 열풍을 타고 패션·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중국시장에 대한 제1위 수입시장으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셋째, 글로벌 FTA허브로서 제조업 분야를 필두로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
한–중 FTA로 글로벌 3대 경제권과 모두 FTA가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대경제권과의 FTA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02 한–중 FTA의 주요 특징

상품양허의 특징

한–중 FTA에서는 발효 이후 20년 내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품목 수 기준으로 92.2% 수입액 기준으로 91.2%를 양허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품목 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를 양허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목표수준[4]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가 달성되었다.

표 II–1
한–중 FTA 상품양허 결과

품목군		한 국		중 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 품목 (NT)	즉시	6,108(49.9%)	418.5억불(51.8%)	1,649(20.1%)	733.7억불(44.0%)
	5년	1,433(11.7%)	31억불(3.8%)	1,679(20.5%)	58.3억불(3.5%)
	10년	2,149(17.6%)	173.3억불(21.5%)	2,518(30.7%)	312.5억불(18.7%)
	소계	9,690(79.2%)	622.8억불(77.1%)	5,846(71.3%)	1,104.5억불(66.2%)

4) 당초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품목군		한 국		중 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민감 품목 (ST)	15년	1,106(9.0%)	79.5억불(9.8%)	1,108(13.5%)	219.2억불(13.1%)
	20년	476(3.9%)	34.1억불(4.2%)	474(5.8%)	93.75억불(5.6%)
	소계	1,582(12.9%)	113.6억불(14.0%)	1,582(19.3%)	312.9억불(18.7%)
자유화율 (NT+ST)		11,272(92.2%)	736.4억불(91.2%)	7,428(90.7%)	1,417.4억불(85%)
초민감 품목 (HST)		960(7.8%)	71.3억불(8.8%)	766(9.3%)	250.1억불(15.0%)
합 계		12,232(100%)	807.7억불(100%)	8,194(100%)	1,667.5억불(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년 2월 26일)

특히, 한-중 FTA 상품 양허에서 특징적인 점은 FTA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우리가 기존에 체결해 왔던 협정들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인데, 한-미 FTA나 한-EU FTA의 경우 품목 수나 수입액을 불문하고 즉시철폐 대상이 거의 70%를 상회하였던데 반해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49.9% 수입액 기준 51.8% 수준이고, 중국은 품목 수 기준 20.1% 수입액 기준 44.0%에 대해 즉시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즉각적인 국내 산업에의 영향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2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정 즉시철폐 비율

협정명	한 국		상대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한-중 FTA	6,108(49.9%)	418.5억불(51.8%)	1,649(20.1%)	733.7억불(44.0%)
한-미 FTA	9,003(80.0%)	217.8억불(77.6%)	8,623(82.1%)	282.8억불(69.2%)
한-EU FTA	9,195(81.7%)	182.0억불(66.7%)	9,252(94.0%)	318.0억불(76.6%)
한-호주 FTA	8,940(75.2%)	111.0억불(72.4%)	5,625(90.9%)	84.6억불(86.3%)
한-캐나다 FTA	9,749(81.9%)	42.1억불(87.0%)	6,380(76.4%)	41.9억불(64.1%)

자료 : 각 협정별 설명자료

주요 품목군을 기준으로 상품양허의 특징을 살펴보면 임산물을 포함한 공산품의 경우 양국은 전체 공산품 분야의 90% 이상을 최대 20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과 관세 장기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하였는데, 예를 들면 섬유·수공구·베어링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이나 합판·제재목 등 목재류에 대해 양허제외하거나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 민감 산업분야인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이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와 수산물 전체 품목의 99%를 관세 철폐하기로 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30%와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FTA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보호가 가능하도록 협정이 체결되면서도 고품질·친환경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기반은 확보되는 성과가 달성되었다.

원산지규정의 특징

한-중 FTA의 원산지절차는 양국의 교역구조와 기체결 FTA의 원산지절차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이 마련되어 신규 협정 도입에 따른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일례로 원산지상품(제3.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중 FTA에서도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그 종류를 ① 완전생산품, ② 원산지재료생산품, ③ 불완전생산품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s)의 계산방식은 제3.5조에서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5]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여타의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누적기준(Accumulation),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대체가능물품(Fungible Materials), 중립재(Neutral Elements), 세트물품(Sets), 포장재 및 운송용기(Packing

5) $RVC = \frac{FOB - VNM}{RVC} \times 100$ 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기준으로 원산지상품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VNM(Value of Non-Originated Materials)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Materials and Containers), 부속품·예비부품·공구(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등의 다양한 특례기준이 도입되어 FTA활용 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누적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한-중 FTA에서는 상대국의 재료를 자국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재료누적이 적용된다.
- **최소허용기준** : 제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협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내이면 당해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완제품 전체의 원산지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정해 주는 특례규정이다.
- **대체가능물품** : FTA특혜의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물리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적·비용적 문제로 구분 관리가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회계적인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규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절차 뿐만 아니라 특혜관세 신청에 대해서도 다양한 특례규정이 명시되었는데,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의 사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의무를 면제[6]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도 폭 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한-중 FTA에서는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하여 HS 6단위 기준으로 총 310개 품목에 대해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6) 동 금액기준은 FOB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 한-ASEAN FTA를 제외하고 여타의 협정들이 대부분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나, 중국이 체결한 여타의 FTA들이 미화 600달러를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의 양해를 확보한 것이다.

수출가격(FOB)의 40%이하이고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총 재료가치의 60%이상일 경우 원산지지위를 부여하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7]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구성

한-중 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해 왔던 협정들에 비해 가공공정기준이나 특정 형태로 규정하기 복잡한 기타 형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포함되지 않고 상당히 간결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군별로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기초농수축산물(HS 제1류~제14류)의 경우 HS 6단위 기준 전체 640개의 품목에 대해 모두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이 적용되고 있어 비체약국 물품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아울러 가공농수축산물(HS 제15류~제24류)의 경우에는 HS 6단위 259개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공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WO : Wholly Obtained)이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등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높은 수준의 가공이 요구되거나 제조·가공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Heading)이 적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가공식품류에 대한 對중 수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공업제품이나 기계류 등의 경우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 원재료 선택의 폭은 넓히면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은 비교적 용이하게 설정하여 對중 수출에 대한 편의성이 유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특혜적용은 한-EFTA FTA의 경우 267개 품목, 한-인도 CEPA의 경우 108개 품목, 한-ASEAN·한-페루·한-콜롬비아 FTA 등은 100개 품목에 대해 허용되는데 반해, 한-중 FTA에서는 무려 310개 품목에 대한 특혜가 적용되게 됨으로써 허용범위가 가장 넓다.

표 II-3
한-중 FTA 품목군별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HS 2012기준)

단위 : 개, %

구 분	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선택기준	결합기준	소 계
기초농수축산품(HS 제1류~제14류)	640	0	0	0	0	640
가공농수축산품(HS 제15류~제24류)	75	150	29	5	0	259
광물성 생산품(HS 제25류~제27류)	15	133	0	0	0	148
화학공업 생산품(HS 제28류~제40류)	19	978	0	1	0	998
가죽제품(HS 제41류~제43류)	1	68	0	0	0	69
나무제품(HS 제44류~제49류)	4	231	0	0	0	235
섬유 및 의류(HS 제50류~제63류)	21	121	0	654	0	796
신발류 등(HS 제64류~제67류)	0	47	0	0	0	47
석재와 귀금속제품(HS 제68류~제71류)	4	191	0	0	0	195
비금속제품(HS 제72류~제83류)	24	539	0	0	0	563
기계류 등(HS 제84류~제85류)	0	466	74	194	37	771
운송기기(HS 제86류~제89류)	0	41	56	24	9	130
기타 제품(HS 제90류~제97류)	0	142	2	209	1	354
소 계	803 (15.4)	3,107 (59.7)	161 (3.1)	1,087 (20.9)	47 (0.9)	5,205 (100.0)

주 : 1. ( )내는 HS 6단위 전체 품목수 5,205개에 대한 비율임.
2.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류·호·소호의 구분이나 제외세번의 포함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구분하였음.

각 유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완전생산기준을 제외하고 세분화가 가능한 기준들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HS 6단위 전체 5,205개 세번 중 3,107개 세번에 대해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아래의 〈표 II-4〉와 같이 류(2단위, Chapter), 호(4단위, Heading), 소호(6단위, Sub-Heading) 수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재료 중 일부가 원산지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제외세번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8]

한-중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HS 6단위 기준 3,107개 품목 중 투입원재료의 일부가 원산지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전체의 4.1%인

8)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기초농수축산물(HS 제1류~제14류)을 제외한 전체 품목에 적용되고 있어 〈표 II-3〉과 같이 물품 특성별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127개 품목에 불과하며[9],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에는 원산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국내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만 수행되면 원산지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료의 선택 폭을 넓게 활용할 수 있어 여타의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4
한-중 FTA
세번변경기준 적용 현황
(HS 2012기준)

단위 : 개, %

구 분	2단위 세번변경		4단위 세번변경		6단위 세번변경		소 계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가공농수축산품 (HS 제15류~제24류)	108	7	35	0	0	0	143	7
광물성 생산품 (HS 제25류~제27류)	24	0	103	0	6	0	133	0
화학공업 생산품 (HS 제28류~제40류)	0	0	940	36	0	2	940	38
가죽제품 (HS 제41류~제43류)	0	0	68	0	0	0	68	0
나무제품 (HS 제44류~제49류)	21	0	208	2	0	0	229	2
섬유 및 의류 (HS 제50류~제63류)	54	0	66	1	0	0	120	1
신발류 등 (HS 제64류~제67류)	0	0	47	0	0	0	47	0
석재와 귀금속제품 (HS 제68류~제71류)	8	0	165	0	18	0	191	0
비금속제품 (HS 제72류~제83류)	3	0	421	79	36	0	460	79
기계류 등 (HS 제84류~제85류)	0	0	181	0	285	0	466	0
운송기기 (HS 제86류~제89류)	0	0	41	0	0	0	41	0
기타 제품 (HS 제90류~제97류)	0	0	142	0	0	0	142	0
소 계	218 (7.3)	7 (5.5)	2,417 (81.1)	118 (92.9)	345 (11.6)	2 (1.6)	2,980 (100.0)	127 (100.0)

주 : 1. 구분란의 불포함과 포함은 각각 제외세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의미함.
2. ( )내는 각각 제외세번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 2,980개와 제외세번이 포함된 물품 127개에 대한 비율임.

9) 제외세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화학공업 생산품(HS 제28류~제40류)과 비금속제품(HS 제72류~제83류)에 집중되어 있어, 여타 품목군의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비원산지재료의 투입이 가능하다.

이어서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한-중 FTA에서는 공제법(BD : Build-Down)을 기준으로 당사국 내에서 40~50% 범위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기준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HS 6단위 전체 5,205개 품목 중 3.1%인 161개 품목에 불과하고 적용되는 품목군도 아래의 〈표 Ⅱ-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4개 류(Chapter)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군의 특징은 대부분의 품목군이 원부자재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이 일반적인 기계류나 자동차류인데 반해, 기초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HS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 HS 제16류 중에서도 육류를 원재료로 하는 물품과 일부 수생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의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나 수생생물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10]

표Ⅱ-5
한-중 FTA 부가가치기준 적용 현황 (HS 2012기준)

단위 : 개, %

구 분	RVC 40	RVC 45	RVC 50	소 계
제16류	0	29	0	29
제84류	50	24	0	74
제87류	24	0	32	56
제90류	0	2	0	2
소 계	74(45.9)	55(34.2)	32(19.9)	161(100.0)

주 : ( )내는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161개 품목에 대한 비율임.

10) HS 제16류 품목분류와 한-중 FTA PSR

호	품 명	PSR
1601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CC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과 피	CC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	CC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RVC(45)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RVC(45)

한-중 FTA에서 동일 세번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복수의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자격이 부여되는 선택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HS 6단위 전체 5,205개 품목 중 20.9%인 1,087개 품목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원산지자격이 부여되는 결합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체 품목의 0.9%에 불과한 47개 품목이다.

특히, 선택기준이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많이 채택되어 있는 품목군은 HS 제50류[견(絹)]와 제53류[마(麻)] 등을 제외한 섬유 및 의류에 해당하는 물품 전반인데, 이들 물품에 대해서는 많은 물품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물품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II-6
한-중 FTA 선택기준 및 결합기준 적용 현황 (HS 2012기준)

단위 : 개, %

구 분	CC와 RVC조합		CTH와 RVC조합		CTSH와 RVC조합		소 계	
	선 택	결 합	선 택	결 합	선 택	결 합	선 택	결 합
제18류	5	0	0	0	0	0	5	0
제35류	0	0	1	0	0	0	1	0
제51류	0	0	20	0	0	0	20	0
제52류	0	0	72	0	0	0	72	0
제54류	0	0	34	0	0	0	34	0
제55류	19	0	86	0	0	0	105	0
제56류	30	0	0	0	0	0	30	0
제57류	21	0	0	0	0	0	21	0
제58류	38	0	0	0	0	0	38	0
제59류	24	0	0	0	0	0	24	0
제60류	43	0	0	0	0	0	43	0
제61류	106	0	0	0	0	0	106	0
제62류	112	0	0	0	0	0	112	0
제63류	49	0	0	0	0	0	49	0
제84류	0	0	0	36	0	0	0	36
제85류	0	0	98	1	96	0	194	0
제87류	0	0	6	9	0	0	6	9
제89류	18	0	0	0	0	0	18	0
제90류	0	0	0	1	0	0	1	0
제91류	0	0	49	0	0	0	49	0

구 분	CC와 RVC조합		CTH와 RVC조합		CTSH와 RVC조합		소 계	
	선 택	결 합	선 택	결 합	선 택	결 합	선 택	결 합
제92류	0	0	17	0	0	0	17	0
제93류	0	0	18	0	0	0	18	0
제94류	0	0	39	0	0	0	39	0
제95류	0	0	31	0	0	0	31	0
제96류	0	0	48	0	0	0	48	0
제97류	0	0	7	0	0	0	7	0
소 계	465 (42.8)	0 (0.0)	526 (48.4)	47 (100.0)	96 (8.8)	0 (0.0)	1,087 (100.0)	47 (100.0)

주 : 1. ( )내는 각각 선택기준 적용물품 1,087개 품목과 결합기준 적용물품 47개 품목에 대한 비율임.
2. 세번변경기준에 있어 제외세번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류·호·소호만을 구분하였음.

또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가장 충족이 어려운 결합기준은 주로 HS 제84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물품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HS 제84류의 물품 중 HS 제8457호부터 제8462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결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03 한-중 FTA 활용방안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 개발

중국은 한반도의 약 44배(한국의 약 95배)에 달하는 광대한 영토에 전체 인구의 92%에 달하는 한족(漢族)을 포함하여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활한 영토에 따라 다양한 기후 유형이 존재[11]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역별 소비자의 선호가 확연히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11) 중국과학원과 중국기상국은 전국을 9개의 기후대와 1개의 고원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9개의 기후대는 북온대, 중온대, 남온대, 북아열대, 중아열대, 남아열대, 북열대, 중열대, 남열대이며 1개의 고원구는 티벳 등이 속한 고원기후구이다.

그림 Ⅲ-1 중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요 소수민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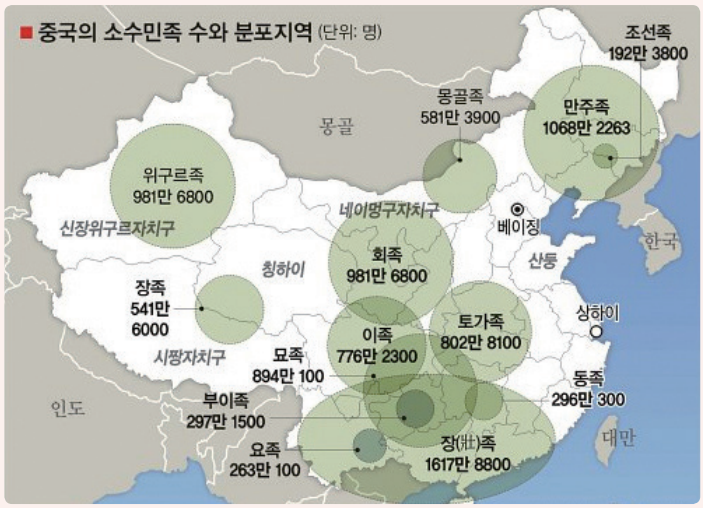

자료 :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그림 Ⅲ-2 중국의 지역별 기후분포와 특징

자료 : https://www.google.co.kr(2015.03.10.검색)

따라서 중국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상품의 개발과 해당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기계류 등 공산품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나 농수산가공식품류 등 기후나 민족성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다른 물품은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의 선호와 지역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 특화형 맞춤 상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경우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한층 유리할 수 있다.

표Ⅲ-1
중국 주요 지역별 거주자 특성

지 역	도시명	특 성
화북(華北)	북경(北京)	중국의 수도이자 고도(古都)로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고 예의를 중시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음
	천진(天津)	비교적 인색한 편이며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가정에 대한 관념이 특별히 강함
동북(東北)	흑룡강성(黑龍江省)	성격이 호방하고 거치나 순박한 면이 있으며, 술을 좋아하고 손님을 매우 반기는 편임
	길림성(吉林省)	흑룡강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지님
화동(華東)	상해(上海)	상해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며 문화와 교육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장사에 매우 능함
	복건성(福建省)	산을 사이에 두고 연해지역 사람들은 개방·진취적이고 모험심도 강한 반면, 내지 거주자들의 경우 보수적이며 배타적임
화중(華中)·화남(華南)	하남성(河南省)	고대 문화의 중흥지였던 만큼 보수적이며 봉건적으로 진취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배타적
	광동성(廣東省)	서로 다른 많은 민족들이 혼재해 있어 민족적인 활력이 넘쳐나며, 모험을 좋아하고 성질이 급한 편임
서남(西南)	사천(四川)	순박하고 질서와 예의를 존중하며 소박한 생활방식을 선호
	서장(西藏)	주로 장족(藏族)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문화와 풍습 등이 모두 티베트 불교(라마교)와 밀접
서북(西北)	감숙성(甘肅省)	소박하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강한 편임
	청해성(青海省)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으며 장족(藏族)이 많아 라마교와 연관된 문화가 보편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함

브랜드에 의미부여로 고객만족 실현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투자하거나 자사제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경우 브랜드에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전략도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관례적으로 외국어로 된 브랜드명이나 상호를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작명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례로 세계적 커피전문 체인점인 '스타벅스 커피(Star Bucks Coffee)'와 우리나라의 유명 대형유통 체인점인 '이마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타벅스 커피는 중국어로 표기된 외래어 상호를 특별한 의미 없이 별을 뜻하는 한자어 성(星)과 이후의 발음을 차용하여 '싱바커(星巴克)'로 작명함으로써 중국인 고객에게 별다른 감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마트는 자사 브랜드의 상호를 중국어 발음에 따라 '이마이더(易買得)'로 작명하면서도 상호 속에 '쉽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중국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중국 내수시장에 짧은 시간에 안착할 수 있었다.

상호 뿐 아니라 상품명의 경우에도 의미부여가 소비자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유명 청량음료인 '코카콜라(Coca Cola)'는 제품명을 '입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인 '커코우커러(可口可樂)'로 작명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소주브랜드 중 대표적 상품인 '처음처럼'은 '처음 마시는 첫 즐거움'이란 뜻의 '추인추러(初飮初樂)'를 상품명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본래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시장 진출 시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호나 상품명 속에 소비자의 선호를 자극할 수 있는 발음과 뜻을 담아 작명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도 한-중 FTA활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기활용 FTA를 활용한 한-중 FTA 즉시 적용

기존에 발효된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물품의 한-중 FTA 원산지기준이 활용하고 있는 협정과 동일하거나 충족요건이 완화된 경우 생산라인 변경이나 원부자재 수급 방식의 변화 등 별도의 추가적 조치 없이 한-중 FTA발효와 동시에 對중 수출물품에 대한 FTA특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 Ⅲ-2〉에 예시된 對중 주요 수출물품의 경우 물품에 따라 미국이나 EU와의 FTA를 활용하여 특혜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해 생산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중 FTA 발효 즉시 특혜수출을 하여도 원산지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HS 제2710.19호의 경우와 같이 기존에 활용하던 협정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FTA특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보다 저렴한 중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 원가절감 등 추가적인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표Ⅲ-2
對중 주요 수출물품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HS	품 명	원산지결정기준		
		한-중	한-미	한-EU
271019	기 타	CTSH	SP or CTH(ex)	CTH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것	CTH	CTH	CTH+MC(20) or MC(50)
400219	기 타	CTH	CTH	CTH
721049	기 타	CTH	CTH	CTH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CTH	CTH	CTH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성 활용

중국과의 FTA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의 원산지자격 판정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기발효 협정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물품들에 대해 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제외세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한-중 FTA에서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에 대한 제약이 없이 투입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면 원산지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EU나 미국 등과의 협정에서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원재료를 원산지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2단위 수준의 세번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자격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제조과정을 거친 경우 FTA특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Ⅲ-3 국내 제조를 통한 한-중 FTA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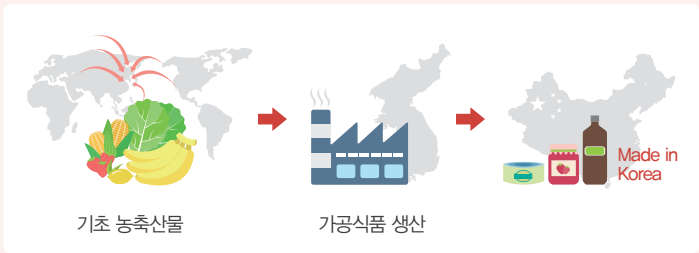

따라서 김치, 라면, 믹스커피, 잼 등 다양한 음식료품을 값싼 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생산한 경우 한-중 FTA의 특혜활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원재료의 사용에 있어 중국산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도 FTA특혜관세의 활용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누적기준의 적용을 통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해지는 효과와 완제품을 수출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12)]

12) 이는 비단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품에 적용될 수 있다.

산업별 FTA 이행 동향

2014년 MTI 1단위 기준 주요 특혜 수출입 품목을 중심으로

송경은 부연구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01 전체 FTA 특혜 교역동향

2014년 對FTA 교역비중은 40.2%로, 전년대비 4.2%p. 증가 시현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전략적으로 FTA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말 기준으로는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FTA 교역국과의 비중은 2009년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33.0%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거대경제권인 미국과 EU FTA의 순차적인 발효 영향에 의한 것이다. 2014년 말 한-호주 FTA, 2015년 1월 한-캐나다 FTA의 발효로 2015년 말에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FTA 발효국	수 출	406	711	1,457	1,925	2,163	2,421
	수 입	385	597	1,204	1,598	1,710	1,993
	교역액	791	1,308	2,662	3,523	3,873	4,414
전체	수 출	3,635	4,664	5,552	5,480	5,596	5,731
	수 입	3,231	4,252	5,244	5,196	5,156	5,256
	교역액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7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		11.5%	14.7%	24.7%	33.0%	36.0%	40.2%

* 연도별 실제 발효국가 기준

자료 : 무역협회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표 1]에서와 같이 2014년 12월말 기준전체 교역대비 FTA 비중은 40.2%로 FTA국과의 교역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2014년 FTA국과의 교역은 수출이 전체의 42.2%, 수입이 37.9%로 수출 측면에서 FTA 국가의 비중이 보다 높은 것이 확인된다.

對FTA 수출

2014년 對FTA국 수출증가율은 7.1%로, 전체 수출증가율 2.4%보다 높은 수준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5,731억불로 전년대비 2.4% 증가에 그친 반면, 對FTA 체결국 수출은 2,421억불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다.

이처럼 對FTA 수출은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2014년 수출 증가는 미국, EU, ASEAN 등 FTA를 체결한 거대경제권으로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FTA 국가는 터키(17.8%) 〉 미국(13.3%) 〉 인도(12.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 감소를 보인 국가는 EFTA(–17.2%), 칠레(–15.2%), 페루(–3.3%) 등 3개국(국가군)이었다. 한편 對EU 수출의 경우 기존의 마이너스 증감률에서 2014년 5.8%로 수출증가율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 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2013년		2014년 (12월)	
경제권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ASEAN	820	3.6	848	3.4
미국	621	6.0	703	13.3
EU	489	-1.1	517	5.8
인도(인디아)	114	-4.6	128	12.4
호주	96	3.4	103	7.8
터키	57	24.3	67	17.8
칠레	25	-0.5	21	-15.2
EFTA	24	63.3	20	-17.2
페루	14	-2.2	14	-3.3
FTA 소계	2,260	3.6	2,421	7.1
총합계	5,596	2.1	5,731	2.4

* FTA 소계는 2014년 발효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對FTA 수입

2014년 對FTA국 수입증가율은 3.9%로, 전체 수입증가율 1.9%보다 높은 수준

2014년 말 기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2억불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수입 증가율이 1.9%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부문에서도 對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전체 수준보다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상위 수입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EU(10.9%) 〉 미국(9.1%) 〉 칠레(3.3%) 순으로 선진 경제권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페루(–27.7%), 인도(–14.7%), EFTA(–12.0%)로 비교적 교역 규모가 적은 국가들로, 수입 증감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對칠레, 對미국 등 수입의 경우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어 기존의 마이너스 증감율에서 2014년 수입증가율이 플러스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FTA FTA 체결국가와의 수입 실적

단위 : 억불, %

구 분	2013년		2014년 (12월)	
경제권명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ASEAN	533	2.6	534	0.2
미국	415	-4.2	453	9.1
EU	562	11.6	623	10.9
인도(인디아)	62	-10.7	53	-14.7
호주	208	-9.6	204	-1.7
터키	7	2.9	7	-5.3
칠레	47	-0.4	48	3.3
EFTA	64	-16.9	56	-12.0
페루	20	21.0	14	-27.7
FTA 소계	1,918	0.8	1,992	3.9
총합계	5,156	-0.8	5,256	1.9

* FTA 소계는 2014년 발효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對FTA 수지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는 427억불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5.5% 증가한 수준이다. 무역수지 흑자국은 미국, ASEAN, 인도, 터키 등이며, 적자국은 EU, 호주, 칠레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자규모가 큰 국가는 EU로 2013년보다도 44.7% 증가하여 지속적인 확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무역적자폭 확대의 요인은, 2012년 이후 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석유 제품이 중동 지역에서 EU로 수입선이 전환된 것, FTA 이후 유럽산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2위 적자국인 호주는 2014년 12월에 FTA가 신규 발효된 국가로[1] 전통적으로 對호주 교역이 자원 수입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향후 FTA 이후 무역수지 개선 여부는 모니터링에 의해 판단 가능하다.

■표 4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단위 : 억불

구 분	2013년	2014년 (12월)
ASEAN	287	314
미국	205	251
EU	-74	-107
인도	52	75
호주	-112	-101
터키	50	60
칠레	-22	-27
EFTA	-40	-36
페루	-5	0
FTA 총합계	341	427
총합계	440	475

* FTA 소계는 2014년 발효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1) 발효시기가 FTA 효과를 말하기에는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림 1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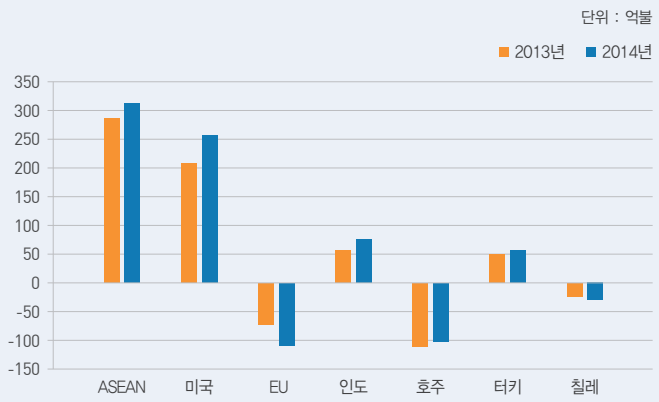

02 FTA 특혜 교역동향

FTA 특혜 수출

2014년 FTA 특혜수출 실적은 2013년 대비 8.7% 증가한 45,770백만달러 수준

[표 5]는 FTA 대상이 되는 품목 가운데 실제 C/O를 발급한 FTA 특혜수출 실적을 주요 품목군(MTI 1단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2] 우리나라 對FTA 특혜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45,770백만달러로 확인된다.

주요 특혜 수출품목군은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으로 상위 3개 품목군이 전체의 7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선박 등 기계류가 22,895백만달러로 전체 특혜 수출의 절반 수준인 50.0%를 점유하는 주요 특혜 수출 분야라 할 수 있다. 기계류의 경우 2014년 특혜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4% 증가 실적을 보였다.

2) 동 수치는 기관발급인 아세안과 페루는 제외한 실적으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2위 특혜수출 품목군인 화학공업제품의 특혜수출은 5,836백만달러로 12.8%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6.7% 증가한 수준이다.

이외 전자전기제품 11.6%,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8.9%, 광산물 6.2%, 섬유류 4.6%, 철강금속 3.9%, 농림수산물 1.0%, 생활용품 0.9%, 잡제품 0.3% 순으로 점유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품목군의 구성 비중은 대체로 2013년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별 전년대비 특혜수출 증감률은 화학공업제품(36.7%)[3] 〉 농림수산물(23.2%) 〉 철강금속제품(19.5%) 〉 전자전기제품(14.9%) 〉 섬유류(10.2%)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9.2%) 〉 기계류(4.4%) 순으로 7개 품목군이 전년대비 특혜수출이 증가하였고, 생활용품(–25.0%) 〉 잡제품(–18.8%) 〉 광산물(–8.9%) 등 3개 품목군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FTA 특혜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2013	2014	증감률	비 중
기계류	21,931	22,895	4.4	50.0
화학공업제품	4,271	5,836	36.7	12.8
전자전기제품	4,637	5,326	14.9	11.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3,712	4,055	9.2	8.9
광산물	3,106	2,831	-8.9	6.2
섬유류	1,892	2,085	10.2	4.6
철강금속제품	1,475	1,763	19.5	3.9
농림수산물	355	437	23.2	1.0
생활용품	554	415	-25.0	0.9
잡제품	155	126	-18.8	0.3
총합계	42,088	45,770	8.7	100.0

주 : 특혜수출금액은 기관발급인 아세안 인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비중은 2014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FTA 특혜수출은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FTA적용 C/O 발급금액을 의미함.

3)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 이하 같음

2014년 FTA특혜수출 증가율, 화학공업제품이 가장 높아

2014년 FTA특혜수출 증가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하였다. 이어 농림수산물도 전년 동기대비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혜수출 감소한 부문은 생활용품과 잡제품으로 각각 −25.0%, −18.8%의 전년 동기대비 특혜수출 감소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잡제품과 생활용품은 국내 수출 산업에서 중요도는 낮은 편에 속하므로 특혜 수출 감소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FTA 특혜수출 활용 가능 비중 : 평균 40.4%

FTA국으로의 수출시 기본 관세율과 세율차가 있어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출금액 비중을 'FTA 특혜수출 활용 가능 비중'로 정의하고 이를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2]이다.

2014년 'FTA 특혜수출 활용 가능 비중'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이 84.8%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2014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수출의 약 84.8%가 FTA국으로 수출 시 특혜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농림수산물 70.4%, 생활용품 63.5%, 화학공업제품 54.6%, 잡제품 49%, 기계류 47% 순으로 FTA 특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자전기제품은 20.5%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에 의해 컴퓨터, 반도체 등 전자전기제품은 이미 무관세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림 2 수출 FTA 활용 가능 비중 비교 : 전 협정(201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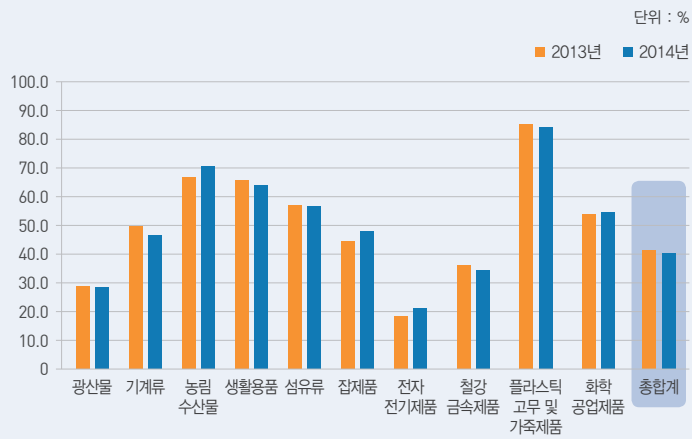

FTA 특혜수출 활용률 : 전협정 평균 56%, 전년대비 1.8%p. 증가

2014년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전협정 평균 56%로 도출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1.8%p.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 FTA 특혜수출 활용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으로 약 71%로 나타난다. 해당 품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 FTA 활용 가능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개방도와 더불어 FTA 활용도 비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기계류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68.8%로 전년보다 1.4%p. 증가하였다. FTA 특혜수출 활용률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으로 2013년보다 7.3%p. 증가하였다.

반면 수출 FTA 활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품목은 생활용품으로 전년대비 9.9%p.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당 수출물품의 비중은 전체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으로 전체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표 6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FTA 수출 활용률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2013	2014	증감
광산물	63.1	61.1	-2.0
기계류	67.3	68.8	1.4
농림수산물	27.2	31.0	3.8
생활용품	51.1	41.2	-9.9
섬유류	39.7	42.0	2.4
잡제품	41.2	40.3	-0.9
전자전기제품	48.5	51.3	2.8
철강금속제품	21.3	23.2	1.9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69.6	71.0	1.4
화학공업제품	40.0	47.2	7.3
총합계	54.3	56.0	1.8

주 : 기관발급인 아세안 인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FTA 특혜 수입

2014년 FTA 특혜수입 실적은 2013년 대비 1.8% 증가한 75,200백만달러 수준

[표 7]은 FTA 대상이 되는 품목 가운데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통해 특혜수입을 신청한 실적을 MTI 1단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對FTA 특혜수입 실적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약 75,200백만달러로 확인된다.

주요 특혜수입품목은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농림수산물로 상위 4개 품목군이 전체 수입의 73.6%를 점유하고 있다.

■표 7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수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2013	2014	증감률	비중
기계류	16,353	18,504	13.2	25.1
화학공업제품	12,667	13,354	5.4	18.1
광산물	16,729	11,548	-31.0	15.6
농림수산물	9,055	10,959	21	14.8

MTI 1단위	2013	2014	증감률	비중
전자전기제품	5,860	6,082	3.8	8.2
섬유류	4,668	5,410	15.9	7.3
철강금속제품	4,618	5,028	8.9	6.8
생활용품	1,639	1,981	20.9	2.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855	1,895	2.2	2.6
잡제품	420	439	4.5	0.6
총합계	73,864	75,200	1.8	100.0

주 : 비중은 2014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수입 규모가 큰 품목군은 기계류로 2014년 18,504백만달러가 특혜수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특혜수입의 25.1%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화학공업제품이 13,354백만달러로 전체 FTA 특혜수입의 18.1%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주로 원자재로 구성된 광산물 특혜수입은 11,548백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5.6%를 점유하는 세 번째 주요 수입 분야다. 이외 농림수산물 14.8%, 전자전기제품 8.2%, 섬유류 7.3%, 철강금속제품 6.8%, 생활용품 2.7%,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6%, 잡제품 0.6% 순으로 그 점유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전년대비 특혜수입 증감률은 농림수산물(21.0%)[4] 〉 생활용품(20.9%) 〉 섬유류(15.9%) 〉 기계류(13.2%) 〉 철강금속제품(8.9%) 〉 화학공업제품(5.4%) 〉 잡제품(4.5%) 〉 전자전기제품(3.8%)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2.2%) 순으로 9개 품목군이 전년대비 특혜수입이 증가하였고, 광산물(–31.0%)만이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2014년 FTA 특혜수입 실적 증가율, 농림수산물이 가장 높아

2014년 FTA 특혜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농림수산물(21.0%)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활용품(20.9%), 섬유류(15.9%) 등 소비재 용품의 FTA

4)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율

특혜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동차 등 기계류도 전년대비 13.2%의 수입 증가가 있었는데, 기존의 일본으로부터 집중된 소재 · 부품 수입 부문이 FTA로 인해 미국, EU 등으로 품목 대체 및 유럽산 자동차 수입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5)]

FTA 특혜수입 활용 가능 비중 : 평균 65.2%

수출과 마찬가지로 'FTA국으로부터 수입시 기본 관세율과 세율차가 있어 FTA 특혜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비중'을 'FTA 특혜수입 활용 가능 비중'로 정의하고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 이다.

'FTA 특혜수입 활용 가능 비중'은 섬유류가 94.3%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2014년 FTA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류의 약 94.3%가 수입 시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생활용품 84.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2.2%, 화학공업제품 76.9%, 농림수산물 73.7%, 기계류 73.0% 순으로 FTA 특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자전기제품은 42.6%로 낮은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3 수입 FTA 활용 가능 비중 비교 : 전협정(201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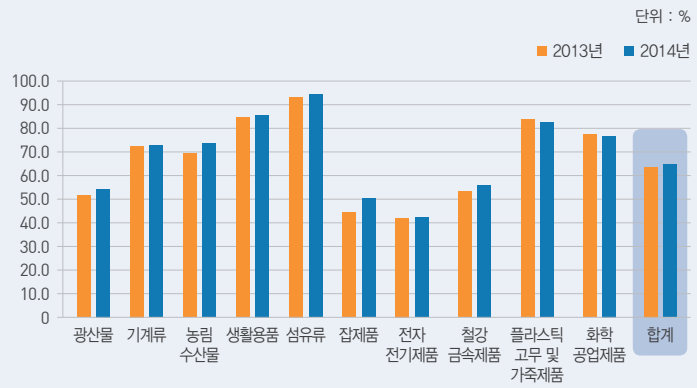

5) 국제무역연구원(2015.3), Trade Brief 11호, 수입급증, 수출답보로 對EU 무역수지 적자 확대

FTA 특혜수입 활용률 : 전협정 평균 69.3%, 전년대비 4.0%p. 감소

2014년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전협정 평균 69.3%로 도출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4.0%p.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2014년 FTA 특혜수입 활용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섬유류', 83.7%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은 특혜수입 FTA 활용 가능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FTA 활용도가 개방도에 비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위 품목군은 농림수산물로 수입 FTA 활용률은 80.9%로 전년보다 0.7%p. 감소하였다.

한편 수입 FTA 활용률이 가장 높게 증가한 품목은 생활용품으로 2013년보다 2.9%p.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수입 FTA 활용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광산물로 전년대비 2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FTA 수입 활용률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2013	2014	증감
광산물	92.2	67.9	-24.3
기계류	62.6	62.3	-0.2
농림수산물	81.6	80.9	-0.7
생활용품	69.2	72.1	2.9
섬유류	81.7	83.7	2.0
잡제품	57.5	53.2	-4.3
전자전기제품	53.6	54.4	0.7
철강금속제품	68.9	68.7	-0.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7.8	77.1	-0.7
화학공업제품	76.6	77.4	0.8
총합계	73.3	69.3	-4.0

03 산업별 FTA 특혜 수출 동향[6]

기계류

2014년 기계류의 FTA 활용수출액[7]의 협정별 점유율은 EU(52.5%) 〉 미국(35.4%) 〉 칠레(4.9%) 〉 터키(4.6%) 〉 페루(2.1%) 〉 EFTA(0.5%)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7.9%로 두 개 국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기계류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금 액	점유율	금 액	점유율
EU	11,340	51.7	12,011	52.5
미국	8,090	36.9	8,112	35.4
칠레	1,259	5.7	1,128	4.9
터키	656	3.0	1,054	4.6
페루	496	2.3	486	2.1
EFTA	90	0.4	104	0.5
FTA 총합계	21,931	100.0	22,895	100.0

한-EU FTA : 기계류 FTA 활용률 89.7%의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우선 기계류의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U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절반 이상인 52.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1.7%에서 점유율이 0.8%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4]와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46.4%) 〉 자동차부품(27.7%) 〉 원동기 및 펌프(5.1%) 〉 기계요소(3.9%) 〉 금속공작기계(3.9%) 순이다.

對EU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9.7%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으나, 90%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로 나타났다.

6) 수출의 경우 기관발급인 아세안과 인도는 제외하고 분석함.
7) FTA 대상 C/O 발급 금액을 의미. 이하 같음

그림 4 對EU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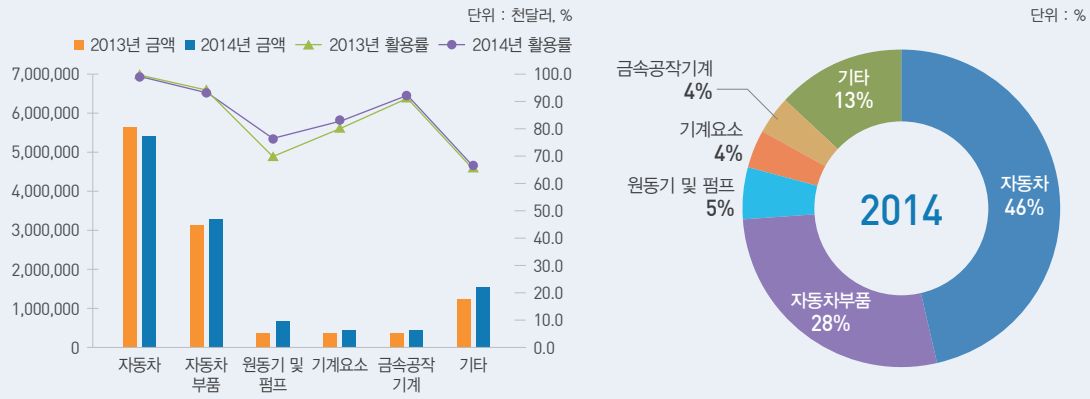

한-미 FTA : 기계류 FTA 활용 중 자동차 부품 점유 우세

기계류에서 규모 기준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5.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36.9%에서 점유율이 1.5%p. 감소한 수준이나, 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5]와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섬유 및 화학기계,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부품(67.0%) 〉 섬유 및 화학기계(8.6%) 〉 원동기 및 펌프(7.6%) 〉 금속공작기계(5.0%) 〉 기계요소(4.4%) 순으로 나타났다.

對미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7.3%로 전년대비 3.6%p. 감소하였으나, EU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계류 FTA 활용률은 섬유 및 화학기계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속공작기계, 기계요소, 원동기 및 펌프 등에서는 활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對미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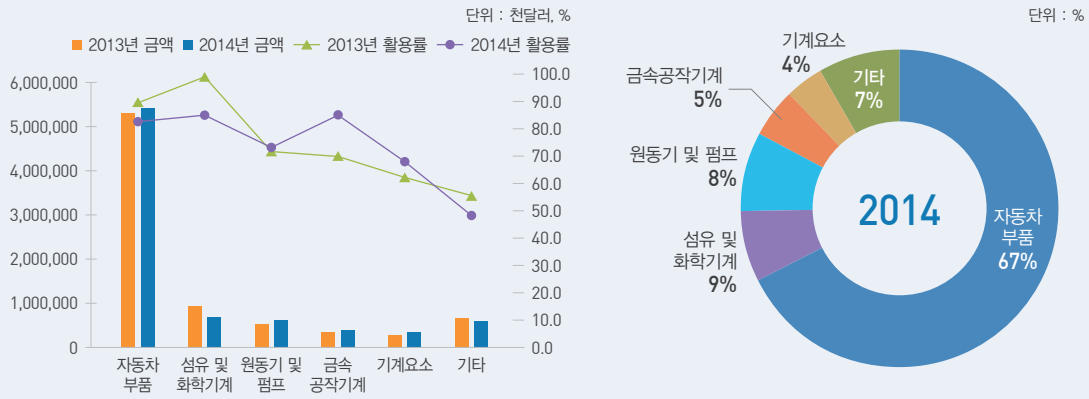

한-칠레 FTA : 자동차의 FTA 특혜수출 활용률 증가

기계류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7%에서 점유율이 0.6%p. 감소한 수준으로, 특혜 수출 규모도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6]과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89.8%) 〉 자동차부품(4.5%) 〉 기계요소(1.6%)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0.9%) 〉 원동기 및 펌프(0.6%) 순으로 파악되었다.

對칠레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8.0%로 이는 전년대비 2.7%p. 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자동차로 나타났다.

그림 6 對칠레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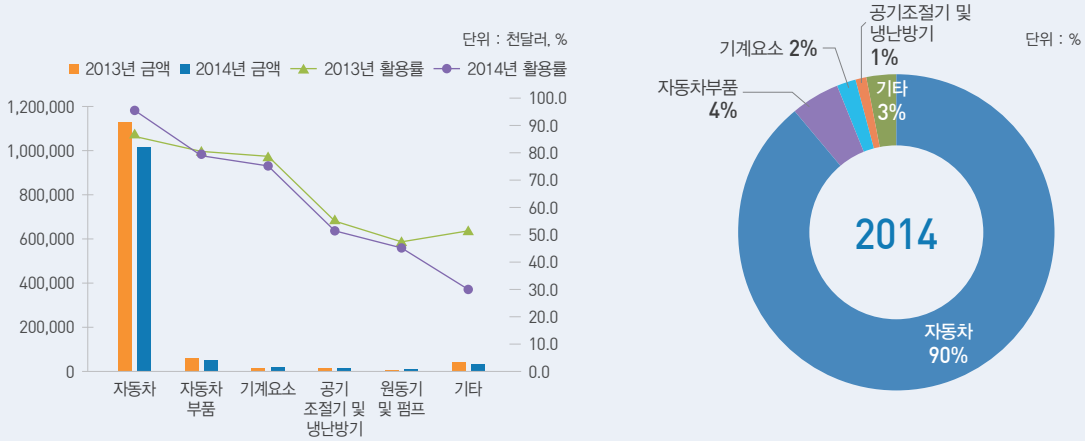

한-터키 FTA : 기계류의 FTA 특혜수출 활용률 크게 상승

기계류에서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3.0%에서 점유율이 1.6%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7]과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 부품(27.5%) 〉 자동차(24.0%) 〉 원동기 및 펌프(15.3%)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7.0%) 〉섬유 및 화학기계(6.4%) 순으로 나타났다.

對터키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8.9%로 이는 전년대비 20.4%p. 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로 나타났다.

기계류의 對터키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7 對터키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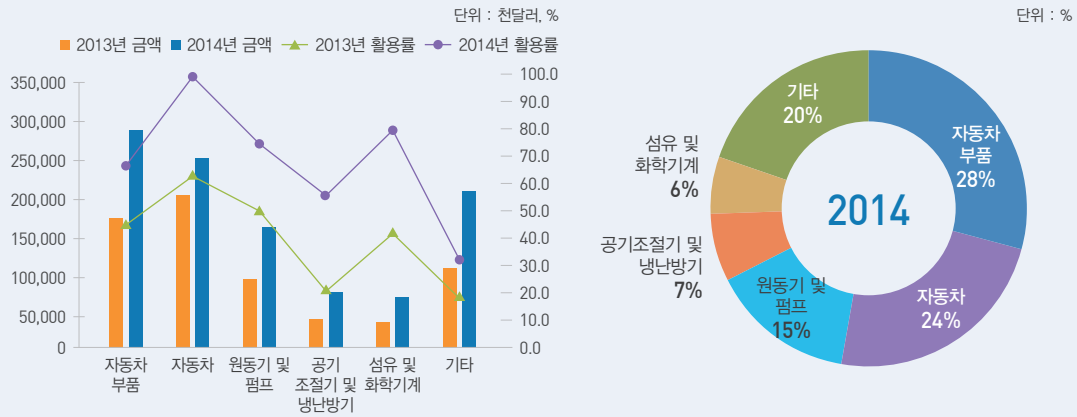

한-페루 FTA : 기계류의 FTA 활용 수출은 자동차가 대부분을 점유

기계류에서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3%에서 점유율이 0.2%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8]과 같이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99.7%) 〉 기타 산업기계(0.2%) 등으로 자동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對페루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9.3%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기계류 중 FTA 활용률 증가한 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對페루 자동차 부품 특혜수출 금액은 2013년 2만달러 수준에서 2014년 18.4만달러로 증가함과 동시에 활용률은 2013년 45.5%에서 2014년 72.9%로 크게 증가하였다. 對페루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 등 연관 산업의 수출 및 FTA 활용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8 對페루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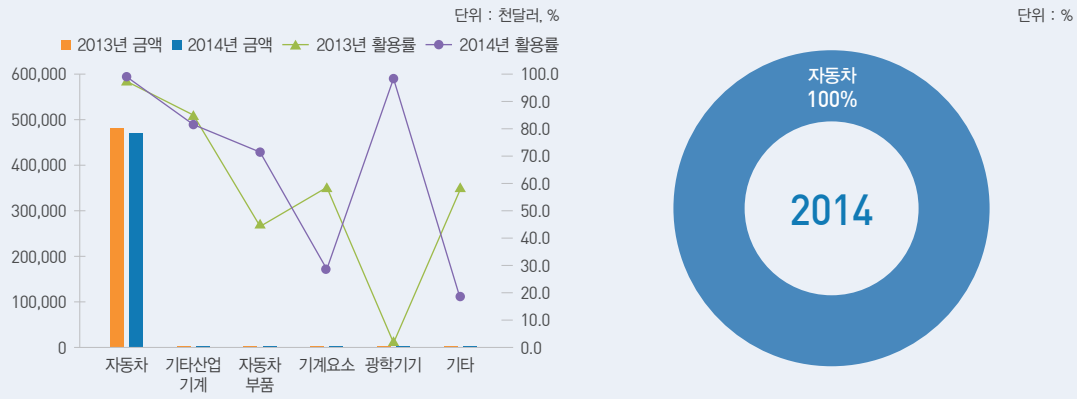

한-EFTA FTA : 자동차의 FTA 활용 수출 규모 증가

기계류에서 금액 기준 6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4% 점유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0.4%에서 점유율이 0.1%p.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9]와 같이 對EFTA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공구, 자동차부품 등 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84.1%) 〉 공구(5.4%) 〉 자동차부품(4.3%) 〉 섬유 및 화학기계(1.2%) 〉 원동기 및 펌프(1.0%) 순으로 자동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對EFTA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7.5%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로 나타났다.

그림 9 對EFTA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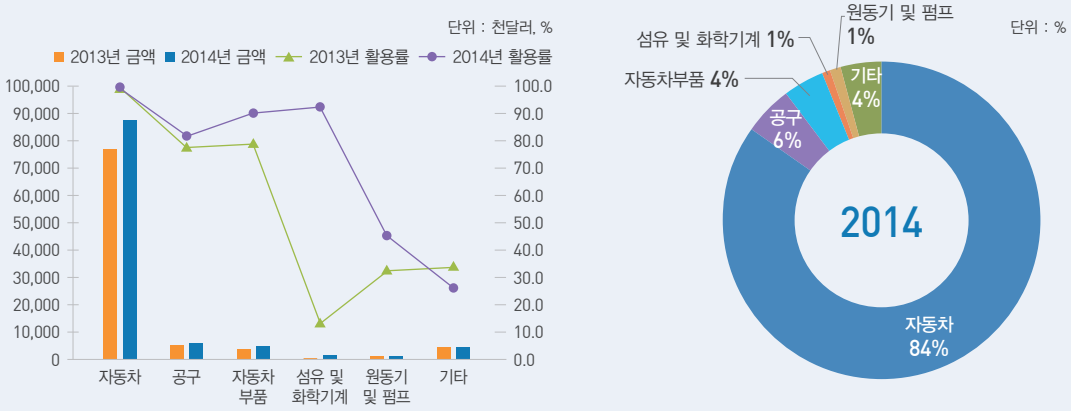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2014년 제2위 FTA 활용 품목군인 화학공업제품의 FTA 활용수출액[8]의 협정별 점유율은 EU(51.3%) 〉 미국(22.4%) 〉 터키(22%) 〉 칠레(3.5%) 〉 EFTA(0.5%) 〉 페루(0.3%)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73.7%로 집중되어 있다.

■표 10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2,330	54.6	2,994	51.3
미국	1,065	24.9	1,309	22.4
터키	627	14.7	1,281	22.0
칠레	211	4.9	202	3.5
EFTA	26	0.6	31	0.5
페루	12	0.3	20	0.3
FTA 총합계	4,271	100.0	5,836	100.0

8) FTA 대상 C/O 발급 금액을 의미. 이하 같음

한-EU FTA : 화학류의 FTA 특혜수출 절반 이상이 합성수지, 활용률 동반 상승

화학공업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51.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4.6%에서 점유율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10]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기타석유 화학제품 등 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58.2%) 〉 정밀화학원료(11.2%) 〉 기타석유 화학제품(8.6%) 〉 기타화학공업제품(5.6%) 〉 석유화학 합섬원료(5.0%) 순으로 합성수지가 매우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對EU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7.1%로 전년대비 2.6%p. 증가하였다.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기타화학공업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對EU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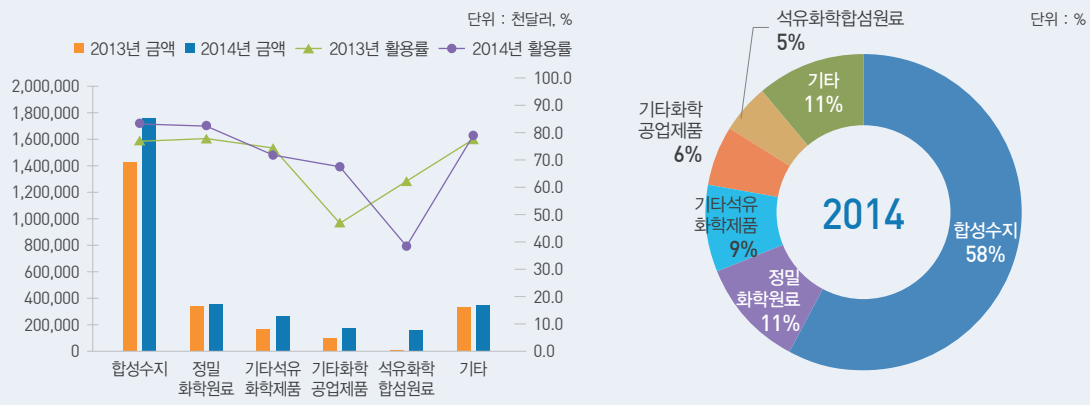

한-미 FTA : 화학류 2014년 FTA 특혜수출 활용률 74.2%로 높은 수준 유지

화학공업제품에서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2.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4.9%에서 점유율이 2.5%p. 감소한 수준이나, 특혜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1]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기타석유화학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51.0%) 〉 정밀화학원료(14%)〉 기타석유화학제품(12.4%) 〉 기타화학공업제품(5.2%) 〉 석유화학 합섬원료(4.7%) 순으로 EU와 마찬가지로 합성수지가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對미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4.2%로 전년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기타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합섬원료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對미국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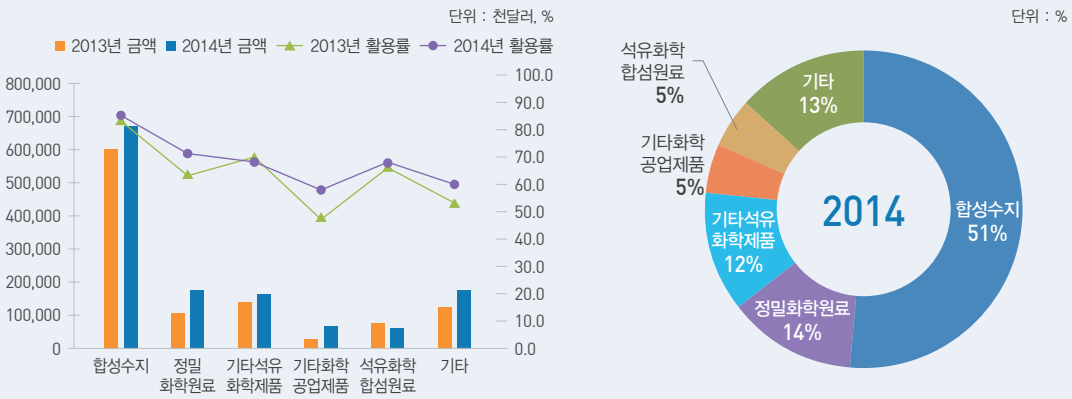

한-터키 FTA : 화학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87.8%, 전년대비 26.2%p. 증가

화학공업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2.0%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4.7%에서 점유율이 7.3%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2]와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섬원료, 기타석유 화학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67.2%) 〉 석유화학합섬원료(11.3%) 〉 기타석유 화학제품(10.8%) 〉 정밀화학원료(4.4%) 〉 염료 및 안료(2.3%)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터키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7.8%로 이는 전년대비 26.2%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섬원료, 기타석유 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염료 및 안료로 전반적으로 對터키 화학공업제품의 FTA 활용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2 對터키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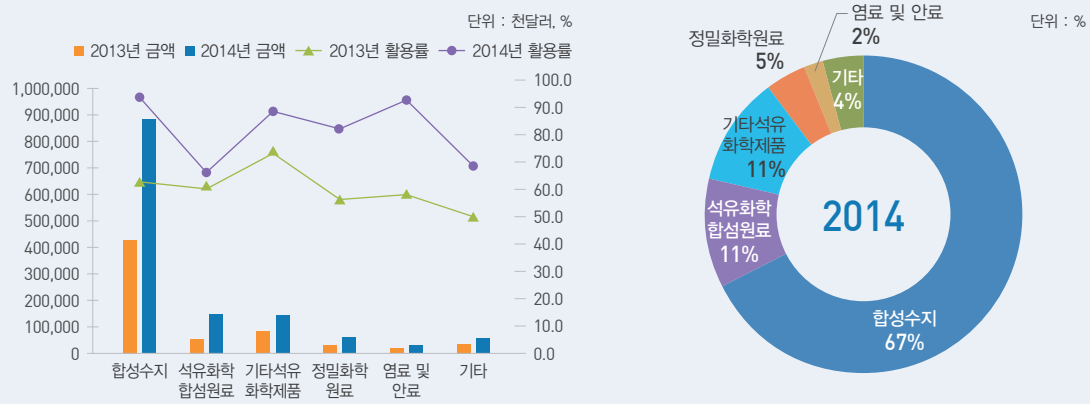

한-칠레 FTA : 합성수지 비중이 압도적, 75.5%의 안정된 FTA 특혜수출 활용률

화학공업제품에서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4.9%에서 점유율이 1.4%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13]과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74.4%) 〉 기타석유화학제품(6.4%) 〉 정밀화학원료(5.3%) 〉 시멘트(4.8%) 〉 합성고무(2.5%) 순으로 나타났다.

對칠레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5.5%로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다.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합성고무 등이다.

그림 13 對칠레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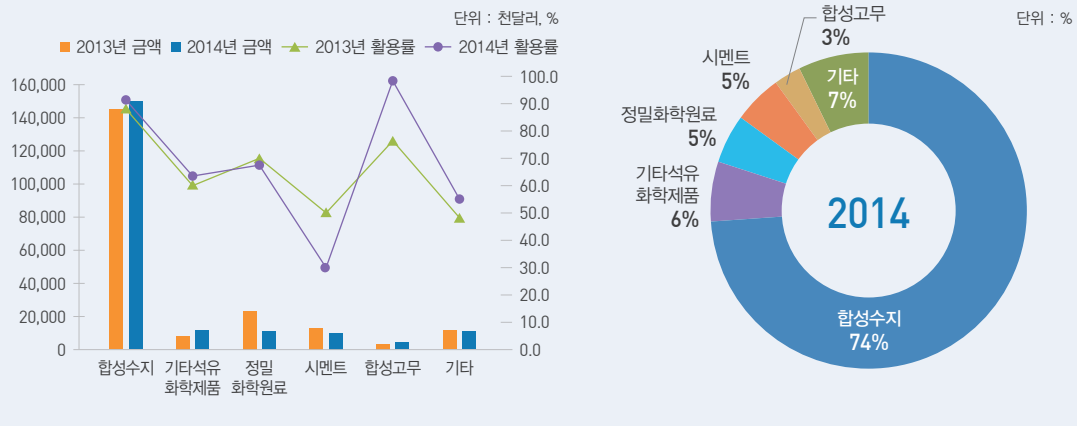

한–EFTA FTA :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3.4%로 전년대비 –11.6%p. 감소

화학공업제품에서 금액 기준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5% 점유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0.6%에서 점유율이 0.1%p.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14]와 같이 對EFTA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연료 및 안료,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41.8%) 〉 염료 및 안료(20.1%) 〉 기타석유 화학제품(16.4%) 〉 기타화학 공업제품(13.1%) 〉 정밀화학원료(2.9%) 순으로 타 FTA에 비해 염료 및 안료 등 이외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對EFTA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3.4%로 전년대비 11.6%p. 감소하였다.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감소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로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특혜수출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對EFTA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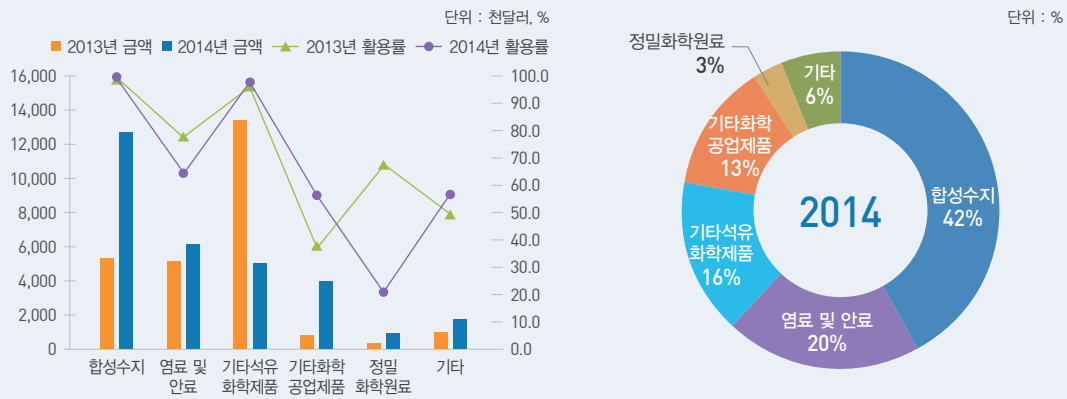

한-페루 FTA : 전반적으로 50% 이하의 낮은 FTA 활용, 합성수지의 특혜수출 증가 고무적

화학공업제품에서 6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3%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림 15]와 같이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종이제품, 농약 및 의약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49.6%) 〉 종이제품(34.1%) 〉 농약 및 의약품(8.6%) 〉 표면활성제(2.8%) 〉 정밀화학원료(1.2%) 순으로 합성수지와 종이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對페루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47.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0%p. 증가한 수준이나 타 FTA에 비해서는 활용률이 낮은 편이였다. 한편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로 특혜수출규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5 對페루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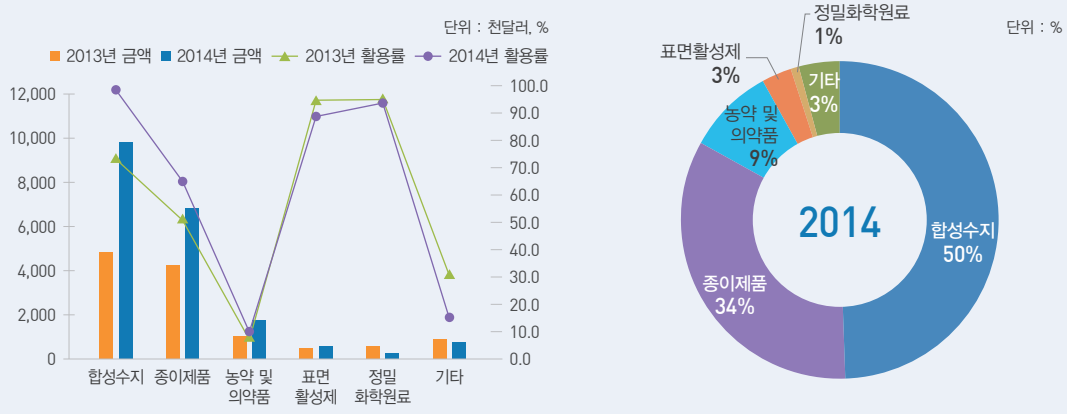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

2014년 전자전기제품의 FTA 활용수출액[9]의 협정별 점유율은 EU(49.7%) 〉 미국(41.3%) 〉 터키(6.1%) 〉칠레(2.1%) 〉 페루(0.7%) 〉 EFTA(0.1%)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91.0%로 집중되어 있다.

■표 11 전자전기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2,324	50.1	2,645	49.7
미국	1,919	41.4	2,197	41.3
터키	187	4.0	326	6.1
칠레	85	1.8	113	2.1
페루	113	2.4	38	0.7
EFTA	8	0.2	7	0.1
FTA 총합계	4,637	100.0	5,326	100.0

한-EU FTA : 1위 조명기기 특혜수출 규모 및 활용률 증가

전자전기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9.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0.1%에서 점유율이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16]와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조명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냉장고 등 이다. 그 비중은 조명기기(23%) 〉 건전지 및 축전지(13.9%) 〉 냉장고(10.2%) 〉 정지기기(9.9%) 〉 무선통신기기(9.3%)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EU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7.0%로 전년대비 1.9%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조명기기, 무선통신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등으로 나타났다.

9) FTA 대상 중 C/O 발급 금액을 의미. 이하 같음

그림 16 對EU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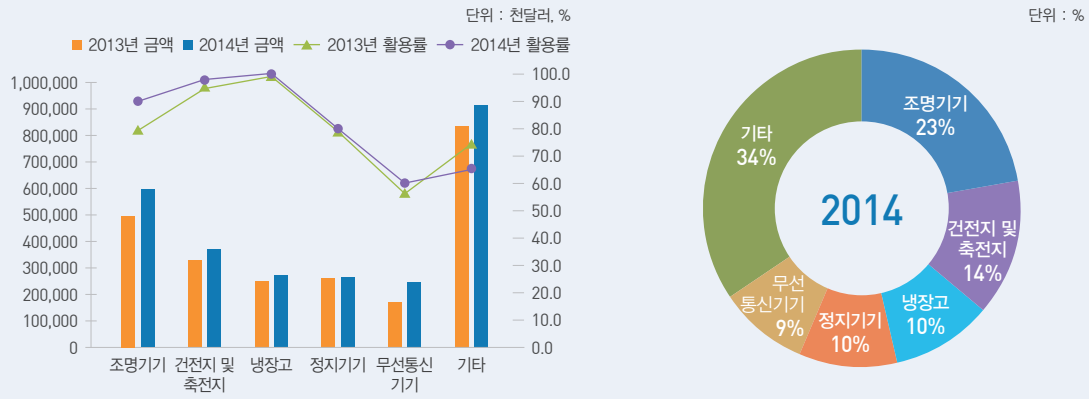

한-미 FTA : 3위 조명기기 특혜수출 규모 및 활용률 증가

전자전기제품에서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1.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41.4%에서 점유율이 0.1%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17]과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정지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조명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정지기기(14.5%) 〉 건전지 및 축전지(12.9%) 〉 조명기기(12.8%) 〉 계측제어분석기(10.7%) 〉 회전기기(10.1%) 〉 무선통신기기(9.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미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5.0%로 전년대비 2.6%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EU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조명기기, 회전기기, 무선통신기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명기기는 FTA 특혜수출 및 활용률이 동시에 증가한 주요 FTA 활용 품목이다.

그림 17 對미국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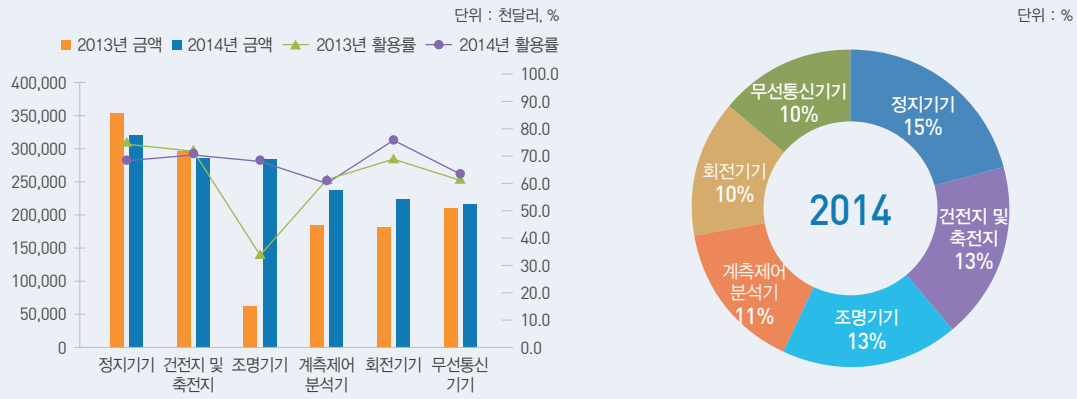

한-터키 FTA :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80.2%, 전년대비 23.8%p. 증가

전자전기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6.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4.0%에서 점유율이 2.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8]과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영상기기, 전선, 계측제어분석기 등이다. 그 비중은 영상기기(31.2%) 〉 전선(11.8%) 〉 계측제어분석기(10.4%) 〉 가정용 회전기기(8.0%) 〉 냉장고(7.7%)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터키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0.2%로 전년대비 23.8%p.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전선, 가정용회전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전기제품의 對터키 FTA를 활용한 특혜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8 對터키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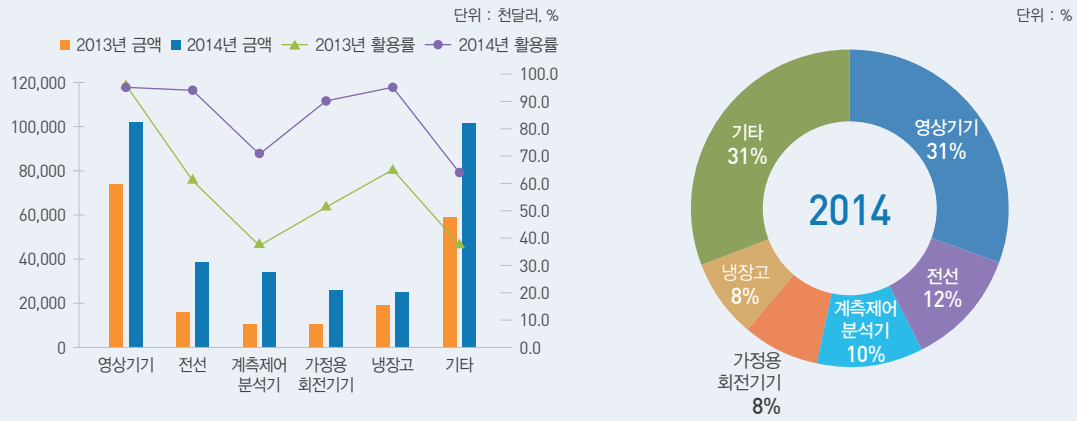

한-칠레 FTA : '정지기기'의 특혜수출 규모 및 활용률 증가

전자전기제품에서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1%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8%에서 점유율이 0.3%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9]와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건전지 및 축전지, 정지기기 등 이다. 그 비중은 건전지 및 축전지(28.1%) 〉 정지기기(23.4%) 〉 무선통신기기(11.6%) 〉 기타충전기기(9.2%) 〉 전선(8.9%) 순이다.

2014년 對칠레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4.4%로 전년대비 3.5%p. 증가하였다. 2014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기타충전기기, 전선, 정지기기 등이다.

그림 19 對칠레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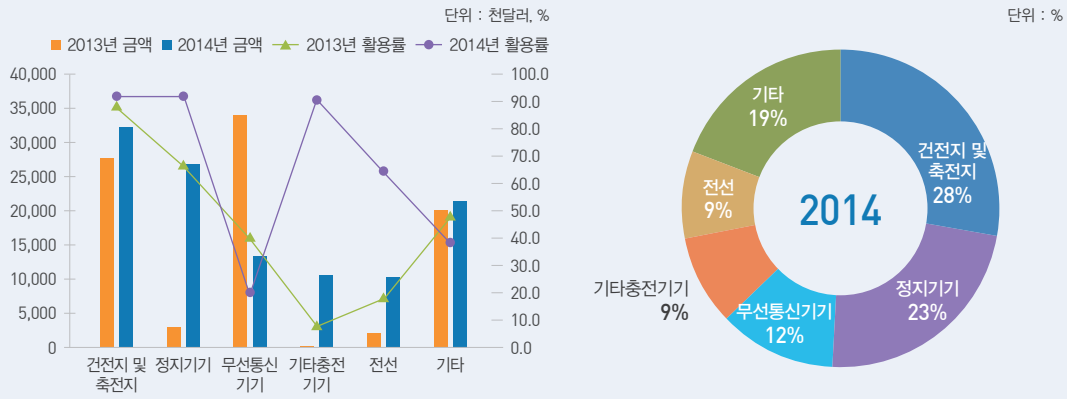

한-페루 FTA : 전자전기제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0.5%로 높은 수준 유지, 영상기기의 특혜수출 규모는 크게 감소

전자전기제품에서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4%에서 점유율이 1.7%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20]과 같이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영상기기, 냉장고, 가정용회전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영상기기(59.2%) 〉 냉장고(19.8%) 〉 가정용회전기기(11.1%) 〉 건전지 및 축전지(7.8%) 〉 무선통신기기(1.5%) 순으로 영상기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페루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0.5%로 전년대비 6.6%p. 감소하였으나, 높은 수준이다. 한편 2014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냉장고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특혜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위 품목인 영상기기의 특혜수출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20 對페루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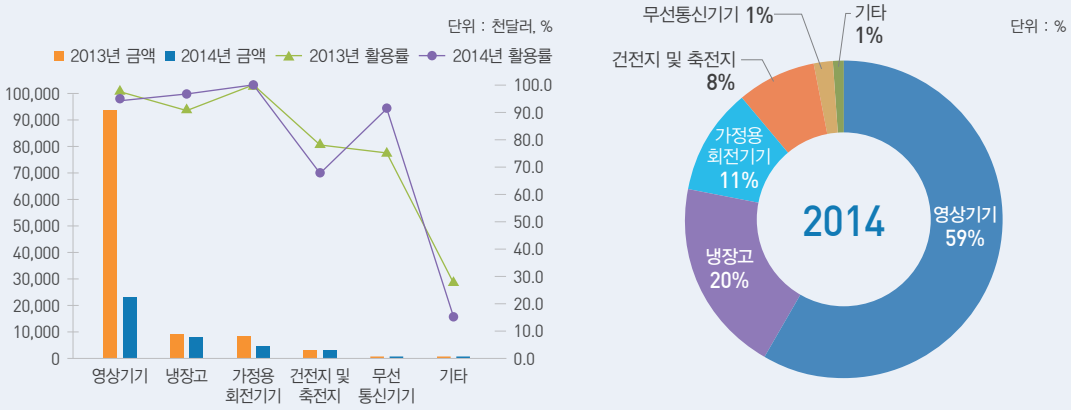

한–EFTA FTA : 전자전기제품 중 FTA 특혜수출 활용률 증가 품목 '회전기기'

전자전기제품에서 금액 기준 6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1% 점유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0.2%에서 점유율이 0.1%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21]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전선, 건전지 및 축전지 등 이다. 그 비중은 전선(17.7%) 〉 건전지 및 축전지(12.7%) 〉 전자응용기기(11.1%) 〉 회전기기(10.7%) 〉 가정용회전기기(9.7%) 순으로 특혜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014년 對EFTA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46.9%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전년대비 –8.0%p.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회전기기로 나타났다.

그림 21 對EFTA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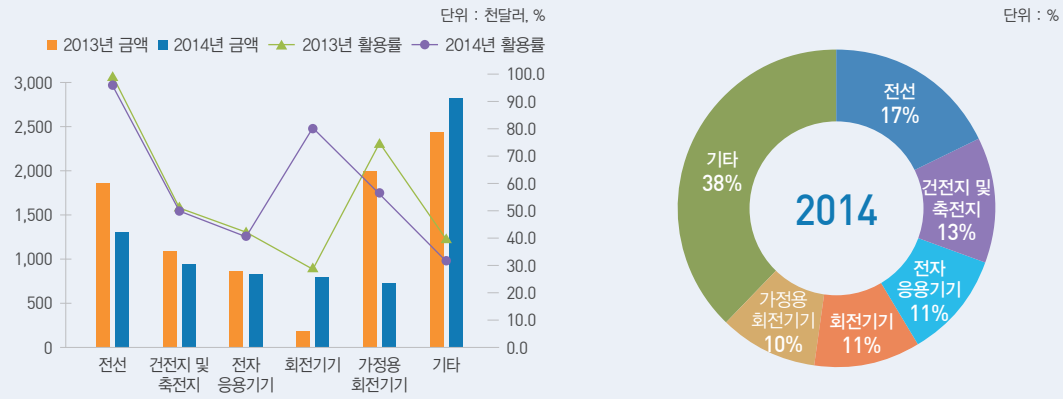

04 산업별 FTA 특혜 수입 동향

기계류

2014년 기계류의 FTA 활용수입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73.0%) 〉 미국(18.9%) 〉 EFTA(4.9%) 〉 아세안(2.4%) 〉 인도(0.5%) 〉 터키(0.4%)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91.9%로 집중되어 있다.

▪표 12 기계류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11,764	71.9	13,517	73.0
미국	3,248	19.9	3,490	18.9
EFTA	860	5.3	899	4.9
아세안	374	2.3	444	2.4
인도	72	0.4	86	0.5
터키	36	0.2	68	0.4
FTA 총합계	16,353	100.0	18,504	100.0

한-EU FTA :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73.0%를 점유

우선 기계류의 1위 FTA 활용수입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73.0%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71.9%에서 점유율이 1.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2]와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49.1%) 〉 원동기 및 펌프(9.8%) 〉 자동차부품(9.8%) 〉 기계요소(6.4%) 〉 섬유 및 화학기계(3.5%)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EU 기계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69.4%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다. 기계류 가운데 2014년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없으며, 대부분 전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2 對EU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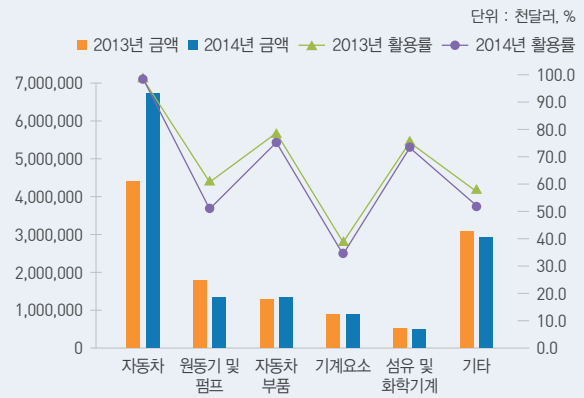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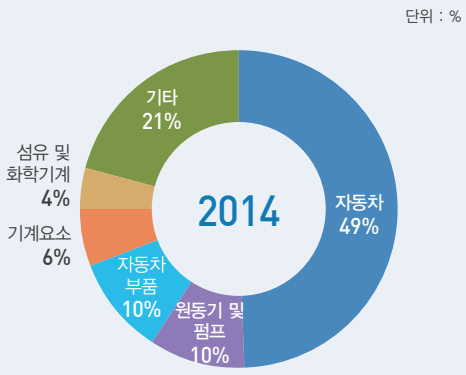

한-미 FTA : 기계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50.6%, 변화 미미

기계류에서 2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18.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9.9%에서 점유율이 1.0%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23]과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광학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24.8%) 〉 원동기 및 펌프(12.9%) 〉 광학기기(11.6%) 〉 자동차부품(7.7%) 〉 기계요소(6.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미 기계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50.6%로 전년대비 3.0%p.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등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활용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3 對미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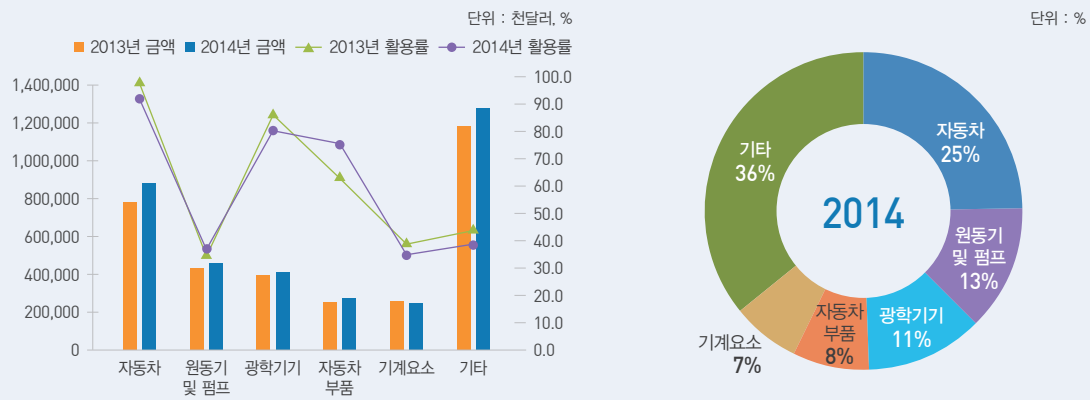

한-EFTA FTA : 기계류 FTA 특혜수입 가운데 시계가 49.7%로 압도적

기계류에서 금액 기준 3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4.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5.3%에서 점유율이 0.4%p.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24]와 같이 對EFTA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시계, 금속공작기계, 섬유 및 화학기계 등이다. 그 비중은 시계(49.7%) 〉 금속공작기계(10.2%) 〉 섬유 및 화학기계(8.9%) 〉 원동기 및 펌프(7.5%) 〉 기계요소(6.4%) 순으로 자동차 중심의 타FTA의 기계류 수입과 다르게 시계의 비중이 절반 가량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 특징적이다.

2014년 對EFTA 기계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평균 40.5%로 전년대비 2.3%p. 증가하였다. 기계류 가운데 2014년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 기계요소로 나타났다.

그림 24 對EFTA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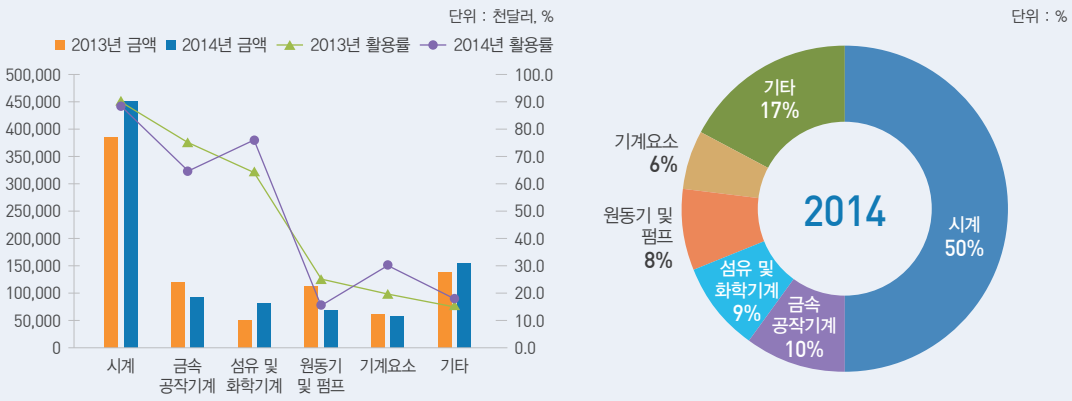

한–아세안 FTA : 기계류 중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수입 활용률 증가 주목

기계류에서 4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3%에서 점유율이 0.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5]와 같이 對아세안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 기계요소, 자동차 부품 등이다. 그 비중은 원동기 및 펌프(23.3%) 〉 기계요소(13.6%) 〉 자동차부품(12.6%)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1.4%) 〉 금속공작기계(9.3%)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아세안 기계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54.6%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기계류 가운데 기계요소, 자동차 부품, 특히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활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對아세안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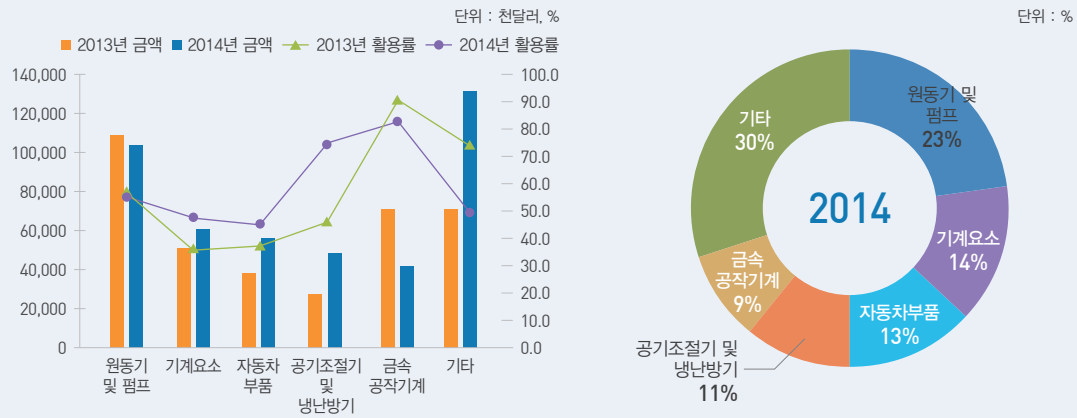

한-인도 CEPA : 기계류 중 섬유 및 화학기계의 활용률 증가

기계류에서 5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인도 CEP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4%에서 점유율이 0.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6]와 같이 對인도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이다. 그 비중은 원동기 및 펌프(34.6%) 〉 자동차부품(32.1%) 〉 기계요소(11.8%) 〉 섬유 및 화학기계(5.1%) 〉 기타산업기계(3.7%)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인도 기계류 CEP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평균 47.5%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다. 2014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로 나타났다.

그림 26 對인도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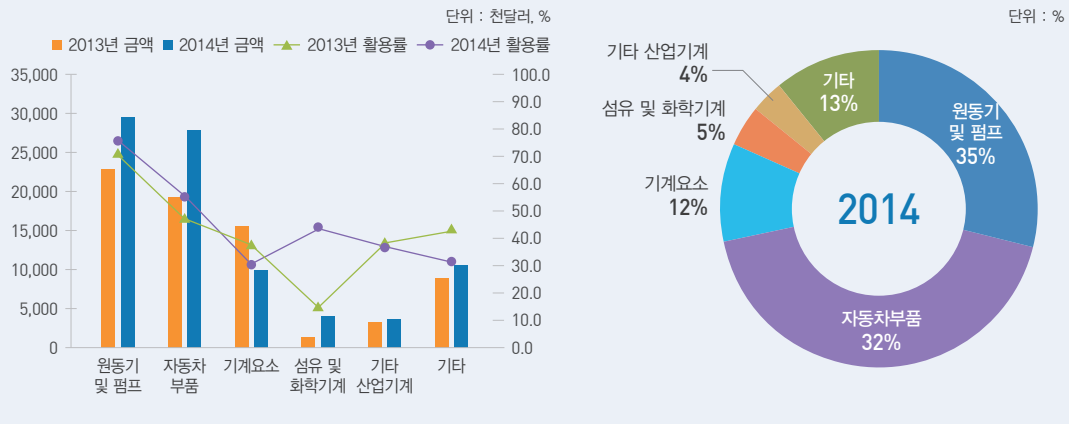

한–터키 FTA : 자동차 부품 특혜수입 규모 및 활용률의 증가

기계류에서 6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2%에서 점유율이 0.2%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7]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부품(69.4%) 〉 원동기 및 펌프(9.6%) 〉 금속공작기계(8%) 〉 기계요소(7.3%) 〉 섬유 및 화학기계(1.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터키 기계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0.4%로 전년대비 30.4%p.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금속공작기계, 기계요소, 섬유 및 화학기계로 나타났다. 한–터키 FTA 수입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27 對터키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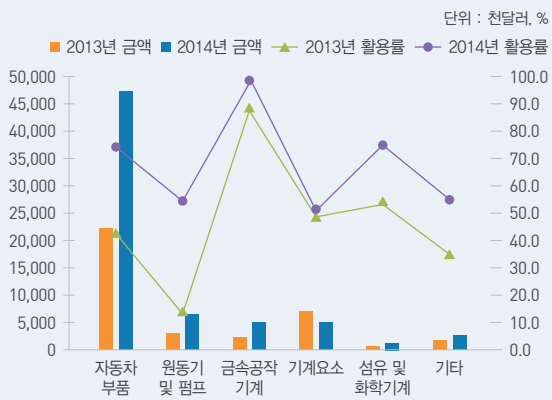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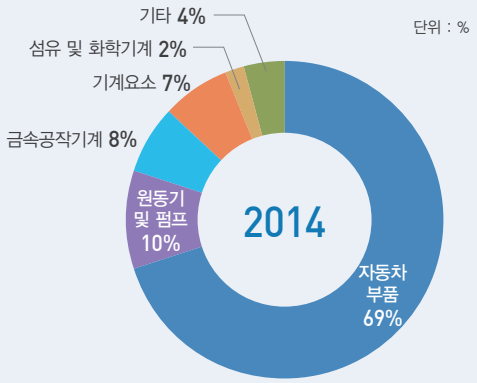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화학공업제품은 2014년 제2위 FTA 수입활용 품목군이다. FTA 활용수입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44.5%) 〉 미국(37.2%) 〉 아세안(10.5%) 〉 EFTA(3.4%) 〉 인도(3.4%) 〉 칠레(0.8%) 〉 터키(0.3%) 〉 페루(0.01%)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1.7%로 집중도가 높다.

■표 13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5,340	42.2	5,942	44.5
미국	5,032	39.7	4,964	37.2
아세안	1,243	9.8	1,401	10.5
EFTA	441	3.5	452	3.4
인도	423	3.3	449	3.4
칠레	107	0.8	110	0.8
터키	21	0.2	37	0.3
페루	1	0.008	2	0.01
FTA 총합계	12,667	100.0	13,354	100.0

한-EU FTA : 화학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3.7%, 전반적 변화 미미

우선 화학공업제품의 1위 FTA 활용수입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44.5%를 점하고 있다. 이는 2013년 42.2%에서 점유율이 2.3%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8]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등이다. 그 비중은 농약 및 의약품(21.9%) 〉 정밀화학원료(17.7%) 〉 합성수지(15.7%) 〉 기타정밀화학제품(8.0%) 〉비누치약 및 화장품(6.4%) 순으로 농약 및 의약품이 1위로 나타났다.

2014년 對EU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3.7%로 전년대비 0.7%p. 증가하였다.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기타정밀화학제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농약 및 의약품 등이나, 그 증가가 소폭에 불과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28 對EU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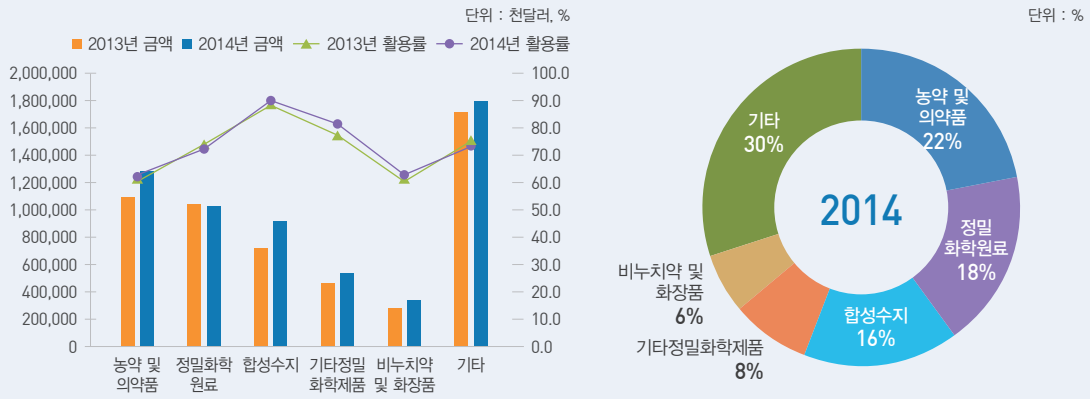

한-미 FTA : 화학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7.2%, 전반적 변화 미미

화학공업제품에서 2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37.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39.7%에서 점유율이 2.5%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29]와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기타정밀화학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17.4%) 〉 정밀화학원료(14.7%) 〉 기타정밀화학제품(11.9%) 〉 기타화학공업제품(10.8%) 〉 기타석유화학제품(6.2%) 순이다. 對미 화학공업제품의 FTA 특혜수출의 경우 합성수지가 절반 이상인 51.1%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지만, FTA 특혜수입은 다품목에 그 비중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그림 29 對미국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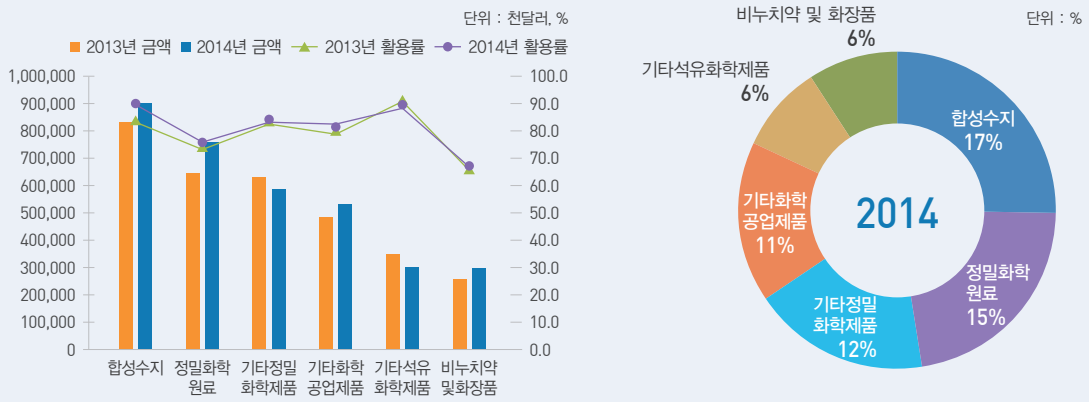

2014년 對미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7.2%로 전년대비 2.7%p.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한 품목은 기타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으로 EU와 마찬가지로 전반적 변화는 미미하다.

한-아세안 FTA :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91.0%로 높은 수준. 1위 품목 기타석유화학제품의 활용수입 및 활용률 증가

화학공업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10.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9.8%에서 점유율이 0.7%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0]과 같이 對아세안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이다. 그 비중은 기타석유화학제품(26.5%) 〉 기타정밀화학제품(23.9%) 〉 정밀화학원료(17.7%) 〉 합성수지(15.0%) 〉 기타화학공업제품(8.3%)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아세안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91.0%로 전년대비 4.6%p.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등으로 아세안의 화학공업제품의 FTA활용은 이미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30 對아세안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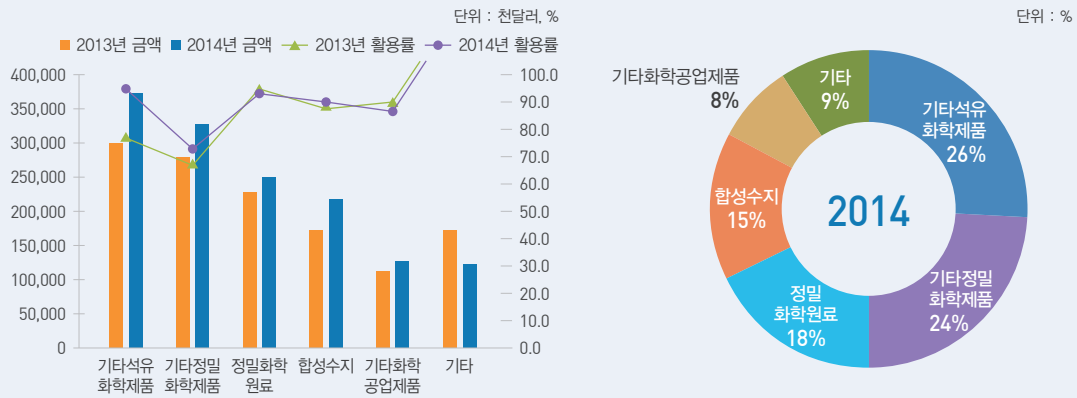

한-EFTA FTA : 농약 및 의약품 비중이 51.6%로 높게 나타남

화학공업제품에서 금액 기준 4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3.4% 점유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3.5%에서 점유율이 0.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1]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등 이다. 그 비중은 농약 및 의약품(51.6%) 〉 정밀화학원료(21.3%) 〉 합성수지(6.1%) 〉 기타화학공업제품(4.5%) 〉 기타 정밀화학제품(3.7%) 순으로 EU와 마찬가지로 농약 및 의약품 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EFTA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7.9%로 전년대비 5.5%p. 감소하였다. 이는 1위 품목인 농약 및 의약품의 활용률 감소에 기인한 결과다.

그림 31 對EFTA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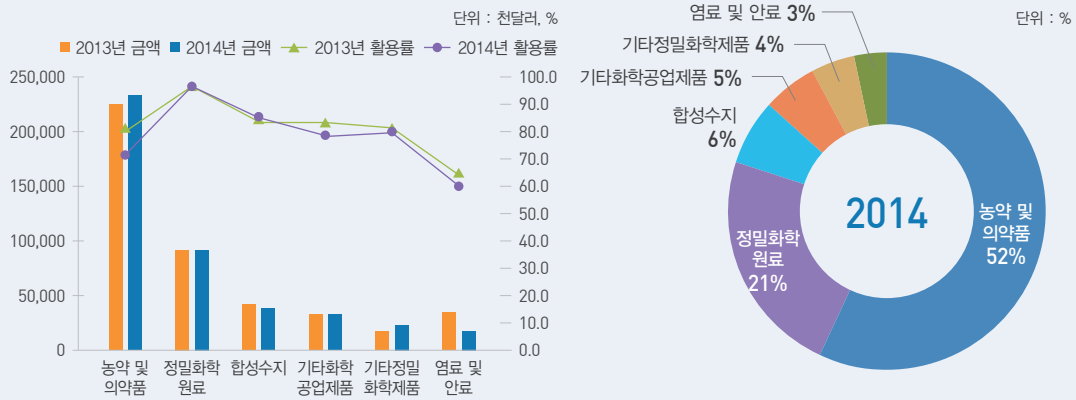

한-인도 CEPA : 화학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4.8%, 전년대비 11.5%p. 증가

화학공업제품에서 5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인도 CEP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013년 3.3%로 0.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2]와 같이 對인도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염료 및 안료, 농약 및 의약품 등이다. 그 비중은 정밀화학원료(39.7%) 〉 염료 및 안료(17.4%) 〉 농약 및 의약품(12.8%) 〉 기타석유화학제품(8.6%) 〉 기타정밀화학제품(7.2%) 순으로 정밀화학원료의 비중이 높았다

對인도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4.8%로 이는 전년대비 11.5%p.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염료 및 안료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對인도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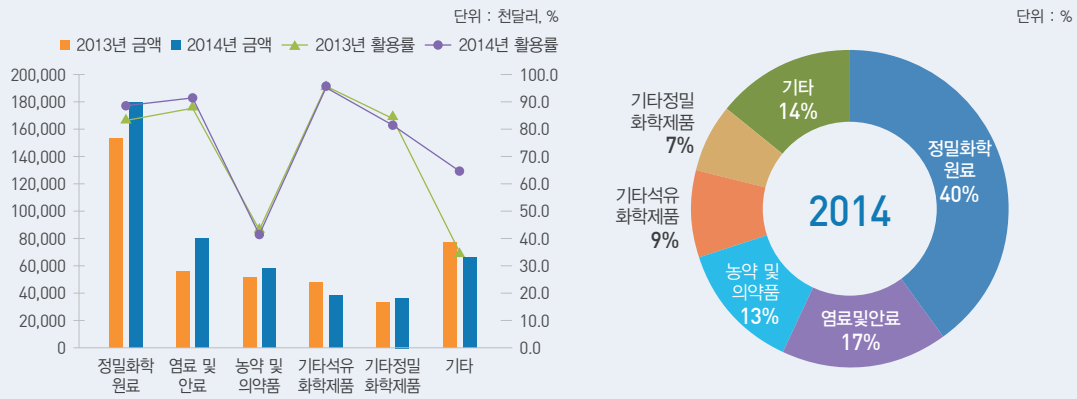

한-칠레 FTA : 화학류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96.7% 높은 수준

화학공업제품에서 6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8%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림 33]와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비료 등이다. 그 비중은 정밀화학원료(95.7%) 〉 기타정밀화학제품(2.5%) 〉 기타비료(1.4%) 〉 합성수지(0.1%) 〉 비누 치약 및 화장품(0.1%) 순이다.

對칠레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96.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4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로 전년에 수입이 전혀 없다가 2014년에 새로 특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對칠레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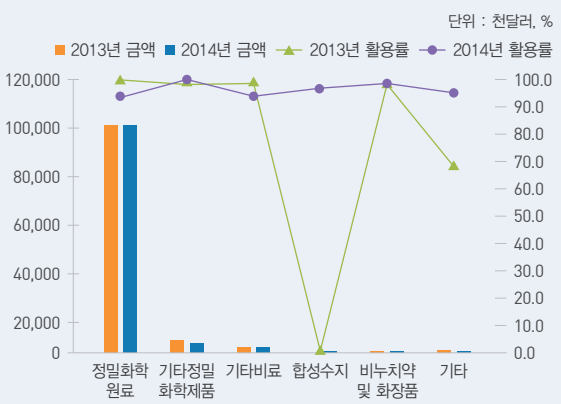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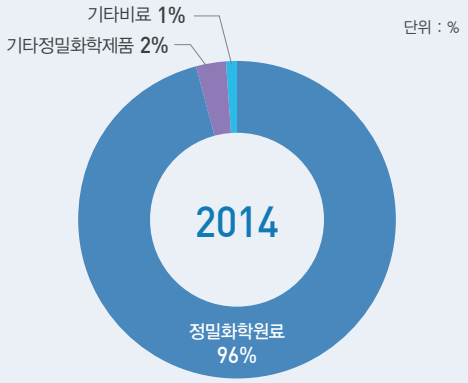

한-터키 FTA : 터키의 화학공업제품의 FTA활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화학공업제품에서 7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2%에서 점유율이 0.1%p.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4]와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기타정밀화학제품, 유리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정밀화학원료 (37.9%) 〉 기타정밀화학제품(18.8%) 〉 유리제품(12.3%) 〉 기타화학공업제품(10.1%) 〉 농약 및 의약품(9.6%) 순이다.

對터키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83.1%로 전년대비 무려 57%p. 증가하였다. 2014년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률은 정밀화학원료, 기타정밀화학제품, 유리제품 등 대부분 터키의 화학공업제품의 FTA활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34 對터키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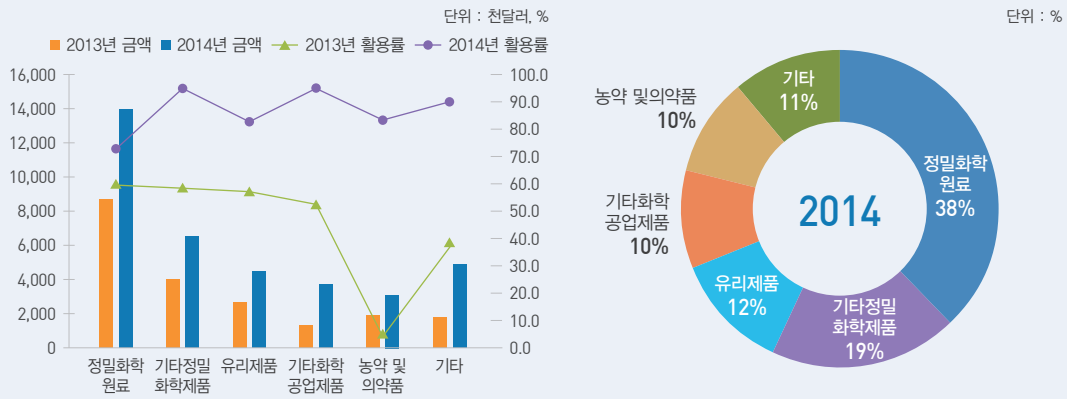

광산물

2014년 광산물의 FTA 활용수입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아세안(65.6%) 〉 EU(26.2%) 〉 페루(3.6%) 〉 미국(2.4%) 〉 칠레(0.9%) 〉 터키(0.6%) 〉 인도(0.5%) 〉 EFTA(0.3%) 순으로 나타난다. 對아세안과 對EU 점유율이 91.8%로 집중되어 있다.

■표 14 광산물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아세안	12,615	75.4	7,856	65.6
EU	2,822	16.9	3,132	26.2
페루	446	2.7	427	3.6
미국	308	1.8	290	2.4
칠레	60	0.4	112	0.9
터키	141	0.8	68	0.6
인도	43	0.3	57	0.5
EFTA	294	1.8	33	0.3
총합계	16,729	100	11,975	100

한–아세안 FTA : 천연가스 및 원유의 FTA 수입 및 활용률 감소

광산물의 1위 FTA 활용수입 규모인 한–아세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65.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75.4%에서 점유율이 9.8%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35]와 같이 對아세안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천연가스(76.9%) 〉 원유(20.2%) 〉 석유제품(1.5%) 〉 기타비금속광물(1.3%) 〉 석회석(0.1%)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아세안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77.3%로 전년대비 22.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천연가스 및 원유의 활용이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2014년 광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석유제품, 기타비금속광물, 석회석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對아세안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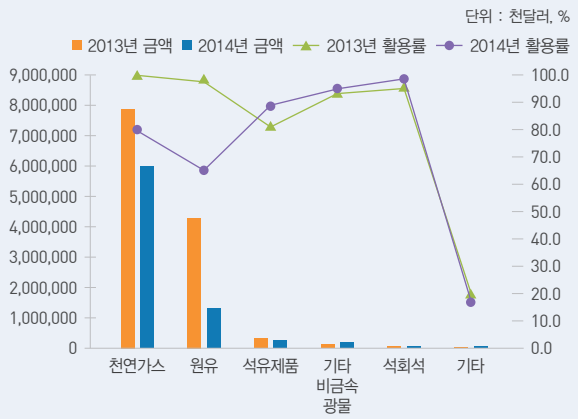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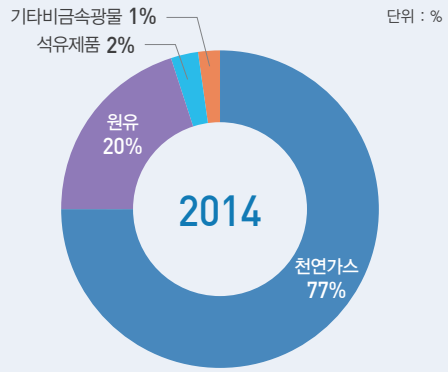

한-EU FTA :
특혜수입의 73.6%가 원유에 집중

광산물의 2위 FTA 활용수입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2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6.9%에서 점유율이 9.3%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6]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원유, 금은 및 백금, 석유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원유(73.6%) 〉 금은 및 백금(15.9%) 〉 석유제품(8.5%) 〉 기타비금속광물(1.3%) 〉 석탄(0.4%) 순으로 원유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對EU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58.0%로 전년대비 24.8%p. 감소하였다. 특혜수입의 74%가량을 차지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활용 감소가 그 원인이다. 한편 2014년 광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석탄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입규모는 매우 협소한 편이다.

그림 36 對EU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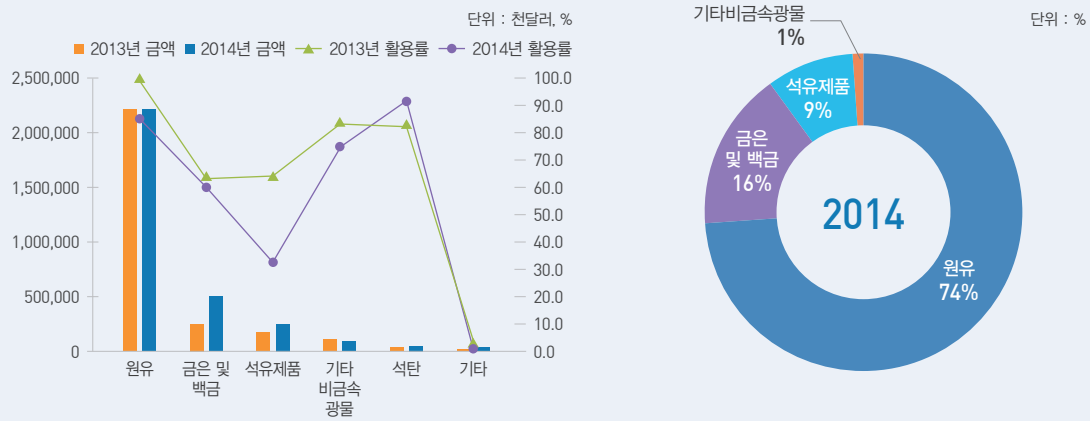

한-페루 FTA : 특혜수입의 대부분이 기타 비금속광물(100%)로 활용률 및 규모 증가

광산물에서 3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7%에서 점유율이 0.9%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7]과 같이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기타비금속광물이 100%로 나타났다. 對페루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96.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 37 對페루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한-미 FTA :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2.4%를 점유, 영향 미미

광산물에서 4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8%에서 점유율이 0.6%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8]과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석유제품, 기타비금속광물, 금은 및 백금 등이다. 그 비중은 석유제품(47.5%) 〉 기타비금속광물(16.7%) 〉 금은 및 백금(15.9%) 〉 고령토(11.8%) 〉 기타금속광물(7.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미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41.3%로 전년대비 19.6%p.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 광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기타 비금속광물, 고령토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對미국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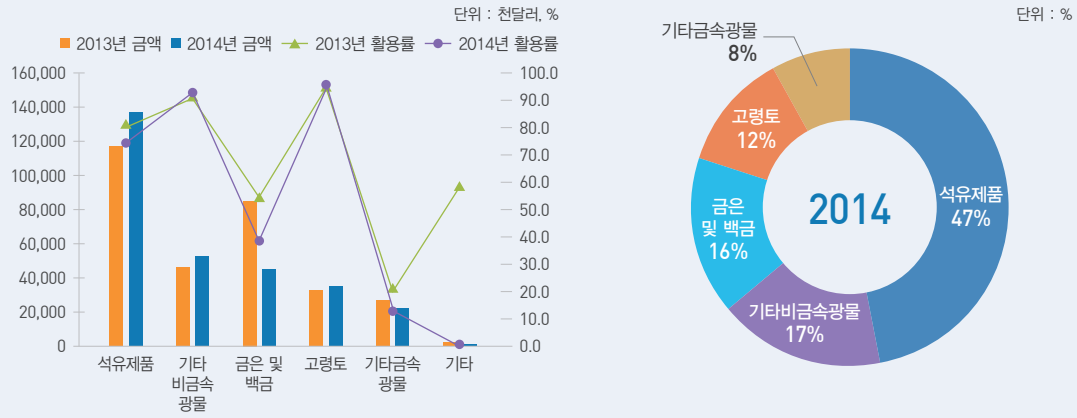

한-칠레 FTA :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 평균 100.0%

광산물에서 5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4%에서 점유율이 0.5%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39]와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기타금속광물, 기타비금속광물 등이다. 그 비중은 기타금속광물(98.6%) 〉 기타비금속광물(1.4%) 순으로 기타 금속광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對칠레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100.0%로 FTA 특혜가 가능한 품목은 모두 혜택을 향유하였다.

그림 39 對칠레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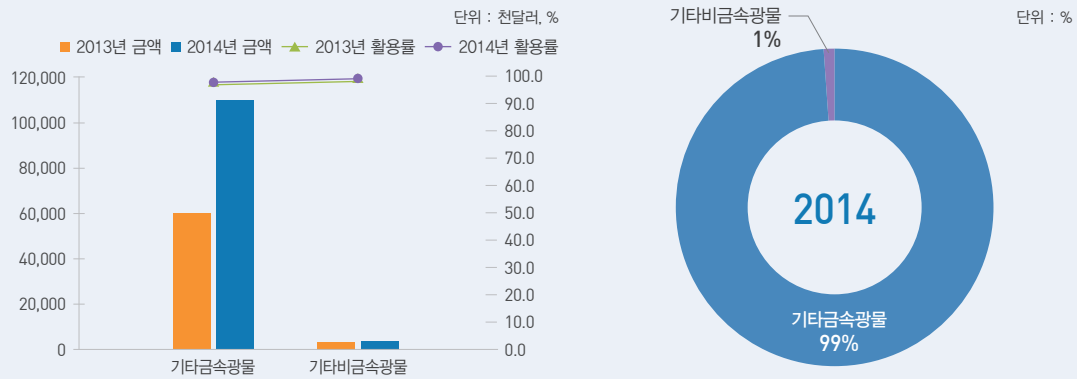

한-터키 FTA :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 평균 97.3%, 전년대비 27.1%p. 증가

광산물에서 6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8%에서 점유율이 0.2%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40]과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석유제품, 기타비금속광물, 석회석 등 이다. 그 비중은 석유제품(72.0%) 〉 기타비금속광물(23.8%) 〉 석회석(3.7%) 〉 기타금속광물(0.4%) 〉 고령토(0.1%)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터키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97.3%로 전년대비 27.1%p.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광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석유제품, 기타비금속광물, 석회석, 기타금속광물로 나타났다.

그림 40 對터키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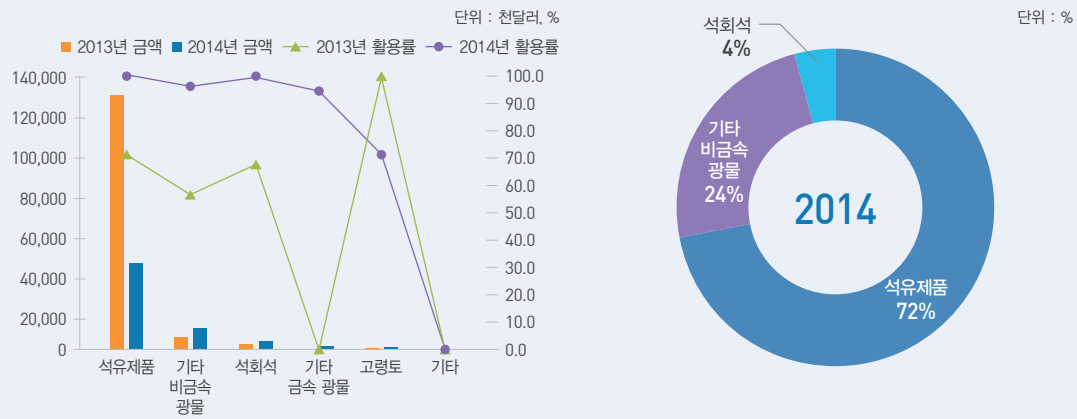

한-인도 CEPA : FTA 특혜수입 활용률 증가 품목은 소금, 석유제품, 고령토 등

광산물에서 7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인도 CEP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3%에서 점유율이 0.2%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41]과 같이 對인도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소금, 기타비금속광물, 기타금속광물 등이다. 그 비중은 소금(39.7%) 〉 기타비금속광물(35.6%) 〉 기타금속광물(14.8%) 〉 석유제품(5.7%) 〉 고령토(4.0%)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인도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39.3%로 전년대비 12.4%p. 증가하였다. 인도산 제품에 대한 FTA 수입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석유제품이 대부분 FTA 활용 수입은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된 결과다.

2014년 광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소금, 석유제품, 고령토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對인도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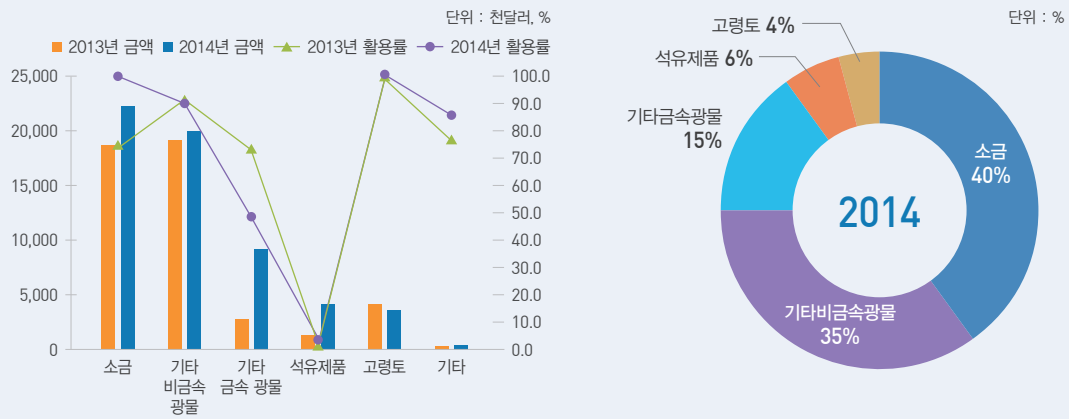

한-EFTA FTA :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금은 및 백금(94.0%), 활용률은 저조

광산물에서 금액 기준 8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EFTA FTA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3%를 점유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1.8%에서 점유율이 1.5%p.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42]와 같이 對EFTA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금은 및 백금, 기타 비금속광물, 석회석 등이다. 그 비중은 금은 및 백금(94.0%) 〉 기타비금속광물(5.3%) 〉 석회석(0.5%) 〉 석유제품(0.2%) 〉 흑연(0.002%) 순으로 금은 및 백금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EFTA 광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8.3%로 전년대비 35%p. 감소하였다. 한편 2014년 광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對EFTA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농림수산물

2014년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수입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42.3%) 〉 아세안(23.3%) 〉 EU(22.9%) 〉 칠레(6.2%) 〉 인도(1.8%) 〉 페루(1.6%) 〉 EFTA(1.5%) 〉 터키(0.3%) 순으로 나타난다. 對미국, 對아세안, 對EU 등 3개 협정 점유율이 88.5%로 집중되어 있다.

■표 15 농림수산물 FTA 활용 수입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3,848	42.5	4,639	42.3
아세안	2,097	23.2	2,557	23.3
EU	1,986	21.9	2,514	22.9
칠레	579	6.4	684	6.2
인도	256	2.8	193	1.8
페루	121	1.3	171	1.6
EFTA	153	1.7	168	1.5
터키	14	0.2	33	0.3
FTA 총합계	9,055	100.0	10,959	100.0

한-미 FTA :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42.3%를 점유, 안정적 FTA 활용

농림수산물에서 1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4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42.5%에서 점유율이 0.2%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43]와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육류, 곡실류, 축산가공품 등이다. 그 비중은 육류(28.0%) 〉 곡실류(22.1%) 〉 축산가공품(14.1%) 〉 식물성물질(10.2%) 〉 산식물(8.5%) 〉 기호식품(7.1%) 〉 농산가공품(3.5%)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미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87.3%로 전년대비 0.4%p. 증가하여,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육류, 축산가공품, 식물성물질, 산식물,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4% 이하의 소규모 활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對미국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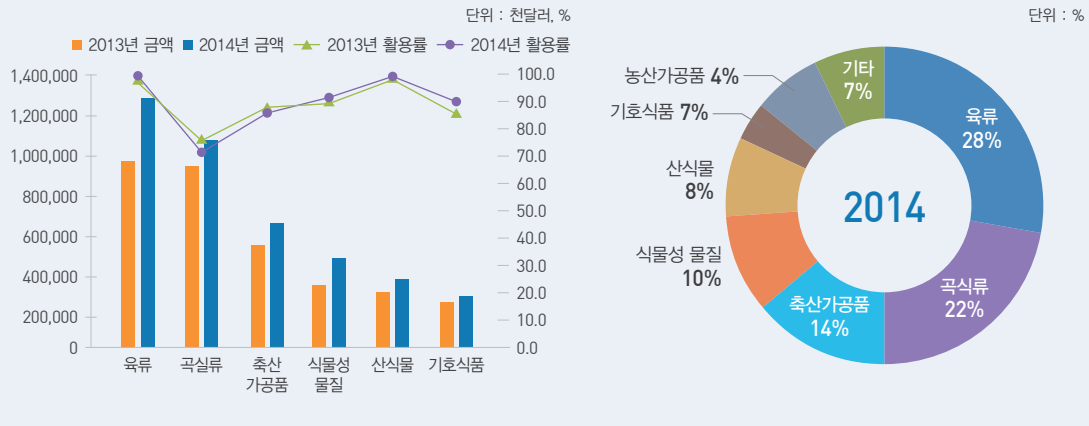

한-아세안 FTA :
목재류 특혜수입 활용률 증가

농림수산물에서 2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23.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3.2%에서 점유율이 0.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44]와 같이 對아세안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식물성물질, 기호식품, 목재류 등이다. 그 비중은 식물성물질(34.7%) 〉 기호식품(16.3%) 〉 목재류(16.0%) 〉 농산가공품(8.0%) 〉 연체동물(7.0%)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아세안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69.8%로 전년대비 3.3%p.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목재류 활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對아세안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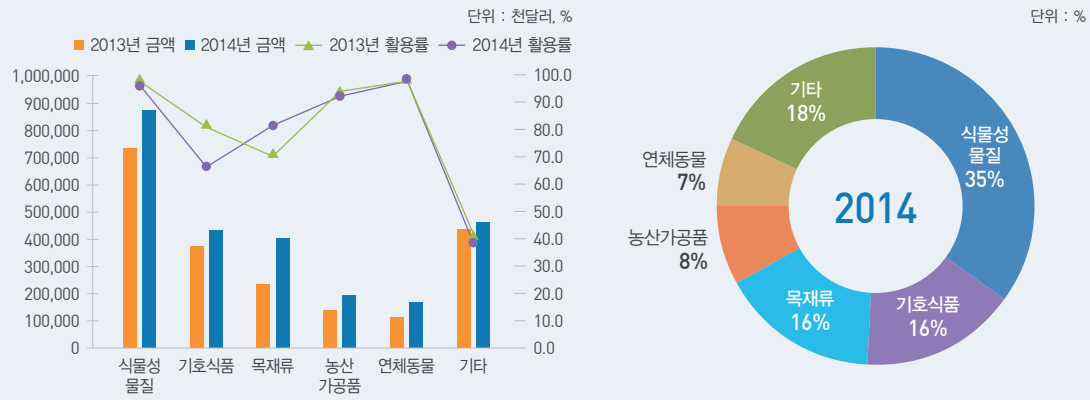

한-EU FTA :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84.9%, 안정적 FTA 활용

우선 농림수산물의 3위 FTA 활용수입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22.9%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1.9%에서 점유율이 1.0%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45]와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육류, 기호식품, 축산가공품 등이다. 그 비중은 육류(26.3%) 〉 기호식품(24.4%) 〉 축산가공품(15.7%) 〉 식물성물질(9.8%) 〉 목재류(9.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EU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84.9%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80%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축산가공품, 식물성 물질로 파악되었다.

그림 45 對EU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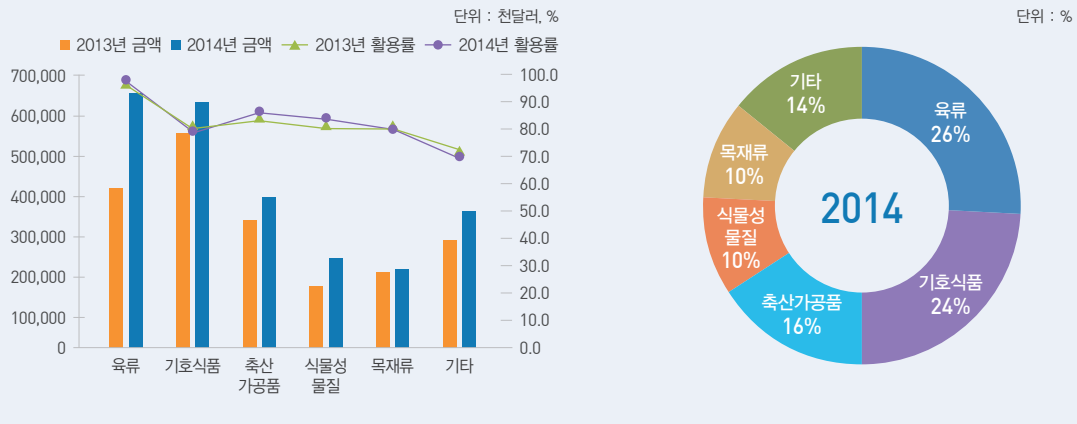

한-칠레 FTA : 레몬, 크랜베리 등 곡실류의 FTA 활용수입 증가

농림수산물에서 4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6.4%에서 점유율이 0.2%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46]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곡실류, 목재류, 육류 등이다. 그 비중은 곡실류(29.3%) 〉 목재류(19.0%) 〉 육류(14.1%) 〉 기호식품(9.3%) 〉 어류(9.0%) 순이다.

2014년 對칠레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98.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전년대비 2.1%p. 증가한 수준이다.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곡실류, 목재류, 기호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對칠레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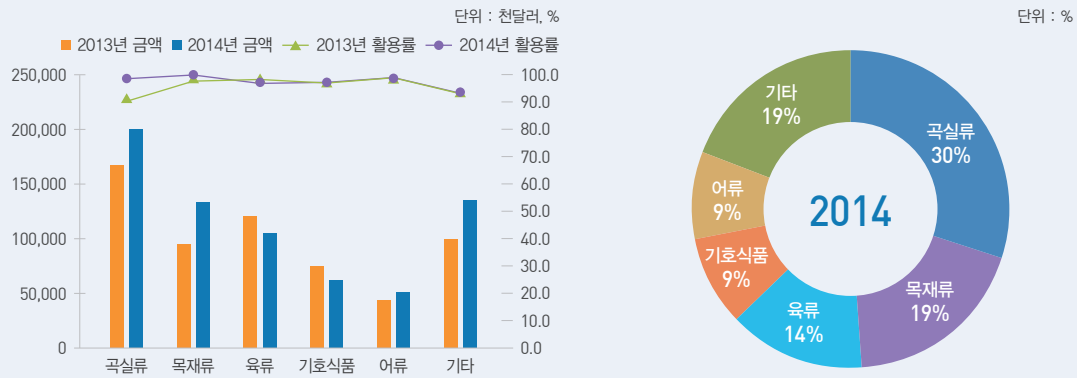

한-인도 CEPA : 대두유 오일 케이크 등 식물성 물질 등 특혜수입 규모 감소

농림수산물에서 4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인도 CEP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1.8%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2.8%에서 점유율이 1.0%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47]과 같이 對인도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식물성물질, 기호식품, 식물성 재료 등이다. 그 비중은 식물성물질(68.4%) 〉 기호식품(7.3%) 〉 식물성 재료(7.2%) 〉 곡실류(6.0%) 〉 어육 및 어란(3.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인도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46.2%로, 이는 전년 대비 11.1%p. 감소한 수준이다. 특혜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성물질의 활용률이 다소 낮아진 것이 전체 활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기호식품, 식물성 재료 등이다.

그림 47 對인도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CEP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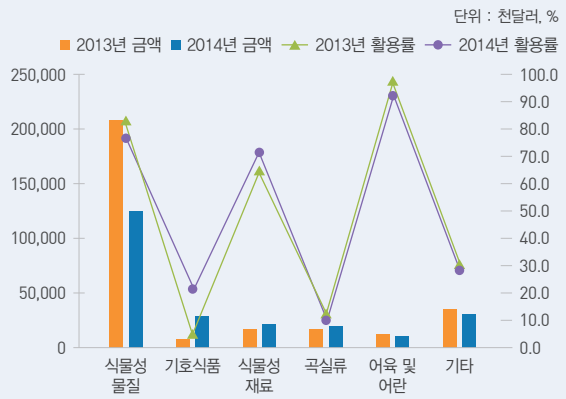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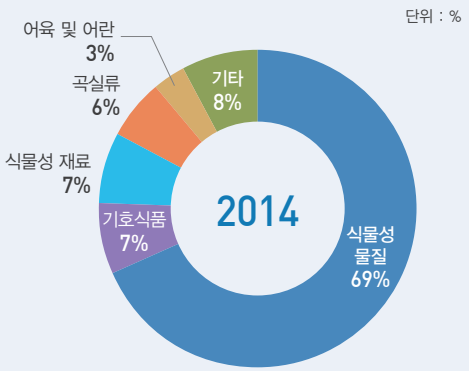

한–페루 FTA : 오징어 가공식품 등 수산가공품 특혜수입 증가

농림수산물에서 5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3%에서 점유율이 0.3%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48]와 같이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수산가공품, 기호식품, 곡실류 등이다. 그 비중은 수산가공품(37.1%) 〉 기호식품(25.7%) 〉 곡실류(14.5%) 〉 연체동물(9.7%) 〉 어육 및 어란(5.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페루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89.9%로 전년대비 5.2%p. 감소였다.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연체동물(오징어)이다.

그림 48 對페루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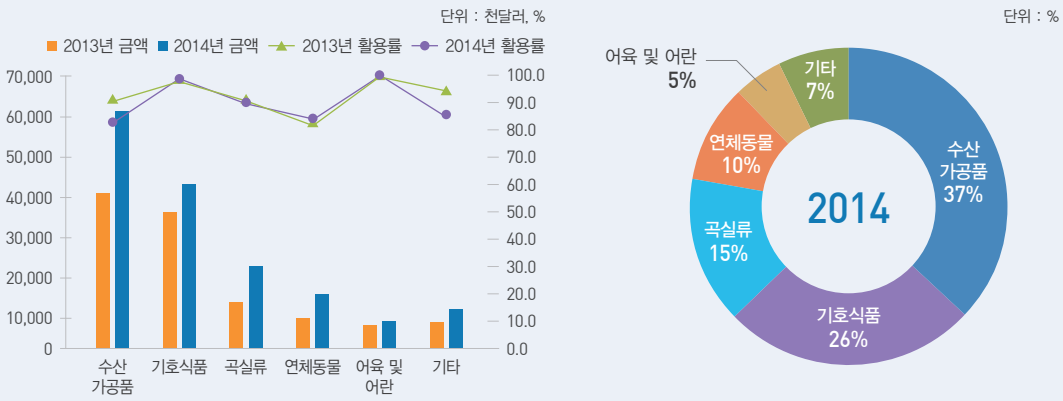

한-EFTA FTA : 노르웨이산 연어 등 지속적 특혜수입 증가세

농림수산물에서 금액 기준 6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1.5% 점유에 불과하다. 이는 2013년 1.7%에서 점유율이 0.2%p.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49]와 같이 對EFTA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어류, 갑각류, 어육 및 어란 등이다. 그 비중은 어류(49.8%) 〉 갑각류(13.8%) 〉 어육 및 어란(10.7%) 〉 기호식품(10.6%) 〉 식물성물질(4.6%) 순으로 어류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4년 對EFTA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69.1%로 전년대비 8.3%p. 감소하였다.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갑각류, 어육 및 어란, 식물성 물질 등이다.

그림 49 對EFTA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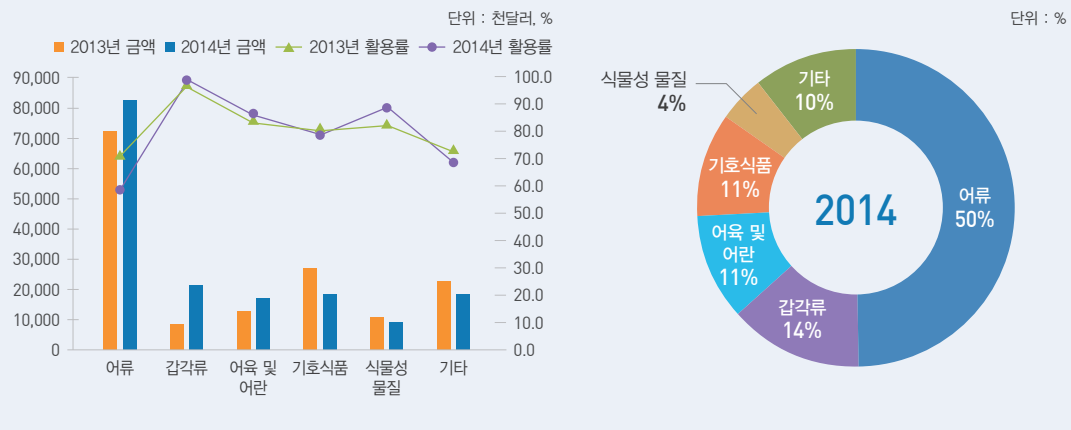

한-터키 FTA :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58.3%. 전년대비 31.1%p. 증가. 특히 채소쥬스(기호식품) 수입 급증

농림수산물에서 7위 FTA 활용수입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협정은 2014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입액의 0.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3년 0.2%에서 점유율이 0.1%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50]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입 품목은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수산가공품 등이다. 그 비중은 기호식품(23.8%) 〉 농산가공품(22.2%) 〉 수산가공품(21.3%) 〉 산식물(18.1%) 〉 곡실류(6.6%)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對터키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평균 58.3%로 전년대비 31.1%p.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수산가공품, 산식물, 곡실류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0 對터키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입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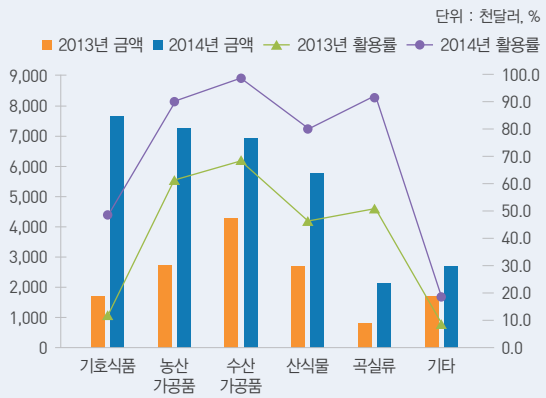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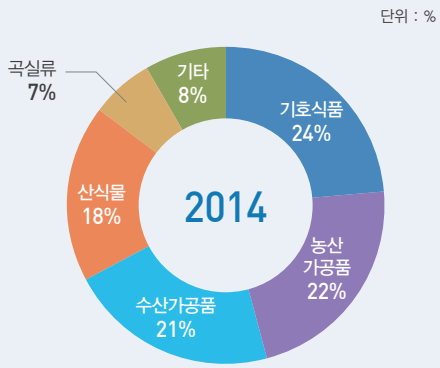

중국의 시각에서 본 한-중 FTA와 우리기업 관련 시사점

윤인채 관세협력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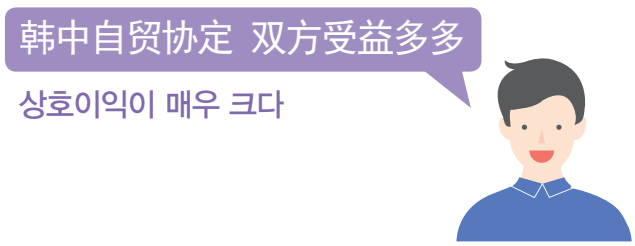

2015년 3월 9일자 지에팡쥔바오(解放軍報 : 중국 군부에 영향력 있는 신문)는 지난 2월 25일 최종타결된 한-중 FTA협상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경제지도 아닌 군부 신문까지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하여 한-중 FTA를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큰 소식이라는 반증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중국은 한-중 FTA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예의 그 많은 연구부서에서 효과분석에 대한 무수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런 연구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많은 중국기업들이 동 FTA를 이용한 우리시장 또는 물류업 등에 활발히 진출할 것이므로 우리도 기업별 맞춤형 FTA안내서 또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지에팡쥔바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중국의 시각에서 보는 한-중 FTA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그리고 한-중 관세당국간에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01 한-중 FTA 협정의 의의 (중국의 시각)

동 협정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규제 등 17개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협정이다.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경제 무역에 대한 내용과 규정으로 양국의 무역자유화 비율은 세목으로 90%초과, 무역액 85%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국가 중 무역액 최대, 혜택범위가 전방위적인 FTA협정이다.

따라서 한-중 자유무역구의 구축(FTA)[1]은 양국은 물론 아태지역 일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에의 영향

한국으로 보자면,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의 위축에 따라 수출부진과 국내소비도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문제가 조금 개선된 기미도 있었으나 한국의 경제규모가 한계가 있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근본 방책은 기타 경제주체와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2010년 한국정부와 EU가 FTA를 체결했고,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중국은 세계 제2대 경제주체이고 한국의 이웃나라로서 2007년 이래 한국의 최대무역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초월하여 중국의 제1무역 역조국(수입국)이 되었다.

한국의 정책가들은 중국의 굴기(崛起,융성)를 한국의 발전기회로 삼았다. 한중양국은 FTA 합동연구를 근거로 FTA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30% 증가하며, 방직업, 자동차제조업, 석유화학공업 등이 중국에서 수익이 날 것이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3%까지 상승할 것을 전망하였다. 이는 한-미 FTA의 0.56%, 한-EU FTA의 1.02%로 볼 때 한국에 돌아오는 수혜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은 FTA를 자유무역구 구축(自由贸易区的建成)이라 표현함.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개념을 초월한 지역통합 개념으로 보는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음.

중국에의 영향

한-중 FTA는 중국에도 매우 의의가 크다. 현재 중국이 처한 수출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경제성장도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불균형, 환경문제 돌출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이 한-중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이용하기에 유리하며, 한국의 시장, 자금, 기술, 발전경험 등을 빌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동시에 경제구조개선과 산업의 고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성장 엔진과 아태지역일체화의 '향도'[2] 역할이 점점 두드러졌다. 2015년, 중국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One road)[3] 전략구상은 실체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 전략의 특징은 이웃나라의 발전이 중국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으로써 "호혜(互惠)"와 "상호이익(Win-Win, 双赢)"을 통해 세계각국이 함께 세계경제질서 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이는 소수의 경제발달국가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및 발전중인 개도국 국가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또한 신흥시장국가에 같이 속하면서 이웃나라인 한-중 양국의 FTA체제 구축은 "윈-윈" 원칙의 실천적 결정체이며,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제3국에의 영향

한-중 FTA는 아태지역일체화 촉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태지역과 한-중-일 3국의 경제생산량은 전세계의 21.9%를 점하며, 아시아전체의 70%이지만 상호 무역의존도는 EU나 북미 NAFTA에 훨씬 못미친다. 이런 현상은 지역시장 통합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은 한-중-일 FTA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 바, 한-중 FTA의 타결은 3국간 FTA체결에 경험과 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

2) 중국식 표현은 "领头雁"(선두에선 기러기)

3) 과거 당나라때 융성했던 무역왕래의 중심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一带는 해상을 통한 동남아 등 일대와 연계, 一路는 과거 시안(西安)에서 로마까지 연결되었던 대상통로외에 몽골 러시아를 포함한 접경육로를 포함하는 육로를 통한 연계를 말함.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이와 연계된 국가는 모두 64개국임.(한국 제외)

02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중 FTA는 FTA의 체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FTA의 일반적 경제효과에 따라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

관세와 무역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등 경제발전 전략과 맞물려서 활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이다.

중국은 지난 3월 개최된 2015년 양회에서 지난 해 정책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중국 경제는 '뉴노멀(신경제질서 '新常態')로 진입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대일로', '인터넷플러스' 등 핵심 발전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하 KMI 중국리포트(15-4호, '15. 4. 7)에서 분석한 올 해 양회에서 드러난 중국의 일련의 정책들이 한국 업계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어떤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우선,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제2 개방'을 의미하며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국가와 함께 상의하고(共商), 함께 건설하고(共建), 함께 나누는(共享) 3공(三共)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구상은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5] 가입 및 중국과의 FTA체결과 더불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한국의 GDP는 2.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만수 2008. 4).

5) AIIB는 정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지역 다자간 개발 기구로서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본부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다.

특히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 및 연선국가의 내수시장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 활력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진입장벽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동성은 '일대일로' 해륙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항만조건도 좋기 때문이다. 또한 칭다오는 국내 최초로 해륙철도 복합운송(海铁联运)이 시작되는 항구이다.

한국, 일본으로 가는 33개 직항 항로, 동남아와 남아시아로 가는 24개 직항 항로가 있다. 또한, 르자오항은 중국의 1급 대외개방 항구인데 보세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만 톤 급 선박이 입항 가능하고 석탄 하역 능력이 높은 편이다. 둘째, 산동성은 한-중 양국경제무역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국의 대중 투자총액의 40%를 차지했으며, 수출입 활동은 양국 무역 총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손제이예산동성 정협 부주석에 따르면 한-중 철도 페리를 통한 잠재적 운송량이 2030년에 2,762만 톤에 도달하고 단방향 여객 수송량은 약 1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무원이 승인한 「산동반도 블루 경제구 발전 계획」에서의 중심지역인 옌타이 지역의 옌타이철도페리 (烟大铁路渡轮) 시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중 철도 페리 건설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 동서를 잇는 철도 물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어 유라시아 물류대통로 건설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플러스와 전자상거래의 발전

또한 올해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터넷 경제 규모에서 전자상거래, 게임, 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2천 160억 위안(약 38조 1천억원)에 달했으며, 이용자는 1천 800만 명에 육박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18년 1조 위안(약 176조 4천 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량제품을 발굴함과 동시에 중국 등의 해외로 진출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매활로를 개척해 주어야 하며, 한국의 대중(对中) 전자상거래 플랫품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6]

03 한-중 관세당국간 협력활동

지난 3.23일(월)~25일(수)간 중국 천진에서는 원산지데이터 전자교환시스템(EODES)[7]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장급 실무회의가 있었다. 동 회의에서는 양측은 한-중 FTA체결 및 시행을 대비하여 양국 세관간 원산지확인 간소화를 위한 원산지데이터 전자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FTA물품의 신속통관 등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만약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의 노력이 원만히 성공하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❶ 무역원활화 촉진(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효율화 및 단순화)
❷ 서류 원산지증명서 세관제출 원칙적 생략

최근 중국 칭다오(青島) 해관은 2014년에 중-대만 경제협력협의(ECFA) 실시 4년째를 맞아 칭다오 관내 1년간 ECFA관련 수입화물은 9.64억위안(한화 약

6) 2014년 제10차 KMI 상해 CEO 물류포럼 자료.
7)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1,735억원)이고 감면세액은 8,325.5만위안(한화 약 149억 8천만원)에 달해 전년대비 각 11%, 4%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칭다오해관은 적극적으로 통관환경을 개선 ECFA 상품 전담창구설치, ECFA 화물 우선 신고접수, 통관수속 등 지원을 하였고, 통관 애로센터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통관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동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14년 4월 "중-대만 세관간 전자 데이터교환시스템"이 정식 운영되면서, 중국과 대만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됨으로써 전산망에서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이 확보되어 허위증명서의 근절과 ECFA화물의 통관 속도가 빨라져서 기업 통관비용과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세관은 현재 양국간 구축을 준비중인 '원산지증명서데이터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대중국 수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디 동 협상이 원만히 성공하여 우리기업들이 향후 중국과의 FTA발효후에 중국 해관의 원산지증명서 심사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스파게티 볼' 효과의 애로를 겪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한-중 FTA와 주요산업별 대응방안

오대원 교수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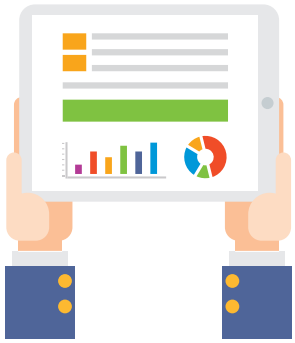

01 머리말

한-중 양국은 2004년 9월 통상장관회담의 FTA 공동연구 추진 합의 이후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2014년 11월 10일 협상타결이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현재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입국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기존 FTA협정에 비해 의의와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며, 한-EU 및 한-미 FTA 등과 함께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 한-중 FTA는 우리의 수출시장 확보와 수입을 통한 원자재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나아가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2월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방향에서는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 선정하여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의 주요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한-중 FTA의 주요산업별 영향

가. 전기 전자산업

〈표 1〉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전기·전자제품들의 가중평균 관세율[1]을 보여준다. 산업용전자제품(MTI 81)과 전자부품(MTI 83)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높기는 하나 품질과 기술면에서 경쟁력이 강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부품(MTI 83) 분야는 반도체(MTI 831) 등과 같은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부품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최대 무역흑자업종으로서 교역규모가 커서 한-중 FTA의 영향은 비교적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와 같은 경우에는 한-중 FTA는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전자·전기제품(MTI 8)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산업용전자제품(MTI 81)	2.5	2.8	5.5	1.4	2.3	1.3
통신기기(MTI 811, 812)	0.5	0.4	0.6	0.1	0.1	0.1

1) 가중평균관세율이란 해당국의 품목별 실질관세율과 해당품목별 수입규모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계산한 환율을 의미한다.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정용전자제품(MTI 82)	4.1	4.4	4.5	5.3	22.9	5.7
전자부품(MTI 83)	0.4	0.2	0.2	0	0	0
중전기기(MTI 84)	6.0	6.6	6.7	4.1	4.2	3.9
전선(MTI 85)	1.6	1.8	1.8	1.6	2.1	1.5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 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가정용전자제품(MTI 82)의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한–중 FTA가 시행되면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추격으로 가정용전자제품의 TSI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대중국 경쟁력이 매우 낮아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중 FTA가 시행되면 중국의 외자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원산지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의 백색가전협회는 한–중 FTA를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양평섭, 2013, p.70).

중전기기(MTI 84)의 경우는 한국의 관세가 중국보다 높고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가 시행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중 FTA로 4%대인 비교적 높은 중국의 관세율이 철폐되면 수출도 어느 정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선(MTI 85)의 경우에는 양국의 관세율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한–중 FTA가 시행되면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양국 모두 현재의 관세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최근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과 TSI지수가 가장 낮아 대중국 경쟁력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으로 전망된다.

나.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

표 2 철강금속산업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철강제품(MTI 61)	0.9	0.7	0.8	5.6	5.4	5.6
비철금속제품(MTI 62)	5.0	4.9	5.1	3.4	4.0	3.0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 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표 2〉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철강금속제품들의 가중평균 관세율을 볼 수있다. 철강제품(MTI 61)의 경우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중국의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철강제품 가운데 고부가가치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제품과의 단가 격차가 커서 관세 인하효과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국 수입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군우, 2012, p.97).

특히, 향후 중국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고 공급능력이 확대될 경우 수출증대폭도 제한적일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TA로 인한 철강제품 수요산업의 수출증대로 인한 간접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현재 중국의 철강산업은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하여 어느 정도 자국시장 보호가 필요하므로, 한-중 FTA에서 민감산업으로 지정하여 단계별 관세철폐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중-일 FTA보다는 한-중 FTA를 선호하고 있어 한-중 FTA가 시행되면 일본산 수입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어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비철금속제품(MTI 62)의 경우에는 비교적 교역규모가 작지만 계속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중국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높아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공급부족으로 내수충족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생산과 공급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수입증가폭은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양평섭, 2013, pp.69~70).

다. 섬유산업

표 3 섬유류의 한중 관세율 비교

년 도	관세율(가중평균, %)	
	한 국	중 국
2010	9.8	8.3
2011	9.8	8.4
2012	9.9	8.8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표 3〉에서 최근 한국과 중국의 섬유류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양국의 관세율이 모두 높은 편이나 중국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약간 높은 편이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섬유류의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류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중국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TSI지수가 높아 대중국 경쟁력이 높은 섬유원료(MTI 41)나 직물(MTI 43)의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원료는 주로 폴리에스텔섬유(MTI 4111), 아크릴섬유(MTI 4112), 기타 합성섬유(MTI 4119) 등과 같은 인조섬유(MTI 41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국 TSI지수가 매우 낮아 수입특화(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섬유사(MTI 42)와 섬유제품(MTI 44)의 경우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의 관련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브랜드, 문화, 소비자 선호, 유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도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라. 기계산업

〈표 4〉에서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의 기계류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기계 제품들의 관세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양국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국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계류 제품의 수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대중국 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기계류(MTI 7)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기계제품(MTI 71, 72, 73)	6.4	6.3	6.2	5.8	6.5	6.0
자동차부품(MTI 742)	6.3	6.8	7.0	14.0	14.9	13.4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그러나 그동안의 무역규모와 기계류에 대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고려하면 수출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류제품은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어 중국의 관련업계에서는 한–중 FTA를 우려하고 있다(양평섭, 2013, p.70).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한국인의 국산차 및 국산부품 선호 경향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 농림수산업

표 5 농축수산품(MTI 0)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산물(MTI 01)	26.4	23.9	18.9	16.8	20.2	15.1
축산물(MTI 02)	13.0	13.2	16.8	8.2	8.5	8.5
임산물(MTI 03)	6.0	6.3	5.0	2.6	2.4	3.8
수산물(MTI 04)	13.0	13.2	16.8	8.2	8.5	8.5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표 5〉는 최근 농림수산물(MTI 0)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가중평균 관세율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높은 상태이지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역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이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동식물검역조치로 신선 과일, 신선 채소 및 신선 육류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고 동식물에 대한 검역조치가 해제된다면,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무역역조는 이 보다 훨씬 심각하게 될 것이며, 국내의 관련 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3 제조업 및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가. 제조업 대응방안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산업용전자제품(MTI 81), 전자부품(MTI 83), 반도체(MTI 83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섬유원료(MTI 41), 기초산업기계(MTI 71), 정밀기계(MTI 73), 자동차부품(MTI 742)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제조업제품들은 대중국 경쟁력이 높아 수출특화 상태에 있으며, 관세율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이 없어, 한–중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국 비교우위를 유지하며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으로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하였거나 상실해 가고 있는 가정용전자제품(MTI 82), 전선(MTI 85), 섬유사(MTI 42), 섬유제품(MTI 44), 철강제품(MTI 61) 등과 같은 산업들은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입이 증가될 경우 국산품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특화품목이나 수평분업관계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물론이고 대중국 수출특화품목으로 분류된 수혜산업이라 할지라도 FTA가 체결된 이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의 중국산 경쟁상품이 밀려들어올 경우 피해는 예상 밖으로 심각할 수도 있다.

한편, 한-중 FTA로 인한 우리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가 지닌 비교우위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의 기업들과 산업협력 구도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중 FTA가 시행되면 그동안 관세 덕분에 버티어 온 우리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못한 섬유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나.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과 수입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략적인 품목들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의 경우 고품질·안전성 등 강점을 활용하고, 고비용 생산구조·고령화 등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 농업의 전체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

국산농식품의 '안전성' 이미지에 기반하여, 친환경·안전 농식품의 對中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중국 소비시장 조사 및 對中 수출 전략 상품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 유관기관 및 농민들이 협력하여 지역별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aT센터, KOTRA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 중국 주요 성(省)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 내 유통망을 확충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의 중국 내 점포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고급 백화점 등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우리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고소득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정부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티엔마오·워마이왕 등)과 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여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선 현대화, 자원관리 등을 통해 어선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대량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시장 기반확충을 위해 수산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산업 통합마케팅 및 체계적인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 밖에도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 선호 취향을 감안하여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농수산물의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출지원센터, 앵커숍 운영 등 현지 지원조직을 확충하고, 수출용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재외공관 활용 알선, 지역 특산물 기획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K-seafood project 추진으로 우리 수산물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전략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01 한-중 FTA 효과의 독특성

한-중 FTA의 업종별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분야를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관세철폐 효과,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마지막으로 밸류체인(value-chain) 활성화 효과이다. 맨 앞의 관세철폐 효과는 모든 FTA에 공통으로 중요한 반면, 두 번째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한-중 FTA에서 더욱 중요해 지며, 마지막 밸류체인 활성화 효과는 한-중 FTA에서만 두드러지게 중요한 요인이다.

첫번째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이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후 20년 이내에 대다수 무역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발효후 20년이 되면 한국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으로 91%가 철폐될 예정이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가 철폐된다. 또 10년 이내에 양국 모두 65% 이상의 관세 철폐 예정이다. 발효 10년째가 되면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 수입액 기준으로 77%가 철폐될 예정이며,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 수입액 기준으로 66%가 철폐된다.

또 하나는 비관세장벽 제거/완화 효과이다. 사실 비관세장벽은 어느 국가나 있고, 모든 FTA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의제이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각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경제체제 전환 · 구축의 진행, 거대 규모와 지역별 다양성으로 인해 대중국 무역 및 투자시 비관세장벽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한-중 FTA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밸류체인(value-chain) 활성화 효과이다.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14년 현재 75% 수준이며, 가공무역은 51.8%에 이른다. 한-중간에 밸류체인 즉 분업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밸류체인은 수교('92년) 이후 양국 공동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이러한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한-중 FTA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인정 약속 역시 밸류체인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한-중 FTA에서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할 경우 한국산 대우를 해주기로 한 품목을 310개(HS 6단위) 지정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해 늘릴수 있도록 약속했다.

02 한-중 FTA의 업종별 영향

대중 수출품목을 11개 업종, 세부적으로는 17개 업종으로 나누어 상기 세가지 영향을 검토해 보면 대략 〈표1〉과 같이 요약된다.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분야는 세부업종(전자와 전기)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분야의 경우 원래부터 무관세 품목(정보산업 무역협정(ITA)에 따른 무관세)이 많아 관세철폐 효과는 크지 않으나 비관세장벽 완화 성과(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상호인정 추진)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장 활성화 된 업종 특성상 향후 원산지규정, 양국의 FTA 네트워 활용, 역외가공지역(OPZ) 활용등을 통한 밸류체인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당초 우리측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전기분야에서는 양측의 관세를 장기 철폐 하기로 한 점 외에 전자분야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중 FTA에서 개방이 덜 이루어진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업종이지만 완성차와 자동차부품간에 의미 있는 차이도 발견된다. 일단 승용차는 양국 모두 관세철폐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용차(버스, 화물차)는 15년 이상 장기철폐를 약속했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양국 모두 대체로 15년 전후의 장기 관세철폐를 약속했으나 단기 철폐 품목도 적지 않고 자동차부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 약속이 이루어져 무역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한-중 양국을 오가는 국제분업이 상당 부분(특히 와이어링 하니스 등) 이루어져 있고, 역외가공지역 생산도 가능해 밸류체인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관련업계의 우려가 많이 표출되었던 섬유 · 의류분야는 중국측의 조기 관세개방이 약속되어 우리의 고부가가치 섬유 및 의류 수출에 유리할 전망이고, 비관세장벽 완화도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OEM 등 밸류체인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미 아시아지역내 산업 클러스터 형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역외가공지역내 생산에 유리해 밸류체인 활성화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업종은 제품 특성상 비관세장벽이나 밸류체인 활성화와 큰 관계가 없다. 이런 가운데 관세분야에서는 다소 상이한 관세 철폐가 약속되었다. 석유제품의 경우 중국은 대체로 15년의 장기 철폐를 약속했으나 기존 관세율 9%로 1.5%를 차지하며 대중수출의 1.5%를 차지하는 항공유의 즉시철폐가 약속되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파라자일렌, 텔레프탈산(TPA) 등 한국의 주력수출품이 철폐에서 제외되어 대체로 기대효과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흡수성수지등 수출액이 크지 않으나 상당수 고부가가치 제품의 관세 조기철폐가 예정돼 있어 한국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등을 통해 대중수출을 도모할 여지는 커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에 무관세였던 철강업종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중국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중수출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상당수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철강 중간재의 중국 수입관세 철폐가 약속돼 있어 수출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알루미늄, 아연, 납등을 포함하는 비철금분야는 원자재 조달이 중요한 점을 감안, 한국보다 중국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관세개방을 수용했다. 이점에서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에 다소 양호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기계로부터 산업기계, 공작기계, 기계요소(베어링 등)등을 다양한 세부 업종을 포괄하는 기계분야에서는 비관세장벽이나 밸류체인보다는 관세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건설기계(특히 굴삭기), 공작기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세부업종에서 실질적인 관세 개방이 이루어졌다.

기계분야 못지 않게 다양하지만 소비재와 중간재(생산재)가 섞여 있고, 한–중간에 분업구조가 형성된 화학분야에서는 관세철폐 효과,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밸류체인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의약, 광택제, 계면활성제, 도료 · 안료 등 분야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졌다. 비관세장벽 역시 화장품, 의약품을 중심으로 여건 개선이 약속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 고무 · 가죽 업종 역시 관세와 비관세장벽 모두 대중무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세 분야에서는 가죽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고 비관세장벽 여건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밸류체인 등이 모두 중요한 식품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와 동시에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세 철폐가 약속되었고 검역 등 수출애로 사항도 개선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 활용 등을 통한 한–중간 식품분야 밸류체인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역시 소비재이다. 중국은 승용차, 일부 가전제품 등 일부 내구소비재 분야에서 관세철폐를 하지 않기로 한 이외에 대부분 소비재 관세를 10년 전후에 걸쳐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중국내 인증 취득 및 인증상호 인정, 제품 표시 및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 조치 관련 약속사항이 모두 우리 소비재의 중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수 소비재가 한–중간 분업구조하에서 생산되고 있고, 역외가공 인정 조치도 향유할 수 있어 소비재 분야의 밸류체인 활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표 1 한-중 FTA의 업종별 수출효과

업 종		수출비중 ('14)	수입비중 ('14)	무역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전기전자	전 자	44.5	31.3	365.1	• (T) 가공무역, ITA등으로 크진 않으나 효과 있음 •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상호인정 등 수혜 • (V) 대표적 GVC 업종으로 활성화 전망
	전 기	2.4	5.9	-3.3	• (T) 우리측 민감분야로 보호수준 높음(장기철폐) •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상호인정 등 수혜 • (V) 일부 수혜 전망
자동차	승용차	1.2	0.0	17.4	• (T) 효과 없음. 상용차 장기철폐로 일부 수혜 • (N) 직접 수혜 별무이나 자동차부품 장벽 완화로 간접 수혜 가능 • (V) 자동차부품 통한 간접 수혜
	부 품	4.4	1.4	52.0	• (T) 일부 수혜. 대부분 장기 철폐 • (N)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등 수혜 예상 • (V) 원산지, 통관 등 통한 수혜 예상
섬유의류	섬 유	1.4	2.5	-1.5	• (T) 한국 보호, 중국 개방 → 관세철폐 효과 유리 •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 (V) VC 활성화 업종으로 더욱 활성화 기대
	의 류	0.3	3.9	-31.2	• (T) 민감분야. 중국 개방 확대로 우리기업 수혜 •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 (V) VC 활성화 업종으로 더욱 활성화 기대
석유 · 석유화학	석유 제품	4.2	0.3	58.6	• (T) 중국 대체로 장기철폐(15년)이나 항공유(旣관세율 9%) 즉시철폐로 수혜 가능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석유 화학	15.4	2.4	201.5	• (T) P-Xylene, TPA등 주력품목 중국 양허 제외로 관세철폐 효과 제한적이나 고부가가치 품목 개방수준 높아 향후 수혜 기대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철 강		3.3	13.5	-73.9	• (T) 한국은 무관세, 중국 관세철폐로 한국의 수출에 유리 • (N) 별무 관계 • (V) 한-중간 분업 재편에 유리
비철금속		1.6	1.8	6.3	• (T) 한국측 민감분야. 중국측 고수준 개방 수용 → 다소 수혜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기 계		9.6	11.4	36.3	• (T) 상당 부분 중국관세 철폐, 우리측은 민감분야(기계요소) 보호 – (고수준 개방) 보일러, 펌프, 냉장고 부품, 버너, 히터, 측정기기 등 – (저수준 개방)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업 종		수출비중 ('14)	수입비중 ('14)	무역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화 학		3.4	5.7	-2.6	• (T) 대체로 중국 고수준 관세 철폐 → 수혜 – (고수준 개방) 의약, 광택제, 계면활성제, 도료 · 안료 등 – (저수준 개방) 비료, 화장품, 사진 · 영화재료 등 • (N) 상당수 소비재 포함 → NTB 완화 기대 • (V) 양국간 분업관계 재배치 · 활성화 전망
플라스틱 · 고무 · 가죽		2.4	2.9	8.6	• (T) 세부업종별로 다르나 보통수준, 가죽분야 수혜 – 플라스틱 · 고무 보통수준, 가죽 고수준 개방 • (N) 업종 성격상 유리 전망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전망
농식품		0.6	2.5	-14.0	• (T) 한국 고수준 보호, 중국 보통수준 개방 → 다소 수혜 • (N) 검역 여건등 개선, 기술무역장벽 개선으로 유리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촉진
소비재	내 구	0.7	2.0	-8.5	• (T) 중국측 고수준 개방(상당수 10년 철폐) • (N) 업종 성격상 큰 폭 수혜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촉진
	반내구	0.8	8.6	-66.0	
	비내구	1.3	1.6	3.8	

03 한–중 FTA 활용전략

이상 살펴본 한–중 FTA의 주요 업종별 영향 전망은 업종별 한–중 FTA 활용전략으로 이어진다. 우선 3가지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서는 각각에서 상응하는 활용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 관세철폐 효과를 겨냥해 기존에 관세 부담때문에 수출하지 않았던 제품의 수출을 강구(수출산업화)해 볼 수도 있고,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품목으로 가공공정을 바꾸어 수출(공정변경)해 볼 수도 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국제 인증 인정, 상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제품 표시 및 라벨링 분야의 약속사항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다. 세부 업종이나 품목별로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활용 분야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분야는 이번에 명시된 국제인증 상호수용 활용을 적극 모색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제품 표시 및 라벨링 관련 장벽 완화는 소비재 분야에서 우선 검토하는 편이 유리하다.

마지막 밸류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체결망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교차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도 있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 생산을 모색하거나, 일부지역에 검토 · 추진중인 한–중 FTA 시범협력지역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가지 가운데 일부만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서는 좀 더 몰두하여 기대효과 활용에 집중하는게 유리하다. 중국의 추가 관세개방이 이루어졌으나 비관세장벽, 밸류체인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계분야에서는 관세철폐 효과 활용방안에 집중하는 동시에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가 급선무다.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라 한–중간 밸류체인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기계분야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철강분야도 기술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비철금속 분야에서도 한–중 FTA를 통한 관세철폐 효과 활용에 집중하는 방안이 지름길이다.

이상 3개 분야 활용전략의 실제 운용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기 · 전자, 자동차부품, 섬유 · 의류, 화학, 플라스틱 · 고무 · 가죽, 농식품, 소비재 등 업종에서는 3가지 활용전략이 모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비철금속, 기계 등 업종은 대체로 관세철폐 효과 활용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공작기계 등 중국의 관세 철폐폭이 크지 않고 비관세장벽 완화도 큰 의미가 없는 분야는 좀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제품경쟁력 제고 등 고전적인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국투자 확대를 통한 현지 시장개척, 글로벌 및 중국기업 유치를 통한 대중 · 대세계 우회진출, 한–중 FTA내 경제협력 조항의 적극 활용 등 다양한 대응 및 활용전략 강구까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2 한-중 FTA의 업종별 활용전략

업 종		활용전략
전기전자	전 자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 조치 활용 • FTA네트워 활용, OPZ 활용
	전 기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 조치 활용 • FTA네트워 활용, OPZ 활용
자동차	승용차	• 관세철폐 효과 별무 • 자동차부품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 간접 수혜
	부 품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 조치 활용 • FTA네트워 활용, OPZ 활용
섬유의류	섬 유	• 공정변경, 공정변경 • 경제협력 활용 • 공간재배치, OPZ 활용
	의 류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 조치 활용 • FTA네트워 활용, OPZ 활용
석유 · 석유화학	석유제품	• 관세철폐 효과 활용
	석유화학	• 수출산업화(품목발굴 · 개발) • 투자유치
철 강		• 공정변경
기 계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화 학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조치 활용 • 공간재배치, OPZ 활용
플라스틱 · 고무 · 가죽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조치 활용 • 공간재배치, OPZ 활용
농식품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조치 활용 • 공간재배치, OPZ 활용
소비재	내 구	•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 NTB 완화조치 활용 • 공간재배치, OPZ 활용
	반내구	
	비내구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Ⅱ)

오수교 전문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시작하면서

기업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관련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협정문의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기준 HS 품목분류표 제6부(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규칙과 같은 일부 규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대표적 규칙이다. 그러나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 지난호에 이어 규칙2 부터 규칙7까지 소개한다.

규칙 2 정제(purification)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뤄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 불순물을 80퍼센트 이상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용품,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광학용
(5) 건강과 안정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정제란 원소와 화합물(제28류와 제29류) 또는 특정한 화학조제품(제30류 내지 제38류)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1]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품목분류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28류나 제29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이 분류되지만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순물이 함유되었더라도 품목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것에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❶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❷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❸ 제조공정(정제포함) 중에 사용된 시약
❹ 부산물

1) 어떤 물질 중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나타낸다.

다만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경우에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고 혼합물이나 조제품으로 보아 제30류 내지 제38류에 분류하거나 용도에 따라 특정 류(예 : 사료용은 제23류)에 분류한다.

물론 아래 [표 1]과 같이 순도에 따라 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표 1] 순도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번호	물품명	순도 조건
1	붕산	붕산의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85% 이하: 제2528호 붕산의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85% 초과: 제2810호
2	글리세롤	글리세롤의 순도 95% 미만: 제1520호 글리세롤의 순도 95% 이상: 제2905호
3	페놀	페놀의 순도 90% 미만: 제2707호 페놀의 순도 90% 이상: 제2907호
4	항생물질	항생물질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70% 이하: 제3824호 항생물질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70% 초과: 제2941호

가. 불순물이 80% 이상 제거된 경우

일반적으로 황산이나트륨(제2830호)은 순도가 90% 내지 99%인데 바꿔 말하면 불순물이 10% 내지 1%가 함유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순도가 90%인 황산이나트륨을 순도가 96%인 황산이나트륨으로 정제했다면 이 경우에는 불순물이 60% 제거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념할 사항은 비록 불순물이 80% 이상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앞의 [표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번변경이 발생할 정도로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이거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8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안정된다.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된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물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용품,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예를 들면, 삼산화비소(AS_2O_3, 제2811호)에는 황화비소·황·산화안티몬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병이나 천식치료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황산이나트륨(Na_2SO_4, 제2830호)은 순도가 90% 내지 99%인데 설사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각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연 파프리카 추출색소(제3203호)가 식용 물질(food grade substance)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인 이소프로필알코올(50ppm 이하)과 헥산(25ppm 이하)이 일정 함유량 이하이어야 하므로 이 규정에 맞도록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규칙을 적용할 때에 국제적으로나 양 당사국에서 사용하는 관련 법규나 규정집에서 불순물의 한계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맞도록 불순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불순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 것이어야 한다. 특히 시약은 병원·제조업·현장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수의학용·과학용·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즉, 물품의 구성·레이블·실험실이나 이화학용이라는 설명서, 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 시험의 표기, 물리적 형태(뒤편보강이나 지지된 모양으로 제시) 등에 의해 규명되어야 한다.
앞의 1–3–1(FTA 무역리포트 2014년,12월 참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물이나 용제에 용해한 것이라도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시약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예를 들면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제3824호)은 어드(earth)·모래·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소·인·칼슘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 함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목적에 사용하려고 불순물로서 미량요소인 구성요소나 성분을 남겨 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참고적으로 식물의 미량원소는 구리·붕소·아연·망간·몰리브덴 등이며, 동물에서는 망간·요오드·코발트 등이다. 토양에 식물의 미량원소가 없으면 식물이 결핍증을 일으키게 된다.

(4) 특수광학용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는 물질로서 특히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예 : 플루오르화리튬·플루오르화칼슘·브롬화칼슘·브롬요오드화칼슘)이 해당된다. 따라서 특수광학용에 적합하도록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5) 건강과 안정을 위한 무독성용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안정에 유해가 되는 중금속인 비소나 납 또는 항생물질 등을 제거하여 무독성용으로 만든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6) 생명공학용

생명공학용에 적합하도록 면역혈청이나 백신의 순도를 높인 경우 또는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캐리어(carrier)란 매개체 또는 운반체라 할 수 있는데 기본물질의 역할을 도와주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용도에 사용되는 캐리어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물질의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면 항생제나 백신의 배양물질에서 항생제나 백신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캐리어이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규칙6의 이성체의 분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8) 핵등급용

이와 같은 경우는 제2844호의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위원소란 원자번호는 동일하나 질량수가 다른 원자핵종의 원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원자번호 92인 우라늄은 질량수가 227부터 240까지의 여러 핵종이 있다.

이들은 동위원소의 방사능정도에 따라 두께가 다르고 보통 납으로 된 내방사성 외부용기에 포장된다. 특정 국제협정에 따라 그 용기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 방사성의 정도를 명시한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핵등급에 적합하도록 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규칙 3 혼합 및 배합(Mixture and Blends)

제30류, 제31류,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이나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이나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2]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와 제29류는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품이 분류되므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한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이나 비타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하였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제32류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잉크와 같은 물품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것으로서 이 용제의 함유량이 50%를 초과할 때에는 제3208호에 분류하는데, 여기에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에서 착색제를 첨가했더라도 같은 호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제3402호)에 보조성분인 표백제·정전방지제·향료·살균제·효소를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로 혼합하거나 배합했더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식물성 기름이나 광물성 오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절삭유(제3403호)에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였더라도 앞의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와 같은 이유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2) 원문은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물리적이나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명확할 것 같다. 이하 규칙도 이와 같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같이 이 규칙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혼합 또는 배합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 결과로 얻어진 상품이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정은 품질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리되므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두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규칙 4 입자크기의 변화(Change in particle size)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제 용해와 그 후에 침전에 의해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나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크기, 정의된 입자크기의 분포나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4는 제30류, 제31류, 제33류의 물품에만 적용된다. 의약용이나 비료용 또는 화장품과 같은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흡수력이나 침투력 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입자크기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앞의 규칙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입자크기의 변화의 결과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이나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제6부의 상품은 입자 크기가 변화되었다하여,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의약품 가루를 알약(정제, tablet)으로 만든 것은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림 1] 입자크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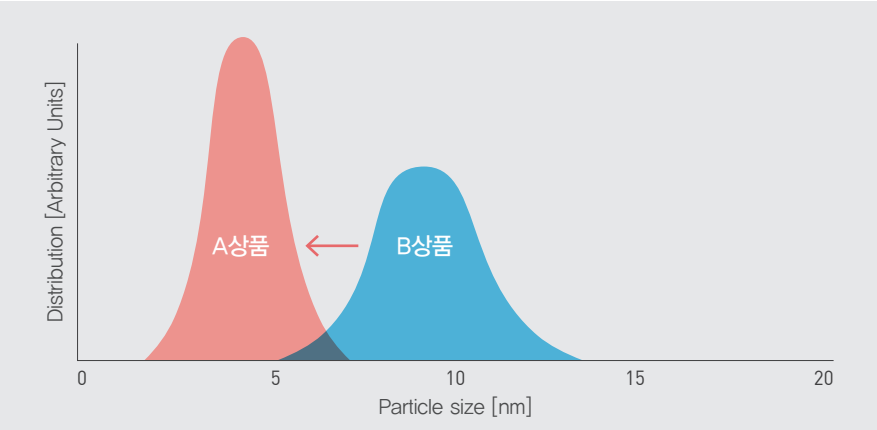

주 : 이 그래프는 입자분석기에서 확인한 입자크기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숫자[나노메타(nm)]가 커질수록 입자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에 따라 분쇄공정을 통하여 B의 입자분포도를 가진 상품을 A의 입자분포도를 가진 상품으로 가공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규칙 5 표준물질(Standards Materials)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용·검정용이나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이 규칙5에서 규정한 표준물질의 적용과 관련하여 HS 품목분류표 제38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주 규정에 따르면,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certificated reference materials)"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3]·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3) 측정(calibrating)은 이 규칙의 '검정'과 같은 의미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은 분석용, 검정용 또는 참조용에 적합하도록 보증된 정확한 순도나 비율을 가진 것은 동일하나, 두 규정의 차이가 있다면 한–미 FTA협정에서는 우선 제28류와 제29류 물품에도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HS 품목분류표에서는 보증된 참조물질에 해당되면, 제28류와 제29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3822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표준물질로 만든 경우에 호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 규칙5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28류와 제29류의 상품에는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앞의 규칙1(화학반응 원산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물이나 용제에 용해한 용액이 이 규칙5에서 정한 표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실무에서 표준물질인지 여부의 확인이나 입증은 시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준물질로서 분석용·검정용이나 참조용에 사용한다는 레이블이나 설명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규칙 6 이성체의 분리(Isomer Separation)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나 분리가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이성체란 분자식은 같으나 물리적이나 화학적 성질이 다른 화합물을 말하며, 이러한 형상은 분자 내에서 원자의 배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성체는 크게 구조이성체와 입체(광학)이성체로 나눈다.

(1) 구조이성체

부탄의 구조이성체인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은 분자식은 C_4H_{10}으로 같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원자의 배열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물론 이들은 모두 같은 호에 분류된다. 다만, 품목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제29류 주 제1호나목에 따라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의 입체이성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은 제27류에 분류되기 때문에 제27류에 분류되는 이성체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각각 제2901호의 상품을 얻었다면 품목분류의 변경이 발생되어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림 2] 구조이성체인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구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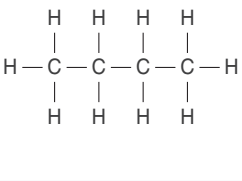

노말부탄(제2901.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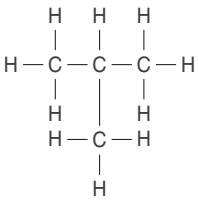

이소부탄(제2901.10호)

또한 크실렌(자일렌)의 구조이성체인 오르토크실렌·메타크실렌·파라크실렌도 분자식은 $C_6H_4(CH_3)_2$로 같으나 원자의 배열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림 3]에서 좌측부터 오르토크실렌·메타크실렌·파라크실렌이라 한다. 이들은 [그림 3]에 표시된 것과 같이 호가 모두 같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혼합물도 제2902호로 분류한다.

[그림 3] 구조이성체인 오르토크실렌·메타크실렌·파라크실렌의 구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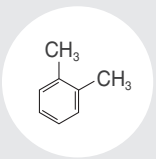

오르토크실렌
(제2902.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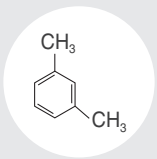

메타크실렌
(제2902.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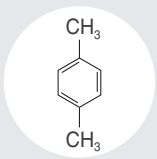

파라크실렌
(제2902.43호)

(2) 입체(광학)이성질체

락트산('젖산' 제2918호)은 좌측에서부터 D형·L형·DL형인 세 개의 입체(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분자식은 $CH_3CHOHCOOH$으로 모두 같다.

[그림 4] 락트산 입체이성질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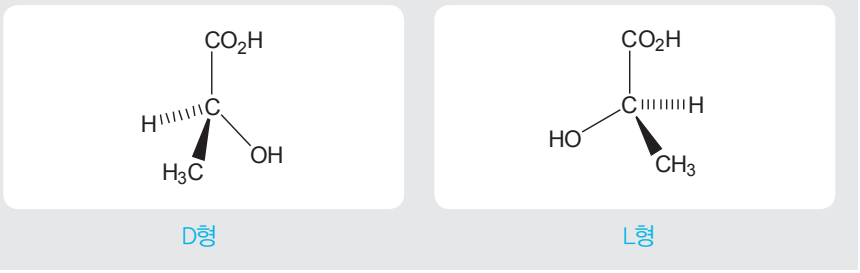

D형 L형

따라서 이들 이성체의 혼합물을 유리나 분리 공정을 통하여 각각 상품을 생산했다면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금지(Separation Prohibition)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규칙7을 적용함에 있어 "화학반응"에 관하여는 규칙1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면 된다. 혼합이란 본래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섞여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체 분리법·용해법·증류법·비중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의 종류나 공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나 제29류는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만 분류되므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 주로 제30류부터 제38류까지에 분류된다. 이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발생되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모두 항생체로 제2941호로 분류한다)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것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혼합물을 페니실린(제2941호)과 스트렙토마이신(제2941호)으로 각각 분리한 것이라면 이 규칙7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천연 혼합물을 분리한 것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화학반응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호의 변경이 발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물의 선이나 그 밖의 기관(예 : 뇌 척수 간 신장 비장 췌장 등)의 추출물(제3001호)에서 각각 아미노산(제2922호), 비타민(제2936호), 호르몬(제2937호)으로 분리하였다면, 호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러나 호르몬의 천연 혼합물(제2937호), 글리코시드류와 그 유도체의 천연혼합물(제2938호)을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고 분리만 하였다면 분리된 호르몬과 글리코시드류도 동일하게 제2937호와 제2938호에 분류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결 론

부속서 6-가 "품목별원산지기준에 제6부 주1"에 따르면 제6부의 규칙1부터 규칙7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화학반응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반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공정이 화학반응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투입재료와 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상품이 투입재료와 본질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에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실제 상품의 사례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다만, FTA 협정의 본질적인 목적과 제6부의 상품에서 특례규칙을 둔 이유를 살펴본다면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출입 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제27류와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의 해당 내용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당연한 내용이지만, 수입하거나 구매한 비원산지재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자사의 공정을 거친 상품이 각 규칙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FTA특혜세율을 향유하는 수출입업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관세청은 2009년부터 발굴한 FTA활용 사례들에서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증대로 연결한 사례 등 유의미한 내용을 그룹화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간하였으며, 동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별로 활용사례도 같이 수록하였다.

01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개 요

- 한계점에 도달한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보다는 절감 폭이 상대적으로 큰 FTA 특혜세율의 수혜효과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창출 등 기업 외형성장 유도 모델

비즈니스 모델

- 상대적으로 절감이 어려운 재료비 등의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경영체제 전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량 증대 ▶ 생산시설 확충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해외시장 선점은 곧바로 주문량 증가로 직결되며 이는 생산라인 증설과 직원고용이라는 선순환 효과 거양
  - 원청기업의 주문량 파이(pie) 확대는 곧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직결되어 원청기업과 동일한 고용효과 기대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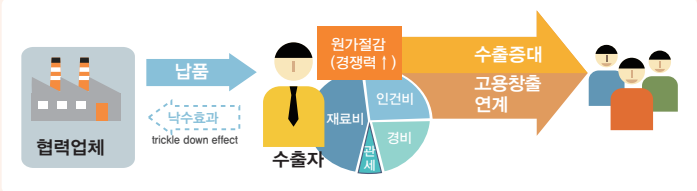

활용 및 확산분야

-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기업
-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활용사례 1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하늘을 향해 힘찬 점핑!

기업 소개

- K사는 17년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지폐계수기를 각고의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여 국내시장 석권 (국내시장 점유율 1위)
- 동사의 지폐계수기는 원화, 외화의 위폐감별기능 외에 외화계수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제품으로 『국산신기술인정서』 획득

FTA 활용전 상황

-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유럽시장(약 30%)이 재정위기 여파로 '11년 초부터 급속도로 냉각되어 주문량이 감소함에 따라 1달간 공장가동을 정지하는 등 총체적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
- 글로벌 경제 불황 속에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의 낭보가 들려왔지만 실효관세율 2.2% 철폐는 가격경쟁력에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CEO 등 관리자는 FTA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
- 수출입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 위주 150여 개 영세협력업체의 CEO 또한 종전 거래관행 선호 및 FTA 무관심 등으로 전형적으로 FTA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

장애 요소

- '11.7.1.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 바이어들은 K전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수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자 CEO 등은 FT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됨
- 그러나 FTA 활용을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수적이나, 처음 접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준비소홀 및 수많은 부품공급 협력업체의 관리 시스템 부재로 FTA 준비는 거의 제로(0) 수준

극복 방법

- (정부지원 적극 활용) 우선, 세관과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FTA 설명회와 컨설팅 등에 실무자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여 FTA 실무능력 배양에 주력
  * 초기에는 FTA 업무에 대한 추가부담과 책임으로 직원들이 기피하였으나, 참석자에게는 별도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교육참여 분위기 확산

- (문제해결팀 구성) 그간 배운 FTA지식을 토대로 사내 FTA해결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새로운 FTA 경영환경 구축
  * 자사 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을 위해 1차 소요부품별 품목분류를 정립하였고, 모호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

- (FTA인프라구축)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비가 필수이나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대안으로 관세청에서 개발한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관리 비용 절감
  * 전산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의뢰한 결과 약 4~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회신

- (협력업체 교육) 150여개 부품공급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징구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뒤 협력도를 측정하여 그에 걸 맞는 수주량 조정
  * 원산지확인서 징구에 대한 협력도가 낮은 부품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거절 등 고강도 대응으로 FTA경영체제로 흡수

활용 효과

- 다각적 노력을 통해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유럽 바이어에게 당당하게 C/O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무관세 통관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매출실적 3배 거양*
  * 이탈리아 ㅇㅇ바이어 대상 '10년 2백만불 매출 → '11년 6백만불 매출

- 한·EU FTA 학습효과로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가능해져 對미 수출액이 87% 증가(283천불→530천불)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 매출상승 추세

- FTA 활용은 결국 주문량 증가로 이어졌고 동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라인 증설과 아울러 30명을 신규 고용하였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조립공정을 일부 위탁하여 장애인 근로 창출(35명)

위탁생산

라인증설

시사점

- 치열한 원가경쟁 하에서는 낮은 수준(2%)의 관세인하 효과도 가격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인 변수인 점을 감안, 관세철폐를 가격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제시할 수 있도록 FTA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
- FTA 활용을 통한 수출(매출)액 증대는 생산시설 확충과 고용증대를 견인하여 기업의 외형적 성장 유도

고용효과 창출형 FTA 활용 모델 활용사례 2

F1(FTA No.1) 그랑프리, 거침없는 무한질주!

기업 및 제품소개

- N사는 끊임없는 자동차엔진 R&D투자로 시동모터와 발전기 분야인 Starter와 Alternator의 No.1 Maker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주요수출국은 멕시코(65%) ▶ USA(12%) ▶ EU(8%) ▶ 중국(8%) ▶ 브라질(5%) 順

- **제품소개**

품 목	세계시장 점유율
고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Heavy duty Starter & alternator)	20%
저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Light duty Starter & alternator)	13%

FTA 활용전 상황

●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에 직면

01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경쟁구도 심화 ▶ '09년 대비 업체수 2.4% 증가
02	국내외 경기침체로 매출액 감소 ▶ '09년 대비 매출액 10.2%감소
03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 ▶ 최근 20년간 유가·원자재 400%, 300%이상 증가
04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경쟁 심화 ▶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 목적 비관세장벽강화

장애 요소

무역부 김과장 설명회란 설명회는 모조리 다녀 이제 FTA에 대하여 조금은 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❶ FTA이해부족 : 각 기관의 설명회 및 교육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

❷ 직원들의 무관심 : "FTA는 무역팀 담당자만의 업무"라는 인식 팽배

❸ 협력업체 무관심 :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정보부족 등 이유로 FTA활용포기

❹ 협정위반의 강도 높은 제재와 업무과부하에 대한 두려움

극복 방법

● (1차 진단) 세관 FTA집행센터 컨설팅을 통한 회사 진단/처방 파악

진단결과 문제점	Solution제시
● FTA의 정확한 인식과 정보 부족 ● 고객사 주관의 주입식 원산지 확인서 관련 교육의 한계 ▶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어려움 ● 발급된 확인서의 신뢰성 문제 및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감 팽배	●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FTA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식의 전환 유도 ● 완성품 제조·공급기업 및 협력업체의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유도 ▶ 신뢰성 있는 FTA관련 서류 발급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대비 ● 한-EU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방안 강구(역내산 누적기준 활용)

● (2차 실천계획) FTA활용을 위한 로드맵 수립

중점 추진 활동	세부 실행 계획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육성	● 신규 인원 충원(전담자 1명+담당자 1명) ●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전담자)
전사적 원산지관리 추진	● FTA추진 TFT 구성확대 ● 원산지관리 사내 경영규정 제정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 개선	● 사내 ERP SYSTEM 개선 ● 협력사관리시스템 개발추진(Partner System개발)
협력사 관리 방안 개선	● 협력사 교육/검증 계획 수립(Top&Down 맞춤형) ● 인증수출자 취득컨설팅 진행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검토	● 주요 품목 5개 선정 ● 협정별 원산지소명서 작성

● (3차 검증대비)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role model 수립

• (모니터링 결과)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낮음

* 본부세관 사전검증('11.8월), 고객사(현대차, 모비스) 검증('11.9월, 11월)

▶ FTA상대국의 고객사 대상 원산지검증시 "1차 협력업체 자격"으로, "당사에 대한 원산지검증", "하위 협력사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검증" 필요

역할 1	국내거래에 대한 고객사에게 "원산지확인서" 교부
역할 2	직접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역할 3	국산원재료에 대해 협력사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

● 협력사와 상생적·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 협력사에게 원산지검증,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등 총체적 지원을 하고 원산지검증을 자체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성과 거양

* 검증방법 : 자율사전+세관합동 현장검증 (68개 업체)

구 분	결과 및 시사점
자율사전검증 ('12년 3월)	S등급 3개, A등급 3개, B등급 5개업체 (원산지관리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나 협력사의 인식변화가 큰 성과)
현장검증(6월)	B등급 이상 11개에서 30개로 비약적 향상

• 협력업체들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

활용 효과

- 수출경쟁력 확보 및 협력사로의 FTA성과 향유
  - 한-EU 및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해외바이어 관세절감 : 338,539불
  - 협력사 매출액 30% 향상 등 협력사로의 FTA 성과 확산

- 국내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협력사 상위 12개 업체 평균 13%의 고용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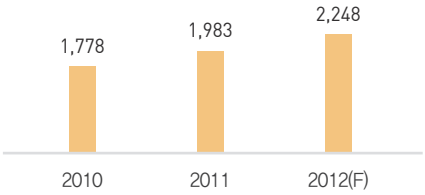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인원	1,778	1,983	2,248
증가	-	205	265
비율	-	11.53%	13.36%

* 상위 12개사 합산

약 13%의 신규고용창출 향상!

  - (新성장동력 확보) 신규사업분야(Alternator) 확장, 제조라인 증설

시사점

-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공동노력은 수출량 증대로 이어져 발주량 증가 등 협력관계의 공고화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등 기업규모 확장까지 견인할 수 있어 Win-Win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 구조라는 인식 필요

02 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

개 요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간재로 사용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중간재 규정 활용을 통해 FTA 활용율 제고 가능 모델

• 중간재 규정에 대한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중간재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중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를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로 취급해 주는 것

비즈니스 모델

● 부가가치 기준 적용 원산지 판정할 때 미세한 차이로 충족/불충족 시 적용

•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용이

중간재 규정 이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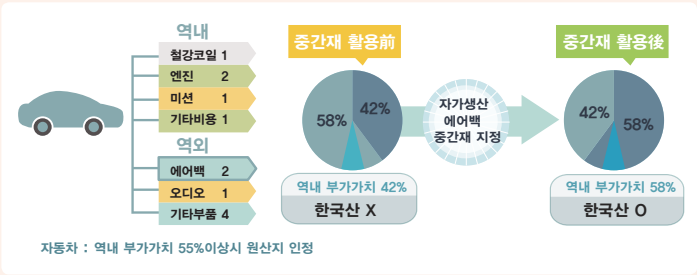

■ 협정별 근거규정 비교

구분	칠레	미국	싱가포르	페루	인도	아세안	EFTA	EU/터키
인정여부	○	○	○	○	×	×	○	○
지정의무	○	×	○	×	×	×	×	×
대상물품	자가 생산품	자가 생산품	자가 생산품	역내 생산품	×	×	역내 생산품	역내 생산품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중간재 적용 FTA

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 활용사례 1

차근차근 풀어보는 FTA, 모범답안을 찾다!

기업 및 제품소개

- C사는 유압브레이커 생산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대표적인 수출중소기업임
-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기계 안전규격 획득을 시작으로 ISO 9001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 향상과 상품 차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노력

- **제품소개**

거래품명	HS CODE
유압브레이커	8431.49
물품사진	
용도설명	굴삭기의 유압펌프에서 발생하는 유압에너지를 받아 이를 장비내부의 충격에너지로 변환하여 목적물의 파쇄를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로 콘크리트 파쇄 및 아스팔트 파쇄와 각종 배수로, 관로공사, 도로공사, 석산 등 암석파쇄작업 및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의 암석 굴착용 장비임

FTA 활용전 상황

- C사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의 약 66%를 차지
- 관세율 차이가 5% 이상으로서 FTA실익이 매우 큼
-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협력업체 비협조 등의 이유로 FTA 미활용

장애 요소

-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CTSH) 불충족
- 원재료 공급처인 B사 등으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역내산이라는 원산지 확인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워 활용 포기 상태

극복 방안

협 정	품 명	세번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기준	미소 기준	실행 세율	협정 세율
한-아세안 FTA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유압 브레이커	8431.49	CTH or RVC4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10% (가격)	15% 5% 1%	10% 0% 0%
한-인도 CEPA	유압 브레이커	8431.49	CTSH & RVC35%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SH & RVC 35%	10% (가격)	12.5 /kg	5%

극복 과정	주요 내용
미소기준 활용	• 107개 원재료 중 원산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액이 작은 원재료 O-ring 등 48개품목은 미소기준 적용 • 미소기준은 물품가격의 10% 이내 범위의 역외산 원재료는 세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됨
수입원재료 거래선의 전환(중국 → 국내)	• 중국 'OOOO'로부터 수입하는 'MOUNTING BRACKET ASSY'등 4개 품목은 국내 업체인 'OOO'로 거래선 전환
중간재 활용	• 주요 부품 실린더는 원재료인 철강 잉곳을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간재 기준 활용 • 중간재 지정으로 역내부가가치 상승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가능
협력사 설득	• 'VALVE HOUSING'등 미소기준 적용 이외 품목에 대하여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유도

●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RVC 40% 이상)을 종전에는 미충족하였으나, 당사에서 생산하는 주요부품인 철강잉곳을 중간재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RVC 51%)

직접재료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	판매/일반관리비	이익	FOB가격	RVC비율(%)
역내	역외					
4,389,492원	6,237,357원	3,847,251원		1,274,900원	12,749,000원	51%

활용 효과

● FTA를 통한 바이어의 수입 관세인하 효과와 일부 중국에서 수입하던 원재료의 수입선을 국내로 전환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국내 원재료 사용 촉진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FTA협정에서 인정하는 미소기준, 중간재 규정 적용 및 원재료 일부를 역내산으로 변경하여 FTA 적극 활용한 사례

중간재 규정 적용 모델 활용사례 2

중간재 활용으로 한-EU FTA 원산지규정 극복

기업 및 제품소개

● D사는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를 제조하여 주로 유럽,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업체

● **제품소개**

수출물품 (HS)	적용 FTA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율(%)	
			MFN	FTA
DVR (8521.90)	한-EU	MC 45%*	13.9	0 (5년간 균등철폐)

* 역외산 원재료비율 45%이하

FTA 활용 상황

FTA 활용시 장애요인

- 역외산재료 사용비율이 높아 원산지 불충족 판단 ▶ FTA 활용 포기
-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인증수출자 신청절차등에 대한 이해 부족
- 다수 부품(200여개)에 대한 품목분류 애로

활용과정(극복과정)

- FTA 활용 Total Consulting

인증 전	• 우편물 발송, 전화상담을 통한 인증제도 홍보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절차 안내 • 원산지결정기준 설명 및 기준 미충족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역외산 재료 비율이 높아 원산지기준 불충족으로 인증 포기 • 200여개 부품의 세번 검토에 장시간 소요 *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중간재)의 가격 전체를 원산지 재료비로 인정 가능
인증단계	• 수출물품, 원재료 가격 산정 방법 안내 • 원산지소명서, BOM 등 구비서류 작성 방법 안내 • 원재료의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 제시 • 중간재* 규정 적용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함을 컨설팅 •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재료 세번 검토
인증 후	•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 등 활용 방법 안내 • 서류 보관 등 사후관리 방법 안내

-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으로 FTA 활용 토대 마련
  - 인증수출자 준비로 전사적 원산지관리 체계 정비,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
  - 한-EU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 획득('11.6.28.)

활용 효과

- 한-EU FTA 활용으로 관세절감·수출증대 예상
  - 관세절감 : 연간 약 7만불('10년 당기순이익의 14% 상당액)
  - 수출증대 : 연간 약 30만불 예상
-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우위 확보

시사점

- 'FTA 교역시대' 진입으로 FTA 활용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원산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체별 특성에 맞은 FTA 활용 전략 수립
-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판정결과가 미세한 경우 '중간재' 규정 적극 활용

03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개 요

- 원산지관리의 실행주체는 사람임
- 원산지관리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관에서 지원하는 Job Matching 사업을 통해 훈련된 원산지전담자를 확보하여 FTA를 활용하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 세관이 기업의 FTA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양성한 인재를 현장으로 피드백
  - 경력 단절 여성, 특성화고 졸업생, 퇴직 공무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 FTA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Job Matching 활용한 FTA 인재 영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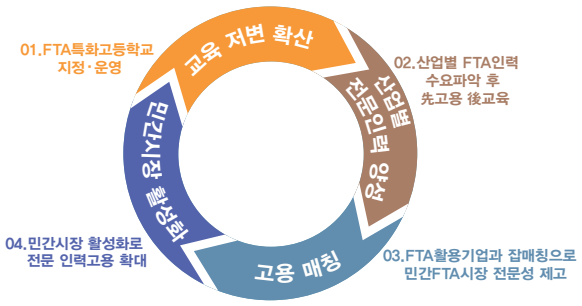

활용 및 확산분야

- 영세 중소기업
- FTA 전문인력 구인기업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활용사례 1

아줌마도 FTA 잘해요, 경단여성 FTA인재 일자리 창출

기관 소개

- 서울본부세관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연계 중심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협력하여 추진

잡매칭 과정

- FTA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적합한 과정을 선정한 후 세관 FTA교육으로 전문인재를 양성

■FTA 취업적합과정

센터명	과정 (160~200시간)	FTA 관련 취업적합과정 선정 이유
영○	관세사무원	「무역~FTA~통관」까지 이론 및 실무교육 총괄, FTA 교육내용 다수 포함
영○	세무사무원	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
구○	무역사무원	무역, 수출입, 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 무역기본지식 보유
서○	회계사무원	통계추출 및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 관련서류 작성에 유리
서○	무역전문가	무역~수출입~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 무역 기본지식 다량 보유
중○	중소기업경리	회계장부 및 경리업무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 서류 작성에 유리
성○	전산세무회계	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 가능, 전산실무에 능함. BOM 작성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

- 인천센터에서 전산회계과정 30~40대 경단여성(전산회계 1~2급 자격증 획득)을 대상으로 FTA강의를 의뢰
- 서울세관 「제1기 경력단절 여성 FTA 교육」 운영으로 FTA 전문가 14명을 양성하여 旣실시한 '관세사무원 채용수요조사'로 상시매칭에 돌입
- 전국 최초 경단여성 대상 「FTA Job Matching Day」 행사 개최

시소 2014. 6.26.(목) 09:30~13:00, 서울본부세관 별관 2층
구인·구직자 약 75명 (구인업체 17개社, 경단여성 FTA 구직자 58명)

잡매칭 효과

- '14년 경력단절 여성 FTA인재 잡매칭으로 도약적인 취업률 달성
  - ▶ 상반기임에도 전년대비 1,1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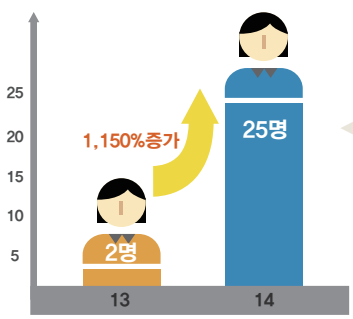

'13년, '14년 FTA경단여성 취업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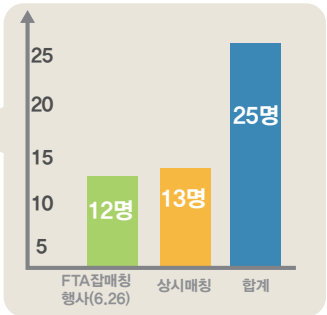

'14년 FTA경단여성 취업현황

- 1人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으로 구인업체에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 FTA 활용 증가 ▶ 수출증가 ▶ 투자·고용 증진

시사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금 수여 등으로 양방향 수혜자 발생
- 사회진출 및 재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인재양성교육·취업연계」까지 원스탑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제공 및 경제활동 참여 도모

● 영세 관세사무소에 지원금을 포함한 FTA인재 연계로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관세업계 활성화 제고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활용사례 2

FTA를 만난 학생들, 이건 특급기회야!

배 경

● 중소기업이 채용가능한 고졸 FTA 전문인력을 세관이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FTA활용 강소기업 육성 필요

잡매칭 과정

● FTA협정별 상이한 원산지 규정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FTA실무에 능통한 자 필요

FTA활용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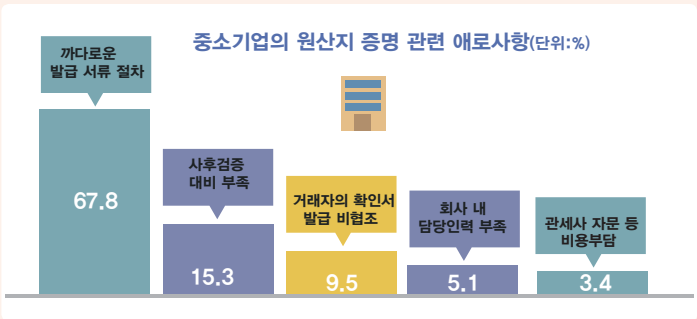

● 서울 유일의 무역업계 특성화고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매향여자정보고, 경기상업고 등 FTA전문인력 과정* 운영(총 9개교 433명 수료)

* (커리큘럼) FTA 이론·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기본역량 함양(3회 24시간)

● 구인기업·구직자 DB를 활용한 수시 매칭과 취업박람회 개최 「전문인력 육성 ▶ 고용 ▶ 중소기업 성장 ▶ 전문인력 고용 확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잡매칭 효과

- 사회경험이 없는 특성화 고교생 등이 다양한 산업의 원산지관리 경험을 쌓아 기업선호인력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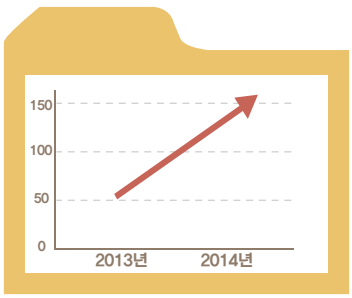

특성화고 FTA교육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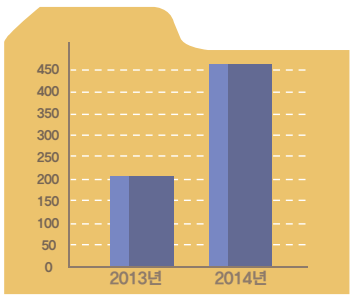

특성화고 전문가양성 추이

- 특성화 고교생 FTA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신규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환경 마련

시사점

- 중소기업 FTA활용의 성공모델

성공 요인

- 성공사례를 통해 산업별 FTA전문인력 양성, 민간 FTA시장 활성화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 모델로 적용모델 확산

원산지관리사 시험안내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원산지관리사는 정부가 인정한 FTA·원산지관리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어 13회(14.11.15)까지 총 2,17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2012년 말에 공인민간자격으로 승인되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서 인사 상 우대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통해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전문인력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총 3회의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아래에서는 2015년도 원산지관리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01 시험일정

2015년 원산지관리사 정기시험은 총 3회가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3월 28일 제14회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있었다. 다음 시험은 8월 22일이며, 7월 27일에서 8월 5일 사이 원서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 차	시행일자	시험공고일	원서접수기간	합격발표
14회	3. 28(토)	2. 23(월)	3. 2(월) ~ 3. 11(수)	4. 27(월)
15회	8. 22(토)	7. 20(월)	7. 27(월) ~ 8. 5(수)	9. 21(월)
16회	11. 21(토)	10. 19(월)	10. 26(월) ~ 11. 4(수)	12. 21(월)

02 세부사항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지난 2014년 4월까지 치러진 시험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지만, 제12회부터 의무사전교육은 없어졌다. 원산지관리사 교육이 필요하다면, FTA원산지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겠다.

또한, 시험과목은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 실무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과목별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은 4지선다 객관식이며, 2시간동안 시험이 진행된다. 전체 문항수는 100문제이며, 과목당 100점만점 기준으로 과목 평균 60점이상, 매 과목당 40점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시험지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시행장소 :** 시험 공고 시 안내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검정방법**

<table>
<tr><th>검정방법</th><th>시행형태</th><th>합격기준</th></tr>
<tr><td>필기
(4지선다 객관식)</td><td>
<table>
<tr><th>구분</th><th>과목</th><th colspan="2">문제수</th></tr>
<tr><td>14회</td><td>• FTA협정및법령
• 품목분류실무</td><td>25
25</td><td>총 50</td></tr>
<tr><td>16회</td><td>•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입통관실무</td><td>25
25</td><td>총 50</td></tr>
</table>
</td><td>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td></tr>
</table>

검정과목

과 목	출제분야
FTA협정 및 법령	• FTA 이해 • FTA 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 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조사 • 원산지 사전심사 •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품목분류실무	• HS 품목분류제도 • 관세율표 통칙 • 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개요 • FTA특혜관세적용조건 • 일반기준 • 품목별기준 등
수출입통관실무	• 관세의 개요 • 관세법 일반 • 수출입통관 • 보세구역관리 • 보세화물관리 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

03 기타사항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담자로써 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원산지관리사 채용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신규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연간 1,080만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게시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세부 시행지침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포함하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등 전문인력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 및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서비스업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원산지관리사 취업 및 업무 도움 사례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면 특혜관세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FTA 원산지관리사이다. 2010년 6월 최초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3월 28일 14번째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있었다. 민간등록이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2013년 국가공인으로 지정되어 자격증 취득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체 등에서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에 합격하면, 무역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기업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내부원산지 관리전담자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일반회사의 기획팀, 구매팀, 영업 지원팀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시험 주관사인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준비생 또는 취득예정자들에게 생생한 취업(업무)도움 실례를 제공하고 자격증 홍보를 목적으로 원산지관리사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 원산지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응모 내용 중 우수사례 2편을 선정하여, 수상자의 동의하에 관련내용을 실었다.

원산지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취업!

김수정
FTA 전략연구센터 기획개발팀

> 지금하고 있는 업무들은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없었더라면 1년이 걸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성공과 전문지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12회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한 김수정입니다.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자마자 원산지정보원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취업기회(원산지관리사 우대채용)에서 바로 FTA전략연구센터라는 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원스탑관세법인의 FTA팀과 함께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업체가 원산지에 대해 잘 모를시 이론적 기초제공, 기업 맞춤형 FTA 컨설팅(원산지 관리체제 구축, 운영, 사후검증 대비, FTA업무대행 서비스), 기업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수취와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FTA-PASS)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체의 FTA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된 계기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제 4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최종목적이 원산지관리사 취득이었고, 노력 끝에 저는 12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직이 되지 않아 우연찮게 무역학과라는 전공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부터 견학 그리고 면접이라는 기회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원산지관리사를 획득하여 FTA전략연구센터에 들어온 것은 저에게 원산지관리사라는 전문직을 발전시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 동기들 중 누구보다도 원산지관리사를 잘 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관리사를 준비할 당시에는 나라별 FTA협정, 기관/자율 발급, 협정별 서식, 원산지검증 등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만 접했지만, 업무의 특성상 원산지관리에 대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접하게 되니 이론적인 부분이 밑바탕으로 깔려 실무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 이해하는데도 편하고 좀 더 빨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사하자마자 업체에서 한-EU 원산지검증 및 한-미 원산지검증 의뢰가 들어와 원산지관리사로써 참여하여 서류 작성 및 업체 방문을 통해

실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업무들은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없었더라면 1년이 걸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를 공부하고 취득함으로써 취직의 기회 뿐 아니라 업무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득예정인 분들 역시 저처럼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성공과 전문지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출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산지 관리사

김태완
대호정기 영업부 과장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농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방산부품 관련업체인 대호정기(주)에서 국내 고객사 업무와 해외 거래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태국시장 진출을 기획하면서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증명 프로세스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13년 4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양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이수 후, 같은 해 5월에 실시된 제8회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취득으로 인해 FT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업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어로부터의 직접적인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뿐만 아니라, 거래처나 고객사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에도 주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나 이웃 회사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도 지도하게 되어 대외적인 신뢰도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획득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수출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던 일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방산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보니 일반 민수 제조업에 비해서는 수출처의 발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회사의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 됩니다.

원산지관리사 취득으로 인해 FT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업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획득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수출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던 일입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이전에도 수출은 하고 있었지만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 오는 해외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도에 태국 KOTRA를 통하여 현지 업체를 발굴하게 되었고, 제품 수출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2013년이 시작되면서 고대하던 수출계약이 성사되려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성사의 최종단계에서 태국의 바이어가 상업송장 발행 시 Under Value를 요구해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산관련 제품 제조업의 특성상 신뢰와 신용은 회사 운영에 있어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바이어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면 자칫 회사가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오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이어와의 수출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 내부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업무담당자인 저는 태국 바이어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제품의 태국 수입관세가 약 30%에 달하다보니 태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수입관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Under Value를 요구해 왔었던 것입니다.

수출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당시에도 저희는 태국 바이어가 한·아세안 FTA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이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특혜관세율을 확인한 후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와 그에 따른 관세 혜택을 설명해 주게 되었는데, 태국 바이어는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협상은 급진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바이어 자신도 관련사항을 확인한 결과 더 이상의 요구사항 없이 바로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2월에 25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켜 그해 전량 수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후속 물량에 대한 상담과 시제품 수출이 이어졌고, 2015년 올해에는 약 6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계약을 위한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FTA PASS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

BOM 기능 추가로

중소기업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지원이 손쉬워졌다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FTA-PASS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까지 대응이 가능한 중소기업용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세청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1만 1,850개 중소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기능은 기존에 있던 간편발급 기능에 주요 100대 수출물품에 대한 업종별 BOM 기능이 탑재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기초자료 입력·작성부터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 관리까지 클릭한번으로 손쉽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BOM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성 체계로 생산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HS코드, 원산지정보, 각 원재료별 가격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소요자재명세표이다.

주요 100대 수출품목은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라스틱 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 공구(12), 기계류(18), 광학 잡품(10)으로, 7개업종에 대한 100대 품목의 표준자재명세서(BOM)가 제공되고 있다. 이용방법에 대해서 각 과정을 그림과 함께 단계별로 보겠다.

중소기업 100대 수출품목 리스트

구 분	내 용
농수산가공식품(7)	냉동 홍게살, 파스타, 유자차, 된장, 조미 김, 알로에음료, 홍삼드링크
화학산업(14)	윤활제, 부탄가스, 프로필렌글리콜, 디프로필렌글리콜, 열전사지, 잉크, 립스틱, 아이라이너, 바디워시·세안제, 접착제, 토너, 직물수발제, 콘크리트용 조제점결제, 핫팩
플라스틱 · 고무(15)	L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VC(폴리염화비닐) 타일, 플라스틱제 접착테이프, PVC 필름, PET 필름, 폼보드,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제 밀폐용기, 가황한 고무제품, 패션 에코백
섬유 · 의류(24)	합성필라멘트사, 합성모노필라멘트, 나일론 직물, 폴리에스테르 직물, 합성필라멘트 직물, 아세테이트 직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직물, 라셀 레이스 직물, 자수 직물, 폴리우레탄 직물, 광택 직물, 파일 편물,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경편직 직물, 합성·반합성의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유아용 양말, 타이즈, 양털 양말, 면양말, 합성섬유제 양말, 플라스틱 피복 장갑, 나일론 장갑, 청소용 포
철강 · 공구(12)	연마지, 손톱광택기, 글래스 록, 모조 다이아몬드, 금 장식용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 알루미늄 주방용품, 프레싱·스탬핑·펀칭용 공구, 밀리용 공구, 손톱깎이, 금고, 플렉시블 튜빙
기계류(18)	액체펌프, 냉장 및 냉동기구, 냉각기·배양기·가열기 등 온도변화장치, 물 정화기, 포장기계, 사출식 금형, 밸브, 인버터, 축전지, 시동발전기, 사우나 캐빈, 유무선 송수신장치, 휴대용 오디오, CCTV 카메라, 산업용 모니터, 안테나, 전기제어용 패널, 전기절연 케이블
광학 · 잡품(10)	콘택트렌즈, 안경렌즈, 램프, 조립용 키트, 클레이 샌드, 러닝머신, 칫솔, 화장용 브러시, 마커, 화장용 스펀지

01 필요한 서류 준비

간편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①생산, 수출물품이 FTA 특혜대상 여부 ②생산·수출물품(완제품) 및 중간재, 원재료의 HS 코드 ③생산·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재료비, 원산지 정보 ④협정에서 정한 생산·수출물품의 공급 가격 ⑤서명권자의 정보 및 서명이미지 등이 있는지 자료가 없다면, 사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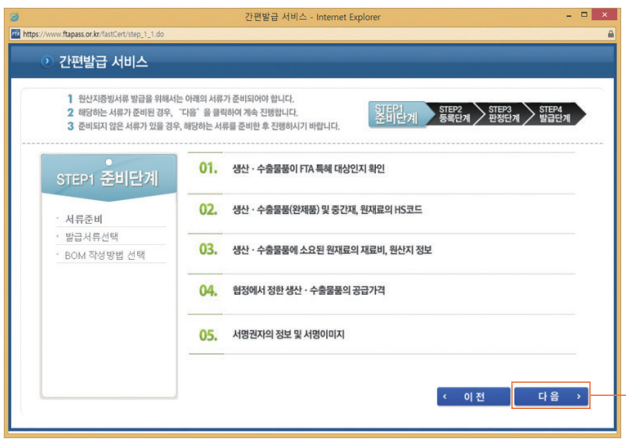

서류 준비 후 다음 버튼 클릭

02 원산지 증빙서류 선택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간편발급 서비스 중에서 국내(원산지 포괄)확인서 부분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03 BOM 작성방법 선택

기존의 FTA-PASS 기능 중 일부분인 간편발급 서비스에서 표준 BOM 부분을 선택하면, 중소기업 100대 수출품목 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04 공급처 선택

수출자가 이용하던 공급처가 있는 경우 공급처를 선택하고 작성된 사항이 없을 경우 상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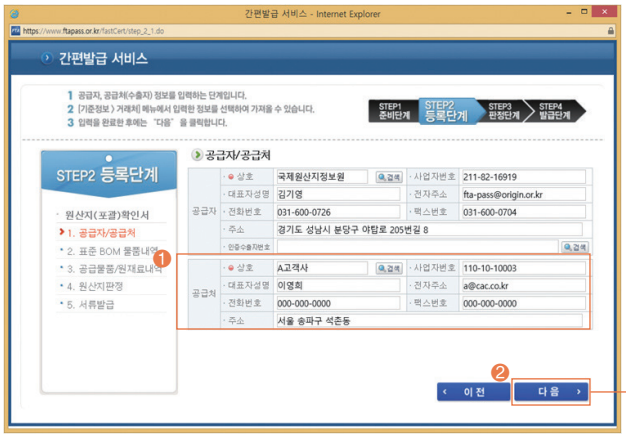

05 표준 BOM 활용 품목 선택 1

공급처가 선택되었다면 수출 품목의 세번이나, 품명을 검색조건 입력란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김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검색조건에 김을 입력하면 물품내역, 품목분류 코드 및 자재명세서 등이 기본사항으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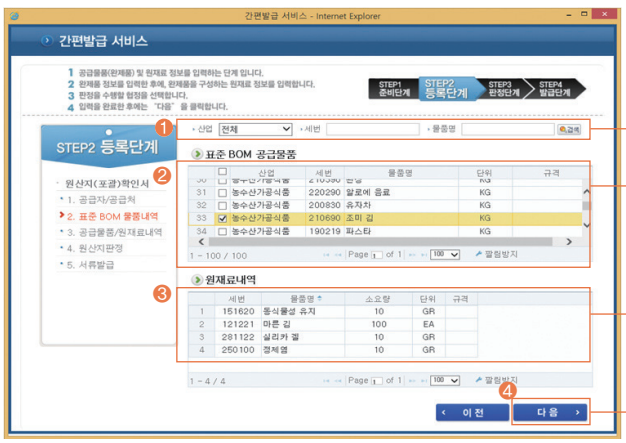

06 표준 BOM 활용 품목 선택 2

대상물품의 BOM을 확인하였다면, FTA 혜택을 받고자 하는 협정을 선택한다. 공급물품 중 수정 내역이 있을 경우, 공급물품 원재료 물품의 단가, 소요량, 단위 등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 역시 가능하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해당기업에 맞는 사항으로 변경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07 원산지 판정

공급처, 표준 BOM을 통해 품목선택이 완료되었으면, 개별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 공급물품 및 판정대상 협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원산지 판정 버튼을 클릭 후 다음을 누른다.

08
원산지(포괄) 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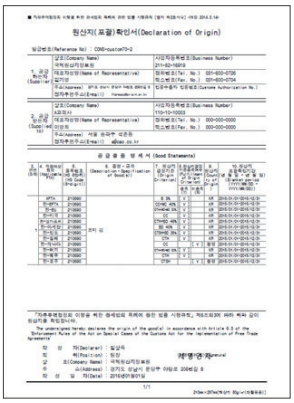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포괄기간과 서명정보를 입력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 기능인 100대 물품에 대한 표준 BOM은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영세기업이나 초보기업에 도움을 주기위해 개발되었다. 특히 표준화된 BOM 제공으로 인해 시스템 사용자는 최소의 작업으로 FTA 업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시 참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표준 BOM 기능의 특징이다.

표준 BOM은 FTA-PASS(https://www.ftapass.or.kr/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용가능하며, 국제원산지 정보원 사후관리팀(031-600-0770)으로 전화를 하면 관련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가능하다.

FTA 100% 활용하기
중국의 통관환경 동향, 통관 유의 사항은?

손혜정 복단대 석사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2015년 2월 가서명을 체결함으로써 진행에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협정문 분석 및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가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양국이 FTA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연내~16년 초에 정식 발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1)]
그럼 FTA 발효에 앞서 현재 중국의 통관환경이 어떠한지, 어떠한 절차와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통관 환경

중국의 통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중국 해관의 행정조직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통관행정을 담당하는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는 1980년 2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분리 독립하여 국무원 직속의 장관급(部級)기관이 되었다.

1) 이 글은 201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중국' 및 'KOTRA 글로벌윈도우–국가별 보기–중국'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중국 해관총서의 주요 기능은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을 감독관리,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단속, 해관 통계의 작성 및 기타해관업무의 처리 등이며 전국 267개 공항만 및 내륙철로 개항지를 관리하며, 15개의 보세구, 8개의 보세물류원구, 12개의 보세항구, 59개의 수출가공구, 4개의 종합보세구 등 총 98개의 감시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189개국 중 9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통계는 사업개시, 건설 허가, 전력 수신, 부동산 취득, 신용 취득,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무역, 계약 이행 및 청산 등 10개 지표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다.

중국 무역분야 순위 비교

구 분	중 국	EAST ASIA&PACIFIC	OECD	브라질	인 도	한 국
수출필요서류(개수)	8	6	4	6	9	3
수출소요시간(일)	21	21	11	13	16	8
수출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20	856	1,070	2,215	1,170	670
수입필요서류(개수)	5	7	4	8	11	3
수입소요시간(일)	24	22	10	17	20	7
수입소요비용(US달러/컨테이너)	615	884	1,090	2,275	1,250	695
무역분야 순위	74	-	-	124	132	3

자료: The World bank,「Doing business 2014」

중국 수출입 소요기간

단위 : 일, 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소요기간	비용	소요기간	비용
서류준비	14	305	15	260
세관통관	2	80	4	80
항만(터미널)	3	140	3	140
내륙운송	2	95	2	135
합 계	**21**	**620**	**24**	**615**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해상 수출비용은 컨테이너당 약 620달러이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 서류준비를 비롯하여 통관 및 국내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하여 총 21일이 소요되며, 해상 수입의 경우는 컨테이너당 약 615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5가지, 서류 준비를 포함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2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통관 절차 및 서류

중국의 통관절차를 살펴보면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운송수단 책임자, 물품 소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규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수출입 및 관련된 해관사무를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기단계
수출입 전
사전준비 단계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이 수출입하기 전에 해관에 준비수속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 **보세가공화물의 경우,** 수입 전에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가공무역 준비수속을 하여야 하며, 가공무역 전자장부와 전자화 수책 개설을 신청하거나 또는 가공무역 종이수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 **특정감면세화물의 경우,** 수입 전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의 감면세 준비와 심사비준 수속을 하여야 하며, 감면세증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 **임시수출입화물의 경우,** 수출입 전에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 임시수출입 준비신청 수속을 하여야 한다.
- **기타 수출입화물 중의 출료가공(出料加工) 화물의 경우,** 출료가공 화물의 수출 전에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료가공의 준비수속을 하여야 한다.

수출입단계
수출입 화물
통관 단계

- 수출입화물의 통관은 일반적으로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및 반출입' 등의 4단계를 거친다.
- **신고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해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화물검사 :** 해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신고서류와 화물의 일치 여부, 위법행위의 유무 및 수출입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관세 징수 및 납부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관에서 발급한 관세 및 검사비용 등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해관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관련 비용을 해관의 전문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 **통관 :** 해관담당자는 서류신고, 화물검사, 관세징수 등의 통관 절차를 재확인한 후, 확인 인장을 찍고 수출입화물을 반출시키며 절차가 종료된다.

후속단계
정산, 종결,
감관 해제 등

-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 요구에 따라 화물을 수출입할 때, 장치, 가공, 조립, 사용, 유지보수 후에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해관에 상술한 수출입화물의 정산(核销), 종결(销案), 감관의 해제 등을 신청하는 과정을 말한다.
- **보세가공 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 그 대리인은 규정된 기한 내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 **특정감면세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 그 대리인은 해관감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관감관기간 내에 해관의 비준을 받아 판매, 양도, 반송, 폐기한 경우 해관에 감관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 **임시수출입화물의 경우,**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임시수출입이 규정한 기한 내에 또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 임시수출입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재수출입하거나 정식으로 수출입신고를 하고, 그 후에 종결을 신청해야 한다.
- **기타 수출입화물 중의 출료(出料) 가공화물과 수리화물, 일부 임대화물** 등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종결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물의 수출입은 수출입신고, 검사협조, 세비(관세 및 검사비용 등) 납부, 화물 수령 또는 운송 등의 수속을 거치게 되며, 중국은 수출입 전후에 무역 특징별 준비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가공무역의 원재료 수입의 경우, 해관은 신고와 서류심사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통관수속 외에 사전 준비(備案)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한 원재료로 완성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산종결(核销结案)한 후에야 가능하다.
중국의 통관 절차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감관을 실시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시간의 전후에 따라 전기단계와 수출입단계 그리고 후속(사후)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통관 서류는 통관의 첫 단계인 관세신고 때 필요한데, 신고방법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의 3가지 종류로 나뉜다. 통관 서류는 수출입화물신고서 외에 하기와 같이 기본서류, 특수서류, 예비서류 등이 필요하다.

수출입화물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일반적으로 동일양식의 신고서를 3부 작성하여 각각 세관보관, 세관통계, 기업보관용으로 관리한다.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통관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신고서 1부만 작성하여 등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위탁가공무역이나 원자재조달 가곡무역은 1부는 세관신고 확인용으로 추가 작성하고, 외화수취가 있을 경우는 수출외화대금영수신고 확인용으로 1부를 다시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한데,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작성하여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할 수 있다.

기본서류

- INVOICE(운송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포장명세서(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B/L(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육상운송의 경우)
- 수출대금영수 신고 확인증(수출의 경우)
- 해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 증명서

특수서류

- 쿼터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상무부 수출입허가증 등)
-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 가공무역수책
  - 국가수출 장려를 위해 가공무역업체의 수입원자재 보세처리, 수입통관 시 관세부과 면제, 가공무역수책에 수입사항 기록 후, 재수출 수량에 대해서 등록말소 처리
  - 모든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며, 관할해관에 신청하여 처리
  - 수책기록 내용에 근거하여 BOM108)갱신 및 수책 변화 수출입 현황을 관리

예비서류

- 무역계약서
- 원산지 증명
-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통관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자격이 정해져있는데,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하여 그 대상은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대행)업체와 수출입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 그리고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담당자가 통관인원인 경우에 한한다.

통관기한을 보면, 수입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 수출의 경우는 세관의 특별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그 시기가 경과되면 수입화물은 도착가(CIF)의 0.5%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하며, 징수 후 3개월까지도 세관신고가 없으면 수출화물은 임의 매각된다.

통관 애로사항 및 기업 입장의 대응방안

중국 통관진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통관 관련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제도 등을 말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수단을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수단을 통칭하는 것이며, 그 종류로는 수입허가제,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통관 관련 규제, 원산지 규정 및 무역구제 등이 있다. 그 중 통관 관련 규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수입의약품 통관지 제한
- 수입신고 지체금 부과
- 환급규정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 이중 세관검사(발췌 검사 후 전량 검사)
- 관세부과 기준가격 비공개
- 보세운송 불허
- 관세분류의 자의성 및 화물에 대한 상세정보의 기밀보호 미흡
- 통관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 과도한 통관심사

수입의약품 통관지 제한은 중국 '수입약품관리방법'이라는 수입약품 심사, 허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국무원이 약품수입을 허가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수입약품 통관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해당 수입항 관할 해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환급규정 정보 획득의 어려움은 그 정보가 중국어로만 제공되고, 수시로 변경되는데 변경에 대한 통보가 없어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 특히 중국은 외자기업의 수출규모가 중국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이나 수출증치세 환급규정 및 절차가 모두 중국어로 되어있어 해외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환급률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 이중 세관검사도 통관을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 납기 지연이나 통관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해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전수검증,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의 검사방식을 채택하고,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의 감독지역 내 항만, 기차역, 공항, 우체국 혹은 기타 해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되지만

검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규정이 없이 해관원 자체 판단 하에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발췌검사를 한 물품에 대해서도 전량검사를 재실시하는 등 이중검사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비싼 원자재 통관 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해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필요 자재량보다 많이 수입됐다고 생각할 때에도 검사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과 해관원에 따라 검사기준이 상이하여 통관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진다.

(원자재의 경우 5~10%만 검사하는 데 반해, 설비는 100% 검사하고 통관수속이 완료된 후에도 각 공장의 관할지 해관에서 재통관 수속이 진행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하려는 품목이 중국 내 민감품목인지 여부를 사전 인지하고, 민감 품목의 경우는 중국 내 수요-공급 상황에 대한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세관 검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2014년 신규 수입규제 제도

반독점법 조사 강화

아동용 카시트 강제인증제도 실시

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엄격 관리 시행

인터넷 방송 규제 강화

철강재 가공무역, 보세 정책 취하

수입규제 제도는 하기의 2014년 신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중국의 수입규제 방향을 읽어보기로 한다.

중국은 2013년 8월부터 LCD, 분유,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대적인 반독점법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관련 기업에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차 가격 등에 대해서도 폭리 등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행하며 외자계 기업의 가격 담합, 고가 전략 등을 통한 부당이득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반독점법 조사 대상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국민생활과 연관된 산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용 카시트는 2014년 1월 연합공고문을 통해 '상품강제인증제도(CCC)'를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14년 9월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위탁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인증 미획득 제품의 중국 내 출하,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수입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규제를 통해 통일된 기준, 법률규제 등이 마련되면서 아동용 카 시트의 수입,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 중국내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감독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상품강제인증제도를 꼭 활용하여야 한다.

또, 중국 내 분유파동이 발생한 후 유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관련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2014년 4월 중국은 '1차 수입산 유제품 해외생산기업 리스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생산기업 제품은 2014년 5월부터 중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리스트 확인 : http://www.cnca.gov.cn/ywzl/gjgnhz/jkzl) 또, 수입산 유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등록신청 시 검역보고서, 상품 유형, 브랜드, 위생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포장 제품을 수입한 후에 중국 내에서 다시 소포장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반드시 분유용기에 포장된 최종판매 형태로 수출해야 한다. 제품에 중문 라벨이 없거나 표기사항이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도 반송 혹은 폐기처리한다. 최근 중국 내 식품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 수출입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한 법규 갱신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중국 내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율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 드라마, 영화 등의 컨텐츠의 접촉이 용이해졌다. 중국은 해외의 문화 컨텐츠가 중국의 정치, 문화, 역사 등의 기본 질서와 위배될 경우 이에 대한 방영을 차단하는 등의 감독강화를 발표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 컨텐츠들이 중국 내 방영되기 위해서는 모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경제 정책은 시장 논리를 따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 컨텐츠로 인해 중국 내 사회혼란이 가중되거나 화제거리를 만드는 등의 행위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감독 방향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겠다.

또, 중국은 철강재 가공무역의 보세 정책을 취하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 및 수입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중국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철강 수요가 컸으나 최근 신규주택 건설이나 전기, 기계, 자동차 등의 수요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중국 내 철강생산량도 증가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강 관련 무역을 규제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우선 AIIB의 출범에 주목해야 한다. 올해 AIIB 출범 이후 중국과 한국 건설사의 토목 SOC 공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의 진출 확대는 철강재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국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중국의 통관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해 항상 예의주시한다면 무역 확대의 방법은 여러 산업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자재나 일반 가공무역을 뛰어넘어 차별화된 기술로 첨단IT 및 전자부품 개발 등에 집중하고, 중국 내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마케팅이나 A/S 강화 등의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겠다. 또 그 간의 제조업 중심의 교역에서 서비스, 문화 중심으로 교역 산업을 다양화하여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의 수출입 시에는 더욱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로 보는 2014 특혜 수출입실적(1월~12월)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분류는 HS 품목분류 체계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품목분류 체계로 이번호에서는 FTA국가에서의 산업변화(MTI 1단위)와 상위 품목(MTI 3단위)의 특혜 수출입 실적을 알아보았다.

※ MTI 1단위(수출 상위순) :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섬유류, 광산물,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수출 기계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33,288,278 (47%)	37,494,725 (53%)	70,783,0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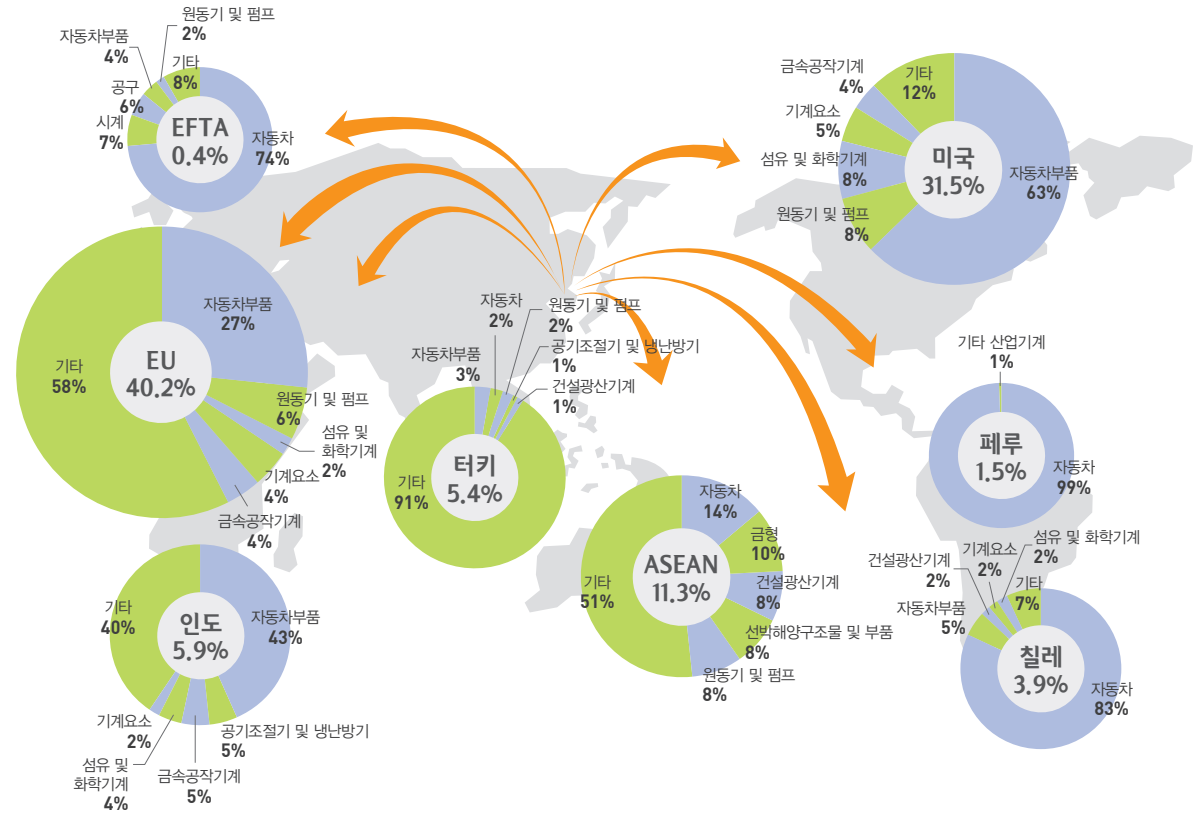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기계류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33,288,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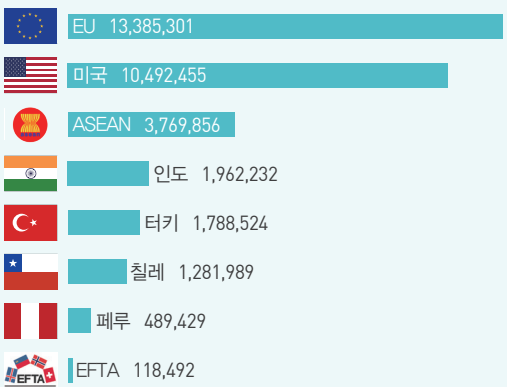

기계류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부품	11,740,939	35.3
2	자동차	8,141,871	24.5
3	원동기 및 펌프	2,182,624	6.6
4	기계요소	1,430,252	4.3
5	섬유 및 화학기계	1,358,295	4.1
6	금형	1,325,790	4.0
7	금속공작기계	1,273,654	3.8
8	공기조절기및냉난방	1,065,937	3.2
9	기타기계류	932,022	2.8
10	공구	495,382	1.5
총계		33,288,278	100.0

수 입 기계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30,029,079 (72%)	11,557,155 (28%)	41,586,2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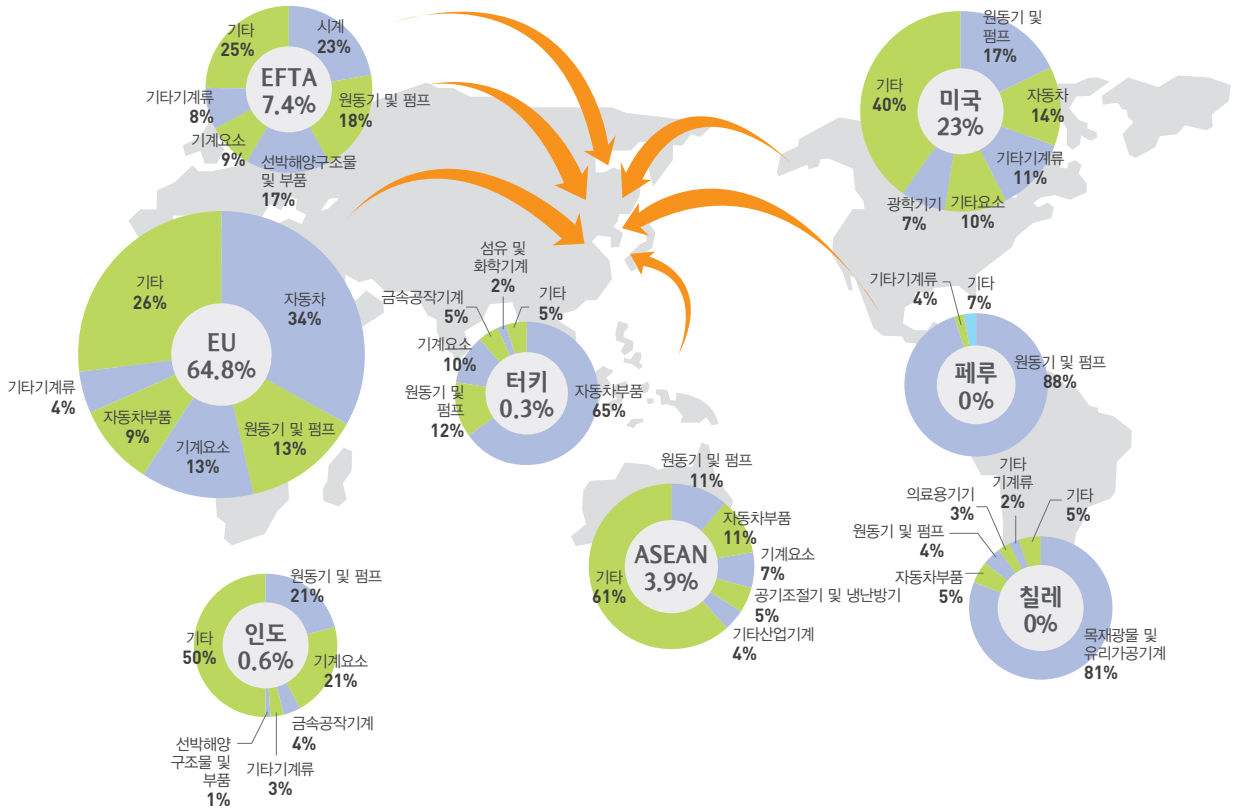

협정별 기계류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30,029,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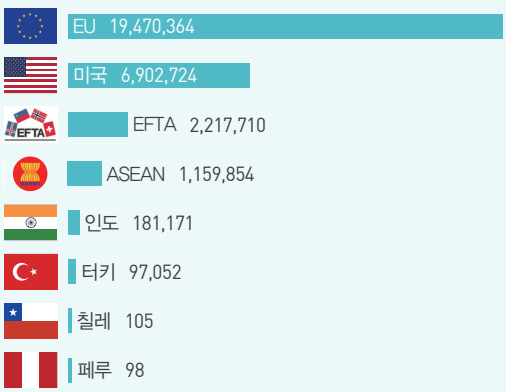

기계류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원동기 및 펌프	4,424,996	14.7
2	기계요소	3,535,749	11.8
3	기타 기계류	1,885,792	6.3
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773,477	5.9
5	섬유 및 화학기계	990,194	3.3
6	기타 산업기계	928,667	3.1
7	금속공작기계	783,210	2.6
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23,388	2.1
9	의료용기기	605,500	2.0
10	시계	526,251	1.8
총계		30,029,079	100.0

수 출 화학공업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12,360,865 (55%)	10,263,518 (45%)	22,624,38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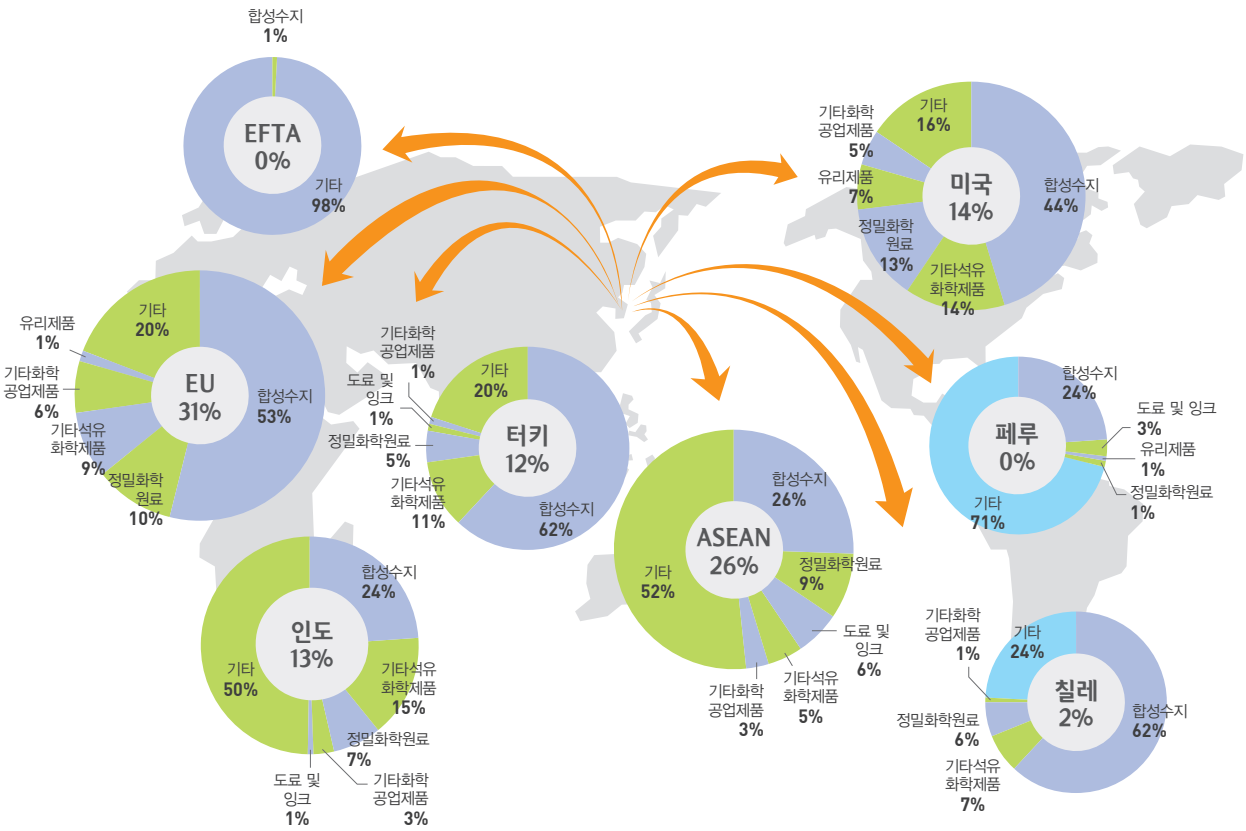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12,360,8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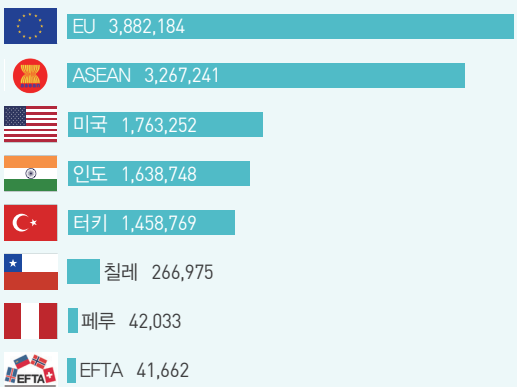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5,175,960	42.0
2	기타 석유화학제품	1,187,806	10.0
3	정밀화학원료	1,142,117	9.0
4	석유화학 합섬원료	682,029	6.0
5	기타 화학공업제품	507,069	4.0
6	기타 정밀화학제품	361,435	3.0
7	도료 및 잉크	287,847	2.0
8	염료 및 안료	246,865	2.0
9	유리제품	223,035	2.0
10	타일 및 도자기제품	73,285	1.0
총계		12,360,865	100.0

수 입 화학공업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17,946,247 (76%)	5,778,587 (24%)	23,724,8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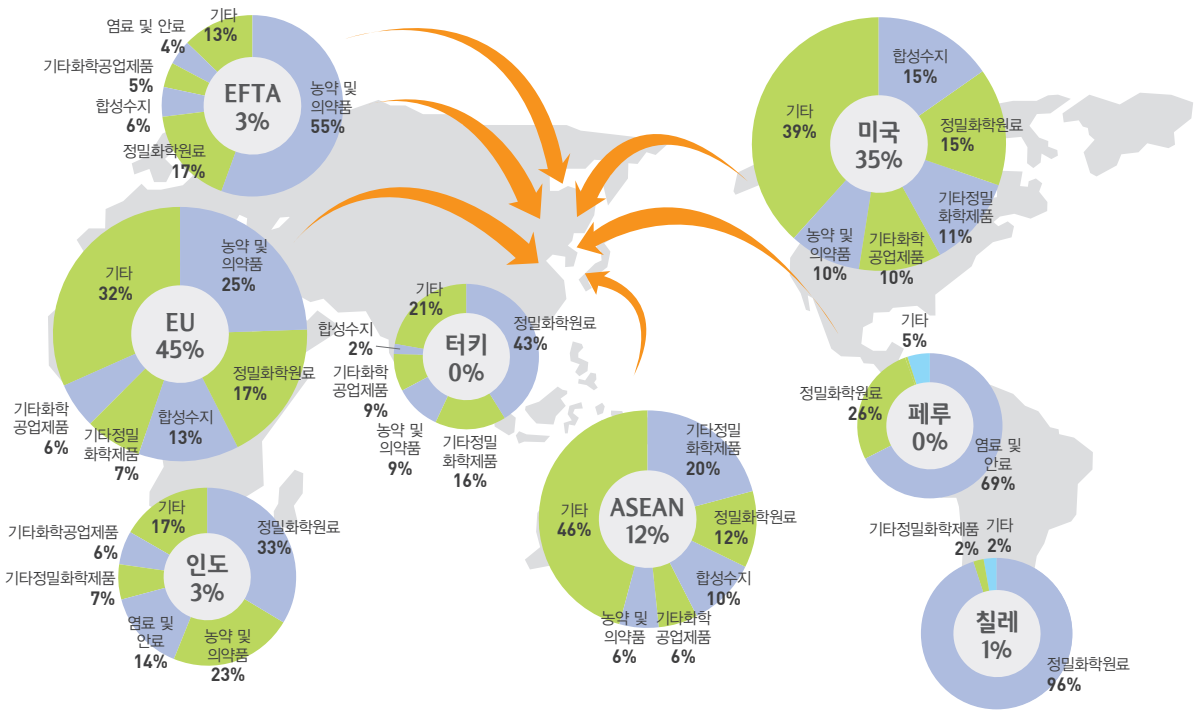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17,946,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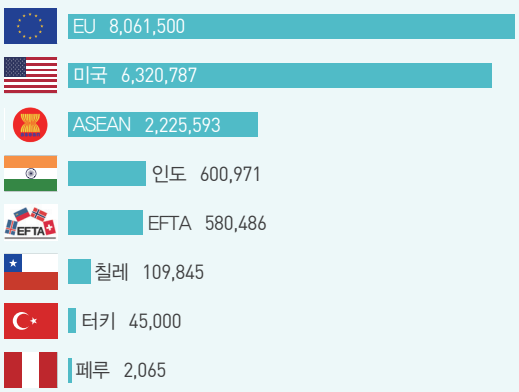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농약 및 의약품	3,228,449	18.0
2	정밀화학원료	3,038,862	17.0
3	합성수지	2,276,968	13.0
4	기타 정밀화학제품	1,805,757	10.0
5	기타 석유화학제품	1,379,627	8.0
6	기타 화학공업제품	1,312,445	7.0
7	비누치약 및 화장품	1,127,499	6.0
8	염료 및 안료	661,624	4.0
9	유리제품	560,673	3.0
10	표면활성제	297,620	2.0
총계		17,946,247	100.0

수 출 전기전자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10,388,953 (20%)	40,391,698 (80%)	50,780,65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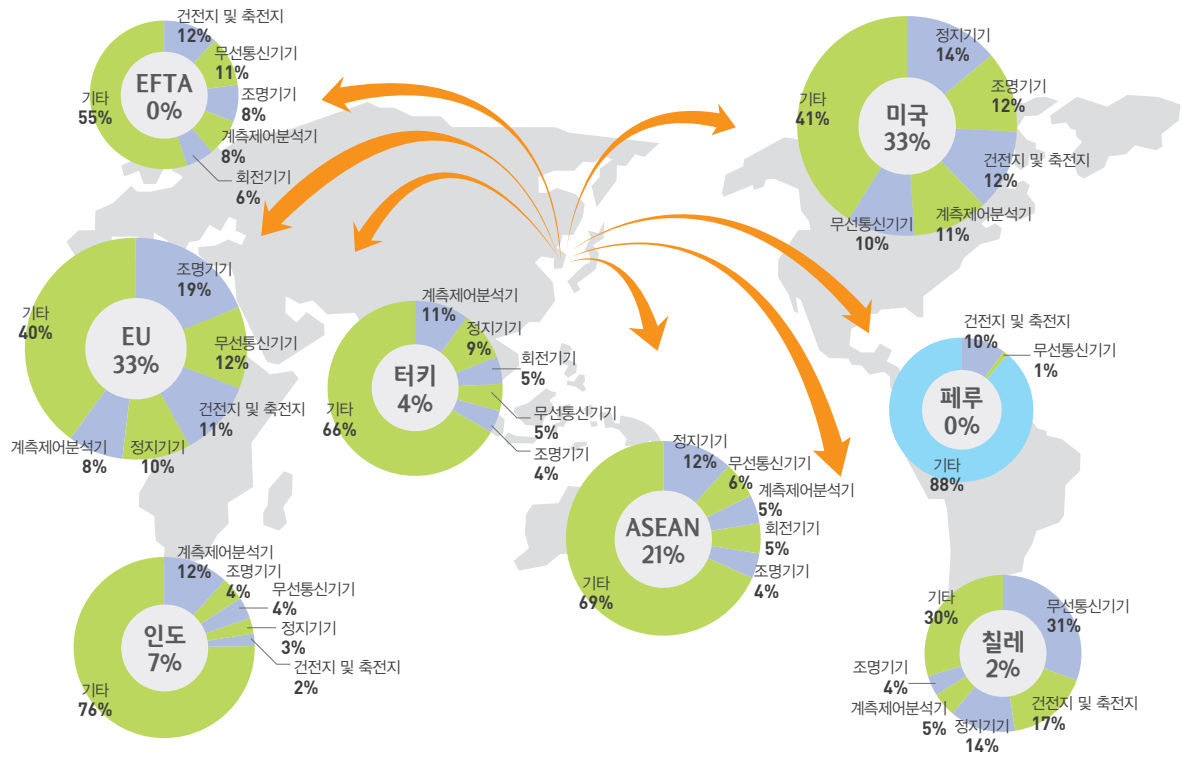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10,388,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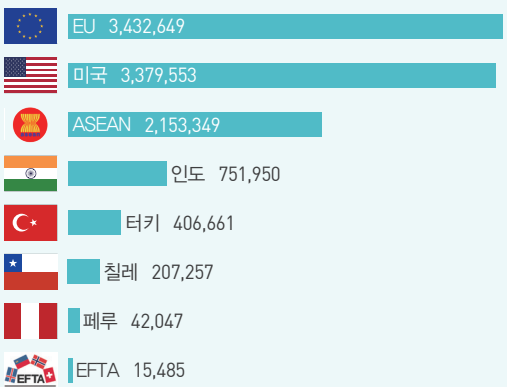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조명기기	1,199,924	12.0
2	정지기기	1,125,000	11.0
3	무선통신기기	992,179	10.0
4	계측제어 분석기	915,754	9.0
5	건전지 및 축전지	906,180	9.0
6	회전기기	590,052	6.0
7	전자 응용기기	510,443	5.0
8	가정용 회전기기	455,809	4.0
9	전선	424,882	4.0
10	난방 및 전열기기	195,961	2.0
총계		10,388,953	100.0

수 입 전기전자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11,558,275 (36%)	20,885,139 (64%)	32,443,41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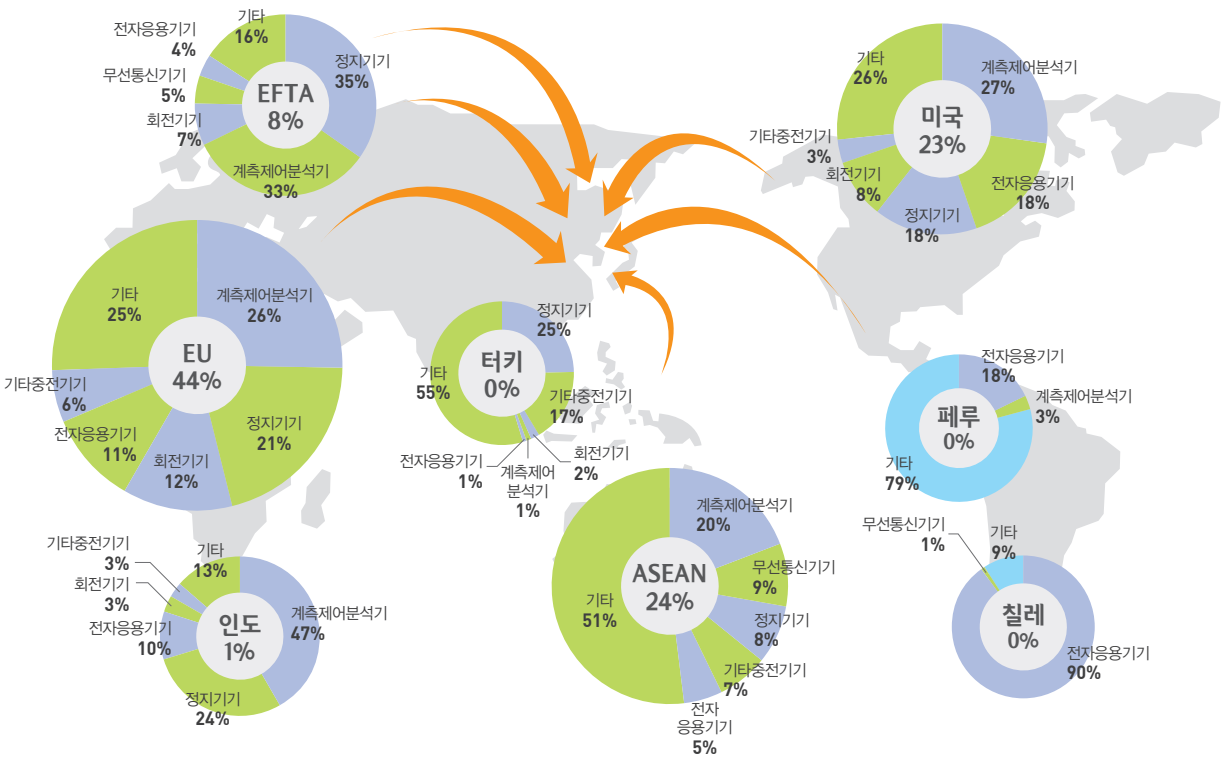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11,558,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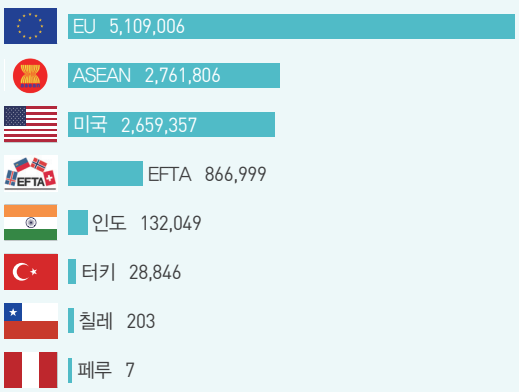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계측제어분석기	2,932,160	25.0
2	정지기기	2,087,627	18.0
3	전자 응용기기	1,230,802	11.0
4	회전기기	969,138	8.0
5	무선통신기기	616,408	5.0
6	기타 중전기기	602,788	5.0
7	기구부품	437,923	4.0
8	전선	372,538	3.0
9	음향기기	338,199	3.0
10	조명기기	319,564	3.0
총계		11,558,275	100.0

수 출 철강금속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7,607,162 (34%)	14,572,853 (66%)	22,180,0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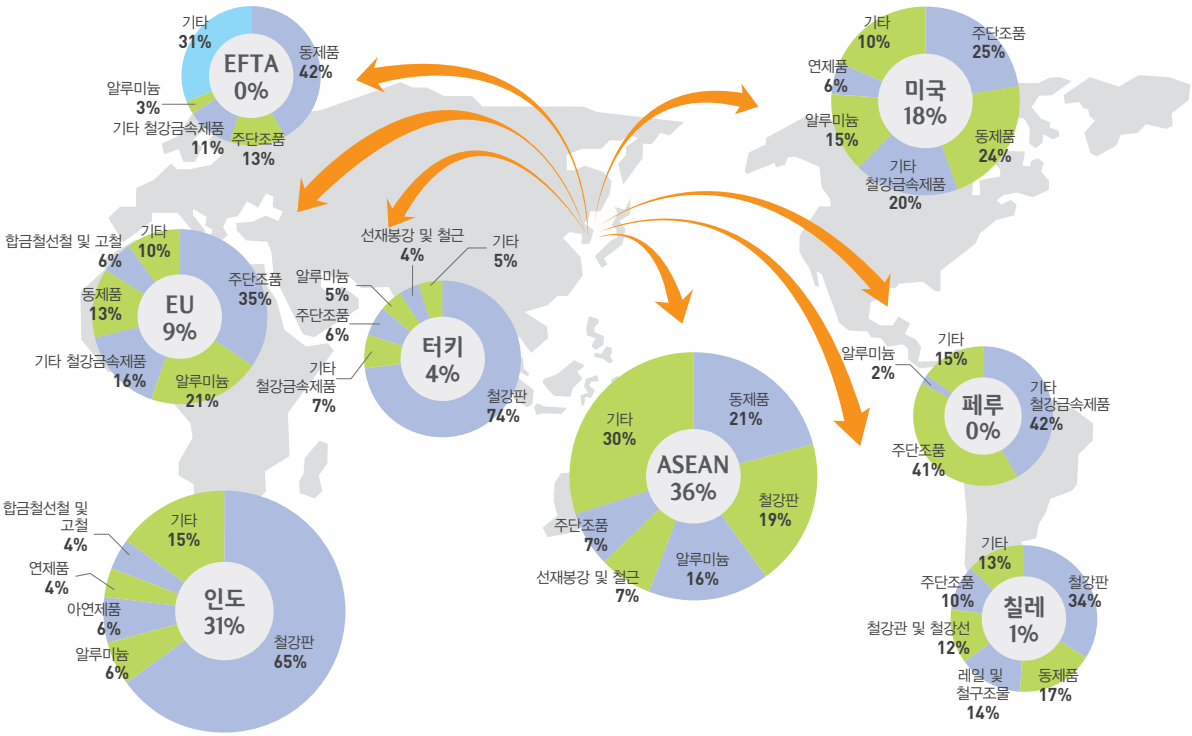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7,607,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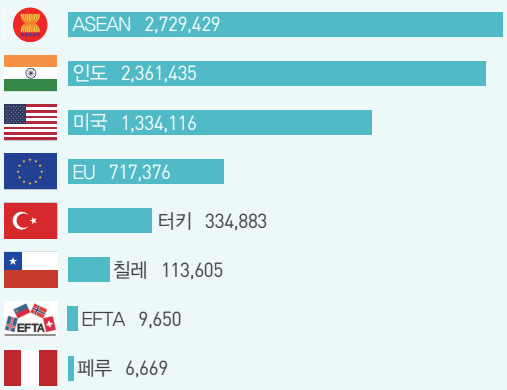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알루미늄	1,042,910	14.0
2	연제품	946,546	12.0
3	텅스텐몰리브덴 및 망간제품	880,614	12.0
4	니켈제품	552,540	7.0
5	주단조품	327,210	4.0
6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228,871	3.0
7	기타 비철금속제품	111,197	1.0
8	기타 철강금속제품	47,890	1.0
9	합금철선철 및 고철	24,976	0.0
10	동제품	16,843	0.0
총계		7,607,162	100.0

교역지도

수 입 철강금속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7,396,999 (56%)	5,861,485 (44%)	13,258,4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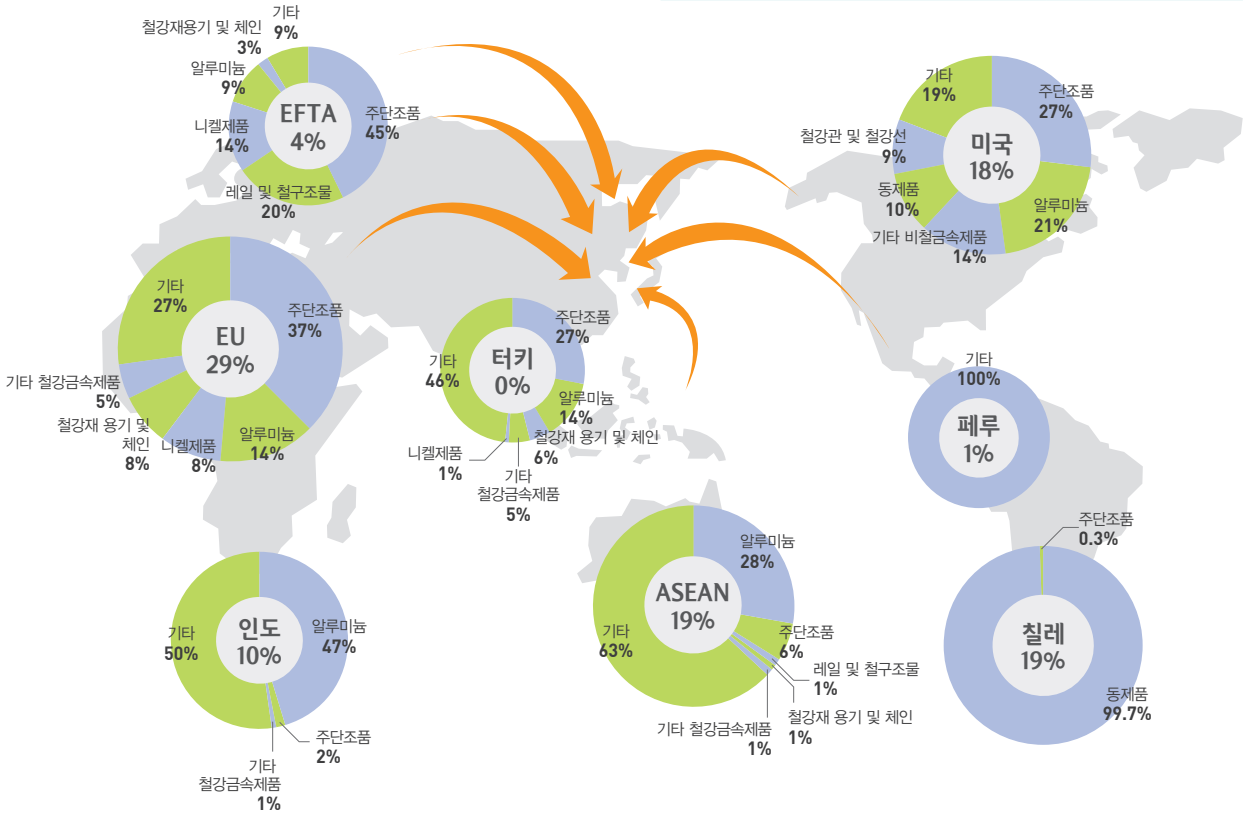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7,396,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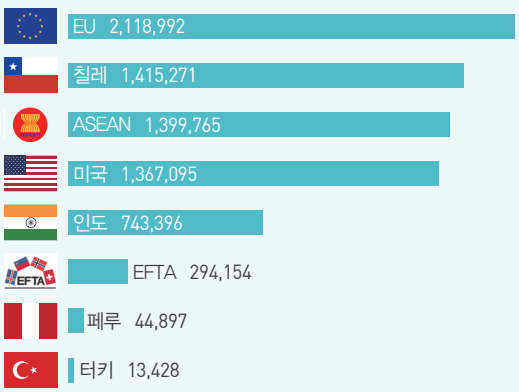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동제품	1,949,788	26.0
2	주단조품	1,393,582	19.0
3	알루미늄	1,351,861	18.0
4	합금철선철 및 고철	429,923	6.0
5	니켈제품	315,810	4.0
6	기타 비철금속제품	278,710	4.0
7	철강재 용기 및 체인	224,787	3.0
8	기타 철강금속제품	169,173	2.0
9	아연제품	146,305	2.0
10	철강관 및 철강선	142,352	2.0
총계		7,396,999	100.0

수 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5,711,264 (85%)	1,020,326 (15%)	6,731,5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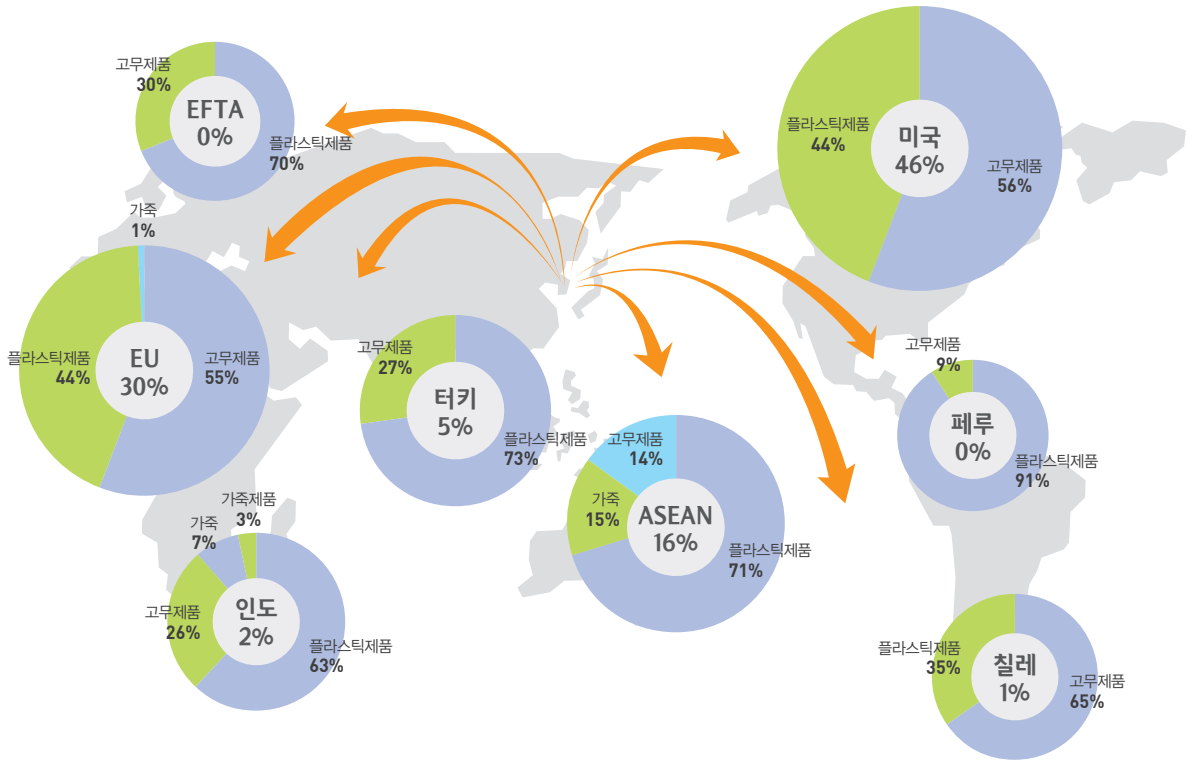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5,711,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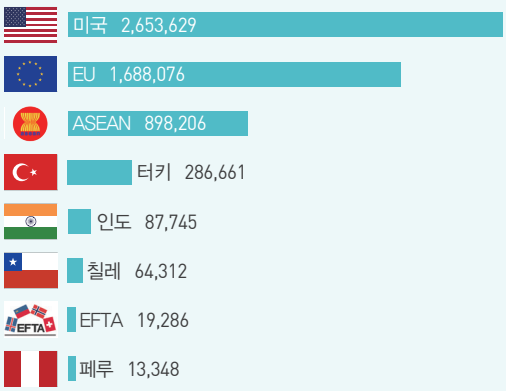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제품	2,853,961	50.0
2	고무제품	2,692,119	47.0
3	가죽	159,486	3.0
4	가죽제품	5,555	0.0
5	모피	142	0.0
총계		5,711,264	100.0

수 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2,538,984 (83%)	532,355 (17%)	3,071,3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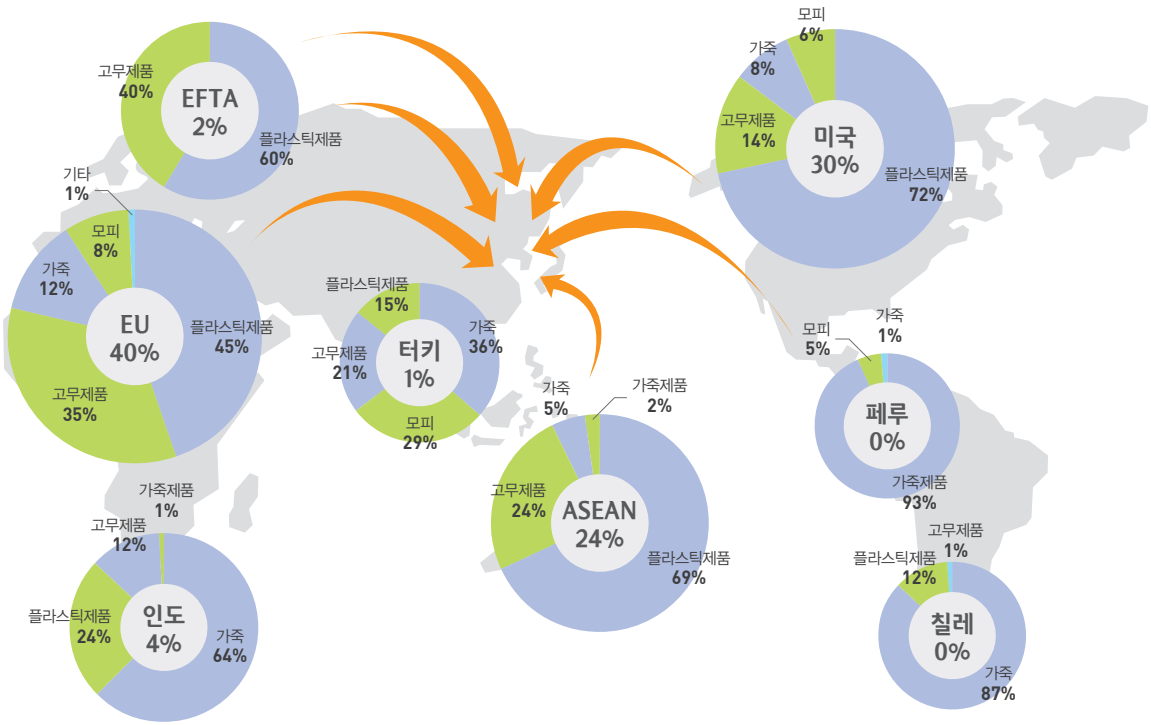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2,538,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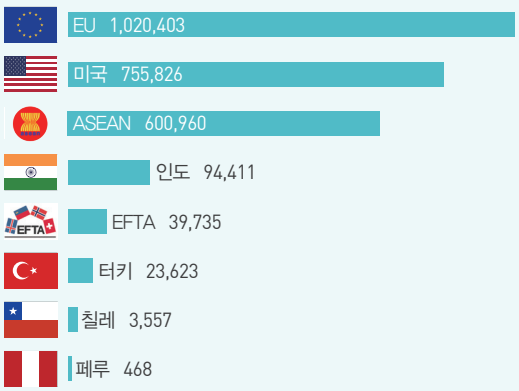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제품	1,461,261	58.0
2	고무제품	640,972	25.0
3	가죽	289,668	11.0
4	모피	126,726	5.0
5	가죽제품	20,357	1.0
총계		2,538,984	100.0

수출 섬유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4,959,988 (58%)	3,649,418 (42%)	8,609,4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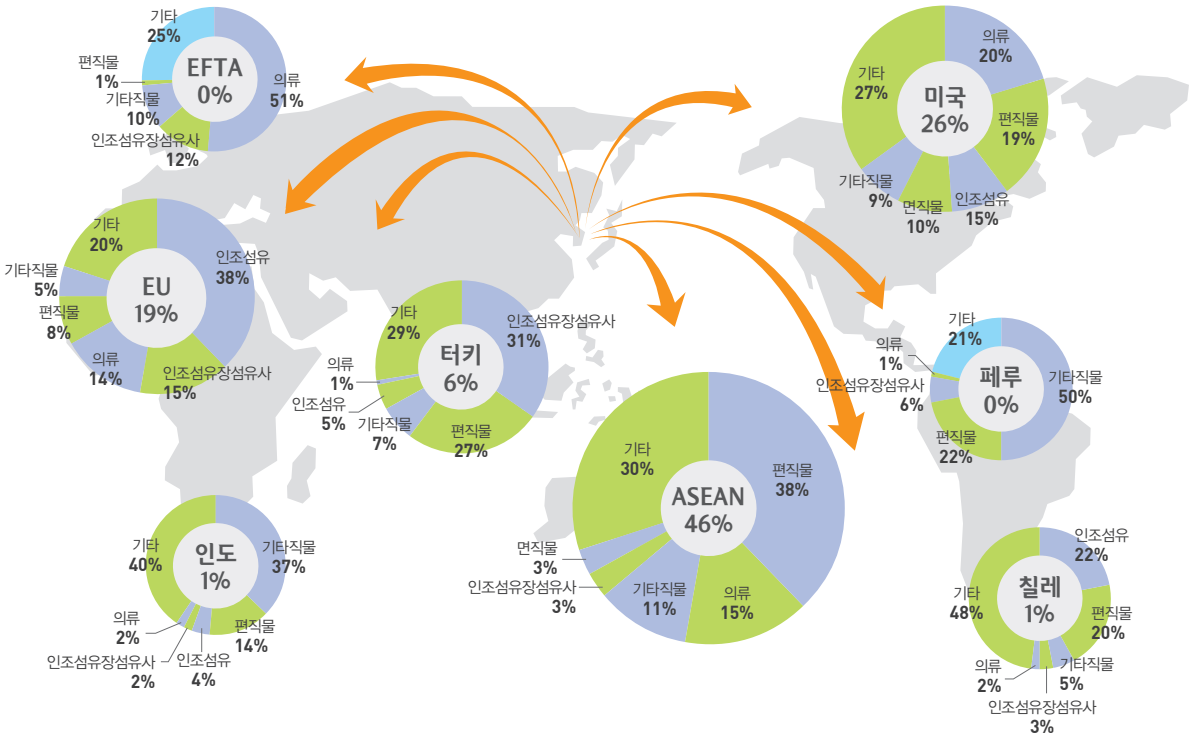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섬유류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4,959,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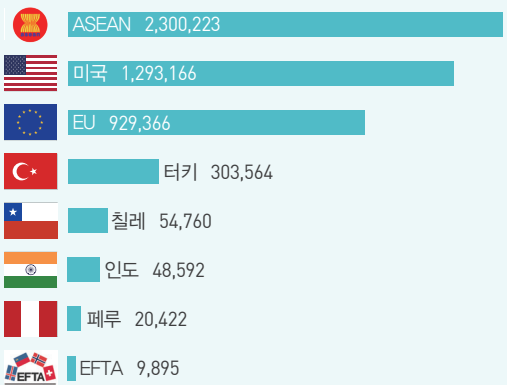

섬유류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편직물	1,304,398	26.3
2	의류	746,101	15.0
3	인조섬유	621,533	12.5
4	인조장섬유직물	519,899	10.5
5	기타직물	478,730	9.7
6	인조섬유장섬유사	425,949	8.6
7	기타 섬유제품	409,840	8.3
8	면직물	189,449	3.8
9	천연섬유사	56,383	1.1
10	인조섬유방적사	33,721	0.7
총계		4,959,988	100.0

교역지도

수 입 섬유류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6,489,553 (94%)	387,188 (6%)	6,876,74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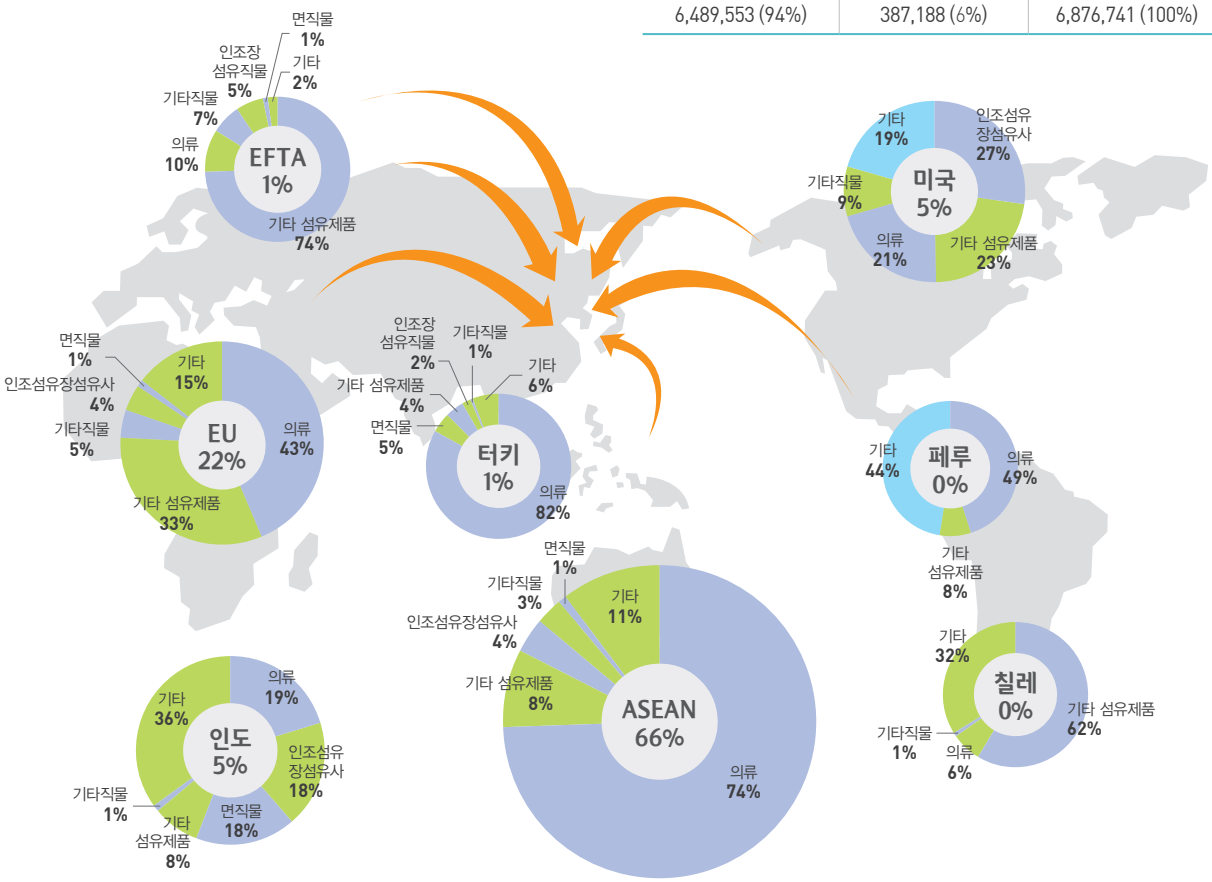

협정별 섬유류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6,489,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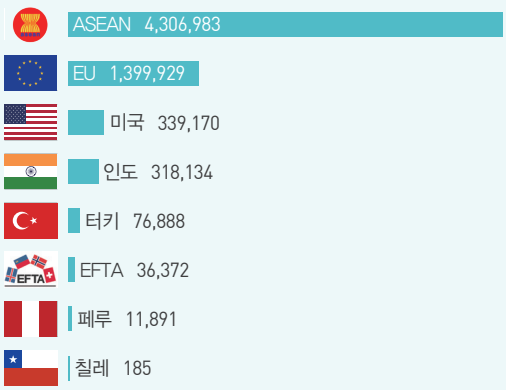

섬유류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의류	3,975,532	61.3
2	기타 섬유제품	954,467	14.7
3	인조섬유장섬유사	367,330	5.7
4	천연섬유사	270,483	4.2
5	인조섬유방적사	257,789	4.0
6	기타직물	227,325	3.5
7	면직물	112,883	1.7
8	재생섬유	80,492	1.2
9	모직물	65,069	1.0
10	인조단섬유직물	52,649	0.8
총계		6,489,553	100.0

수출 광산물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4,636,370 (29%)	11,614,637 (71%)	16,251,0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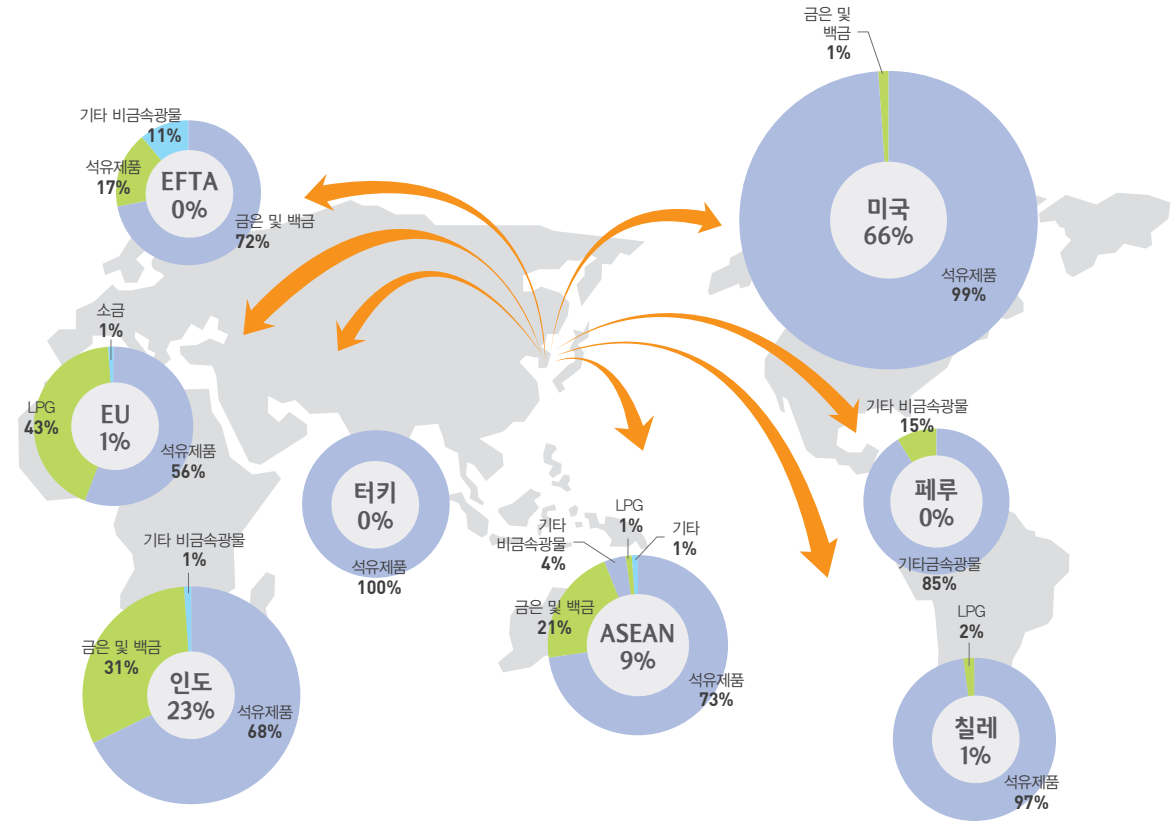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광산물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4,636,370

광산물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유제품	4,130,053	89.1
2	금은 및 백금	451,267	9.7
3	기타 비금속광물	27,685	0.6
4	LPG	18,767	0.4
5	기타 금속광물	4,357	0.1
6	니켈광	1,191	0.0
7	소금	1,089	0.0
8	동광	888	0.0
9	석회석	491	0.0
10	흑연	218	0.0
총계		4,636,370	100.0

수 입 광산물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17,076,072 (52%)	16,067,334 (48%)	33,143,40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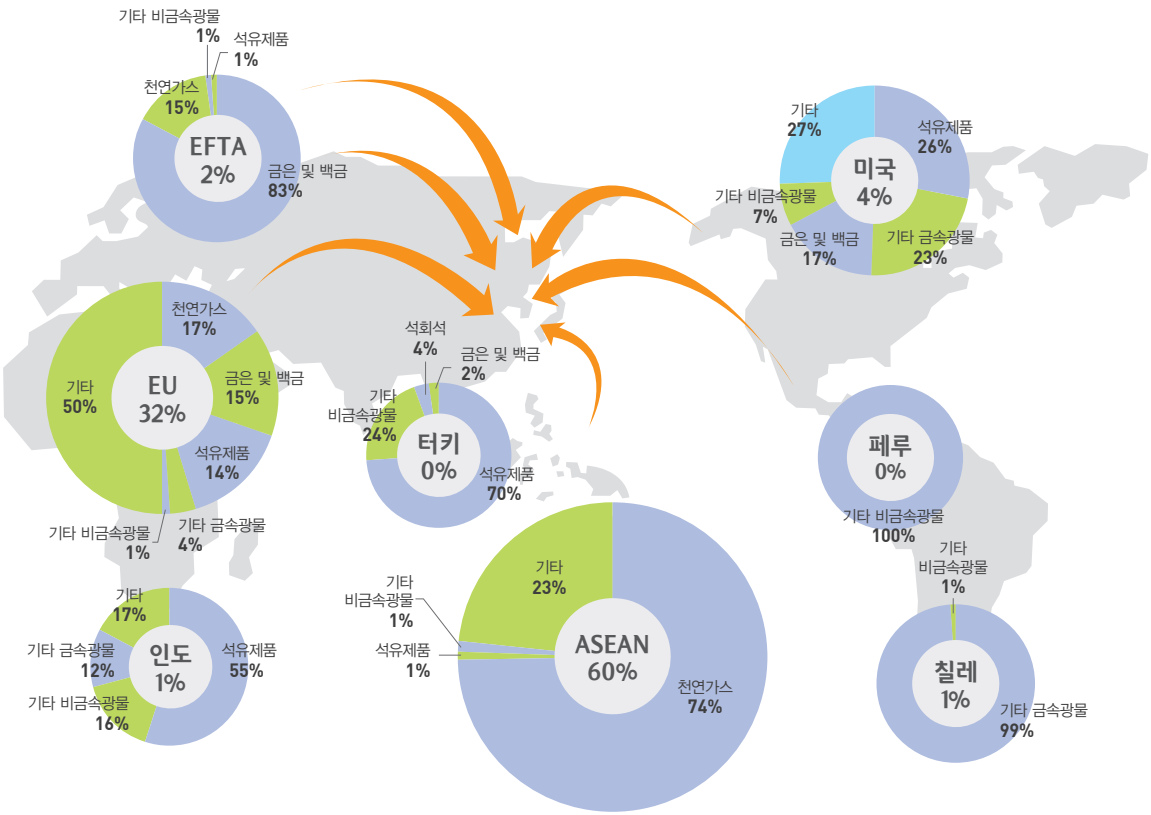

협정별 광산물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17,076,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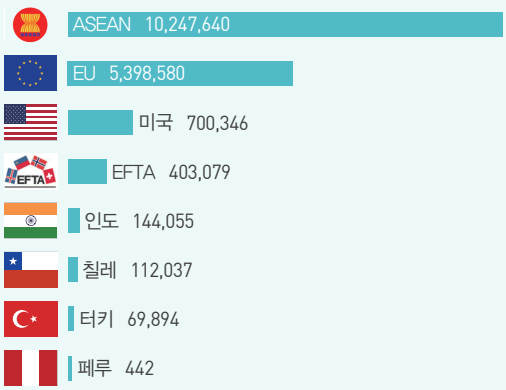

광산물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천연가스	8,572,979	50.2
2	원유	5,185,507	30.4
3	금은 및 백금	1,287,629	7.5
4	석유제품	1,175,086	6.9
5	기타 금속광물	503,745	3.0
6	기타 비금속광물	253,193	1.5
7	고령토	43,546	0.3
8	소금	27,303	0.2
9	석탄	13,948	0.1
10	석회석	9,352	0.1
총계		17,076,072	100.0

수 출 농림수산물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1,411,988 (70%)	593,725 (30%)	2,005,7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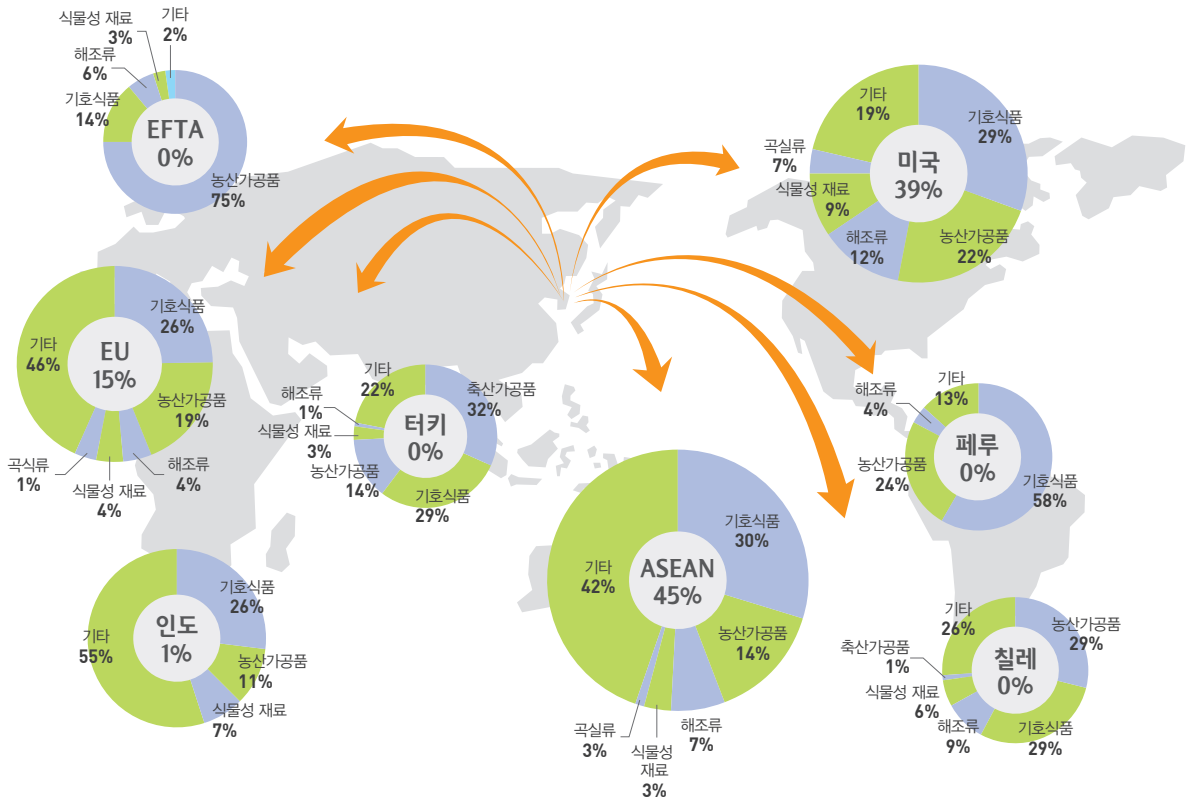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1,41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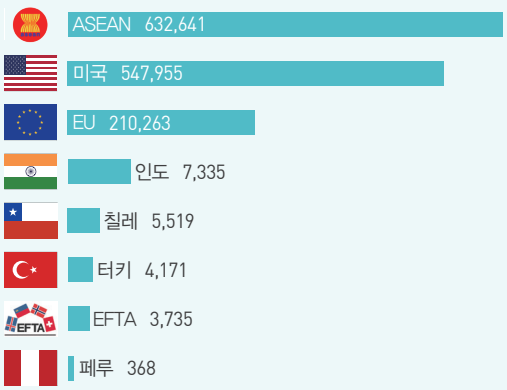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411,083	29.1
2	농산가공품	259,706	18.4
3	해조류	121,413	8.6
4	식물성 재료	79,967	5.7
5	식물성물질	66,758	4.7
6	축산가공품	64,858	4.6
7	곡실류	61,742	4.4
8	수산가공품	48,555	3.4
9	산식물	36,604	2.6
10	목재류	12,091	0.9
총계		1,411,988	100.0

수 입 농림수산물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13,640,172 (74%)	4,833,975 (26%)	18,474,1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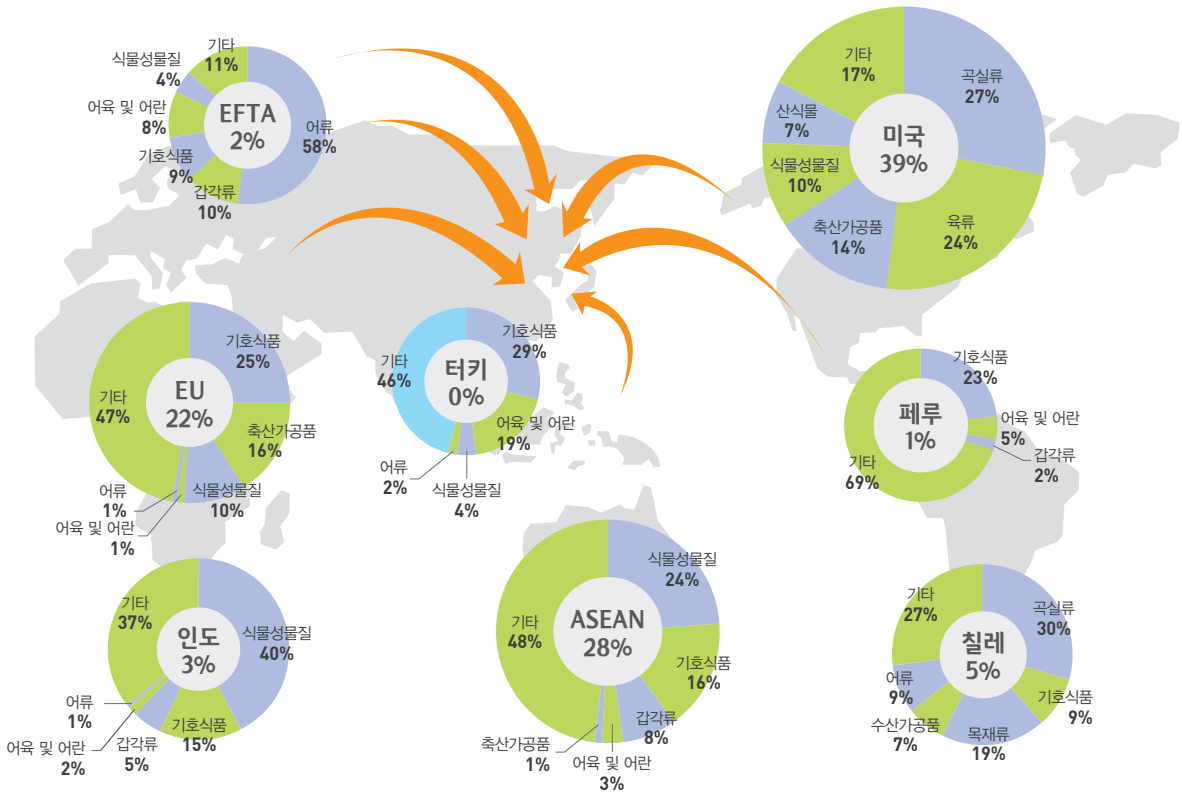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13,64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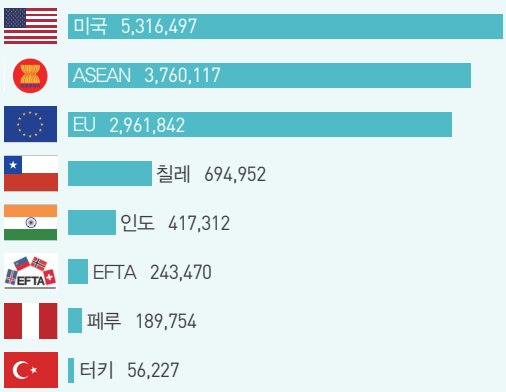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곡실류	2,273,098	16.7
2	기호식품	1,947,924	14.3
3	식물성물질	1,883,025	13.8
4	축산가공품	1,268,490	9.3
5	목재류	992,640	7.3
6	농산가공품	645,161	4.7
7	산식물	546,531	4.0
8	수산가공품	448,072	3.3
9	갑각류	386,914	2.8
10	어류	321,874	2.4
총계		13,640,172	100.0

수 출 생활용품 II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1,008,466 (64%)	578,896 (36%)	1,587,36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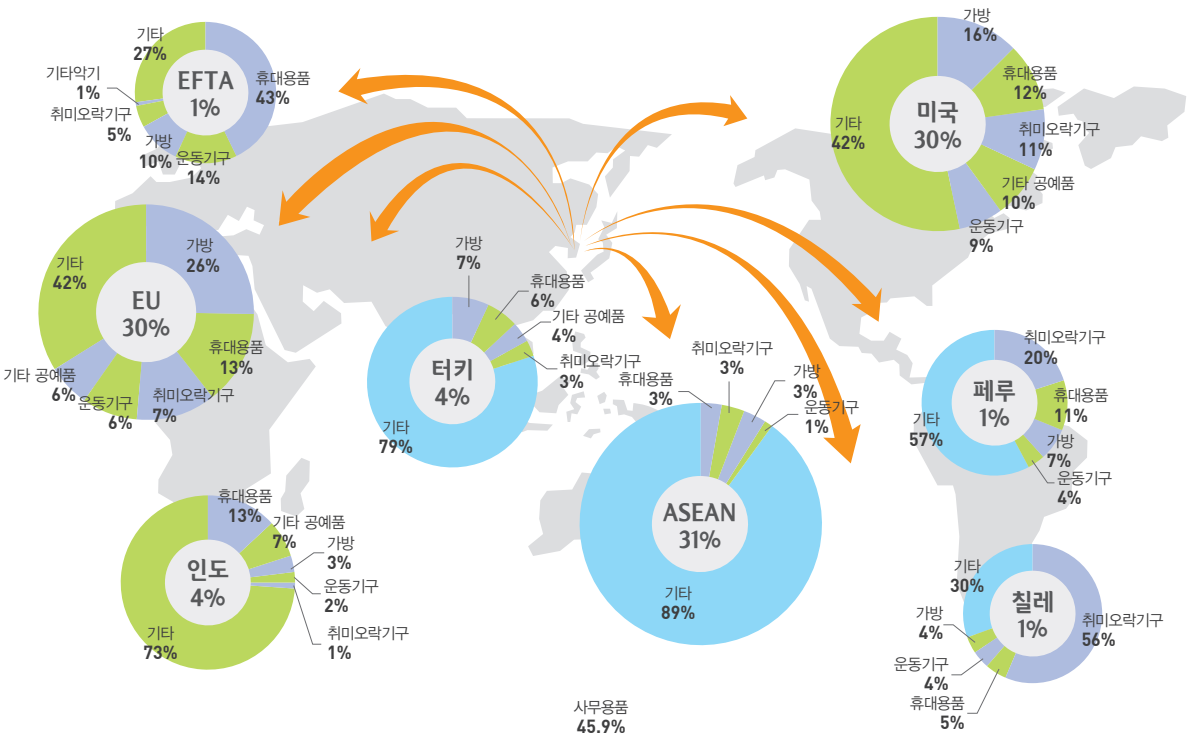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1,008,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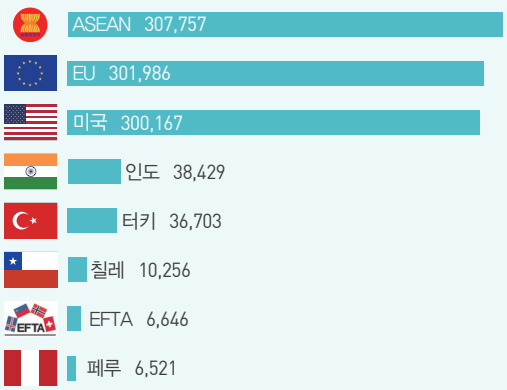

생활용품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 생활용품	160,585	15.9
2	가방	141,204	14.0
3	신발	122,759	12.2
4	휴대용품	98,162	9.7
5	취미 오락기구	69,932	6.9
6	기타 공예품	53,662	5.3
7	운동기구	52,684	5.2
8	필기구	51,164	5.1
9	기타 문구	48,716	4.8
10	기타 악기	33,937	3.4
총계		1,008,466	100.0

수 입 생활용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2,760,162 (84%)	511,440 (16%)	3,271,6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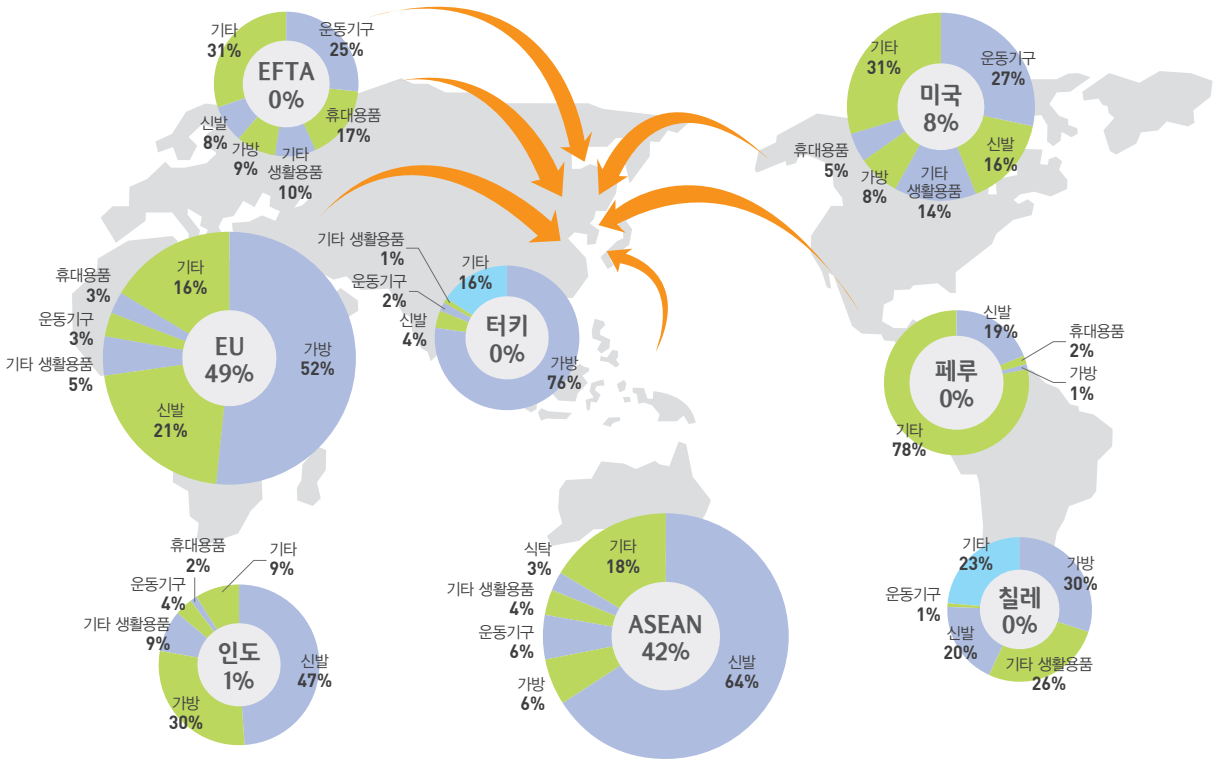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2,760,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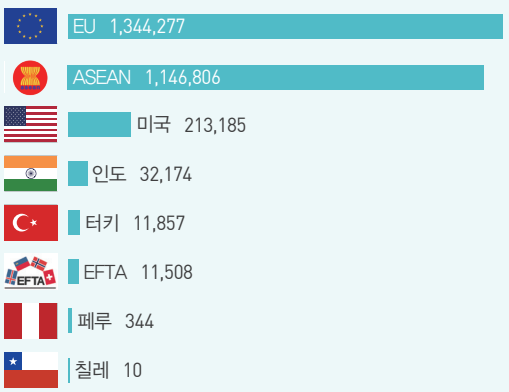

생활용품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1,068,200	38.7
2	가방	807,047	29.2
3	운동기구	169,350	6.1
4	기타 생활용품	145,285	5.3
5	기타 가구	119,422	4.3
6	휴대용품	65,955	2.4
7	필기구	36,080	1.3
8	식탁	33,535	1.2
9	취미오락기구	26,556	1.0
10	관악기	23,948	0.9
총계		2,760,162	100.0

수출 잡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출	일반수출	총계
312,505 (49%)	324,799 (51%)	637,3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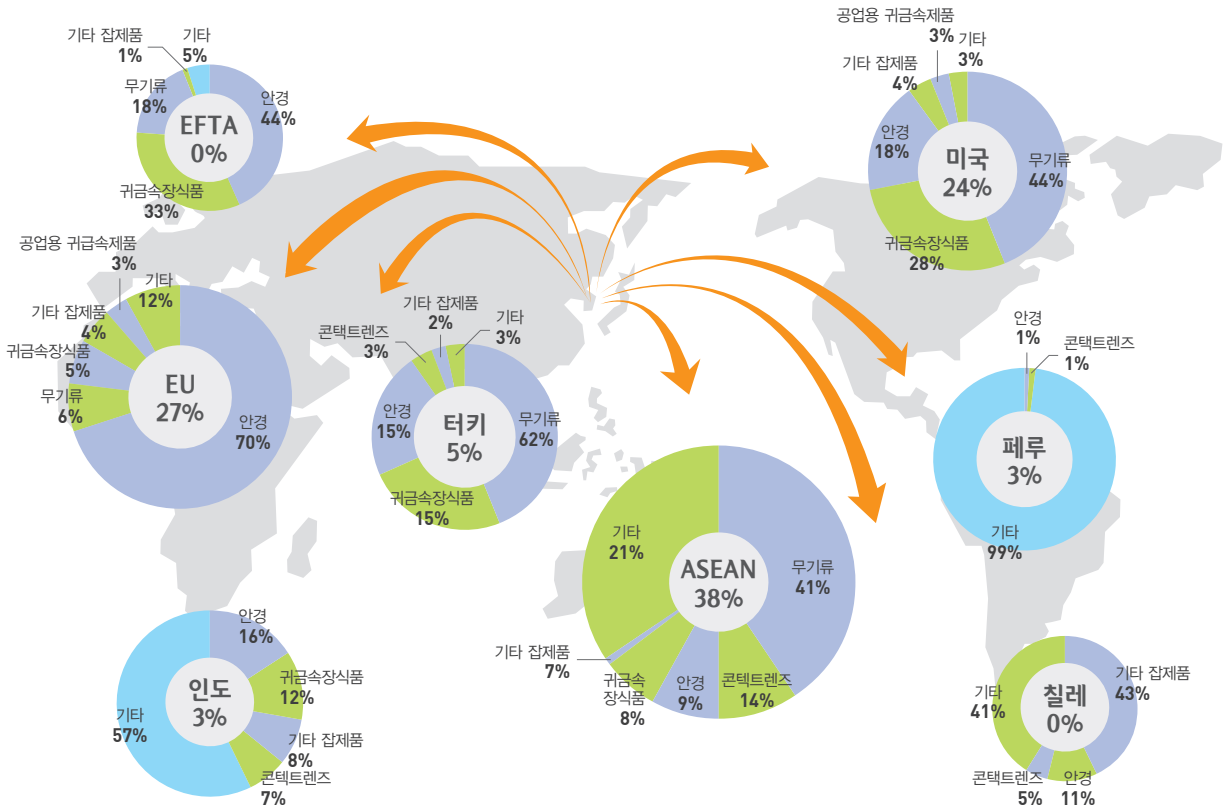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잡제품 특혜 대상 수출금액

총액 312,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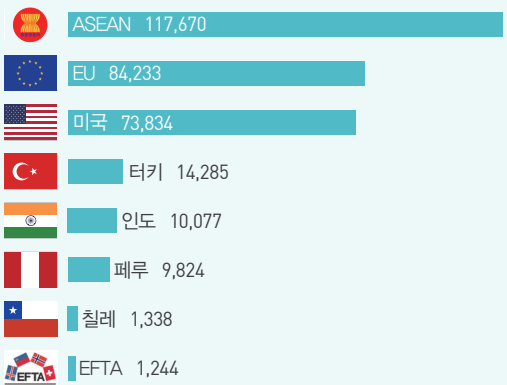

잡제품 특혜 대상 수출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무기류	95,285	30.0
2	안경	87,437	28.0
3	귀금속장식품	38,305	12.0
4	의료위생용품	22,549	7.0
5	콘택트렌즈	19,893	6.0
6	기타 잡제품	15,422	5.0
7	기타 인쇄물	15,018	5.0
8	가발 및 가눈썹	7,061	2.0
9	공업용 귀금속제품	6,375	2.0
10	서적	4,022	1.0
총계		312,505	100.0

수 입 잡제품

단위 : 천달러

FTA특혜 대상 수입	일반수입	총계
833,448 (51%)	793,898 (49%)	1,627,3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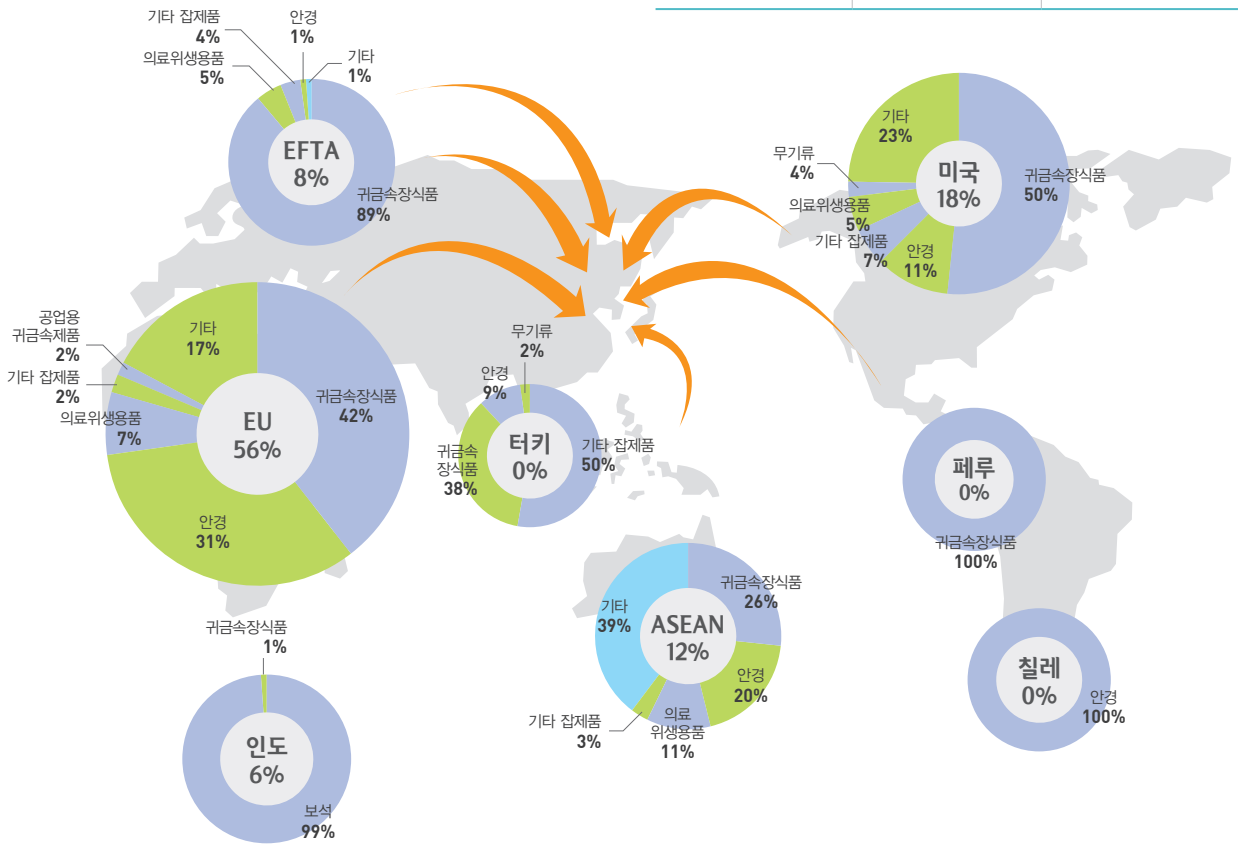

협정별 잡제품 특혜 대상 수입금액

총액 833,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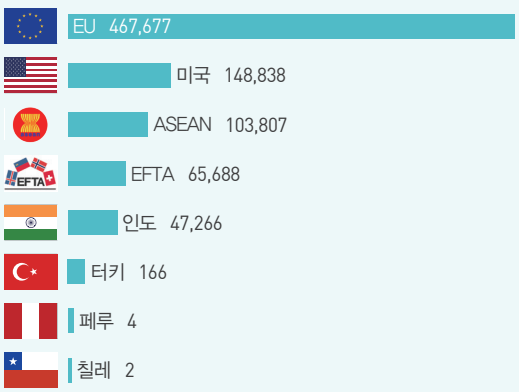

잡제품 특혜 대상 수입품목순위

단위 :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귀금속 장식품	355,290	43.0
2	안경	183,017	22.0
3	콘택트렌즈	110,078	13.0
4	보석	68,567	8.0
5	의료 위생용품	52,928	6.0
6	기타 잡제품	24,035	3.0
7	가발 및 가눈썹	20,985	3.0
8	무기류	8,886	1.0
9	공업용 귀금속제품	8,281	1.0
10	기타 인쇄물	1,256	0.0
총계		833,448	100.0

FTA 무역 리포트

Vol.01 April 2015

〈비매품〉

발 행 일 2015년 4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www.amigodesign.co.kr
Tel. 02-517-5043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 · 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대표전화 ☎ 031.600.0701~3
www.orgin.or.kr

전국 주요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기업전문상담관(AM)이 중소기업의 FTA · AEO · 해외통관 애로를 쉽고 빠르게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신청

YES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신청하기) ➜ 지원요청

진단

기업전문상담관(AM)이 기업의
FTA 활용현황 · AEO · 해외통관애로 등 문제 진단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따라 기업전문상담관 또는
FTA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FTA	AEO	해외 통관애로
• 맞춤형 컨설팅 • FTA 관련 교육 제공 •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구인-구직 연계 (Job Matching)	• AEO 기업 1:1 사후 지원 • 국내외 AEO 혜택 모니터링 • 非 AEO 기업 상담	• 해외 통관애로 상담 • 품목분류 상이, FTA 혜택 불인정 등 해외 통관애로 직접해결

사후 관리

지원 이후 기업의 FTA · AEO 활용 동향,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FTA 활용관련 종합적인 점검을 받고 싶나요?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하는 관세청의 맞춤형 **YES FTA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사업기간 : 매년 3월 ~ 12월
지원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 FTA 원산지 판정이 어렵다구요?

관세청이 원산지 판정, 증명서발급 등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를 무료로 보급해드립니다.

● FTA 전문인재를 찾고 계시나요?

관세청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교생, 중장년 여성 등을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 하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고용연계(Job-matching)**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